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711-01

정책보고서 2016-03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김태완·김문길·김은정·임완섭·황도경
최민정·이주미·김진희·주찬희

【책임연구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2014년 복지욕구실태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진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주찬희 서울시립대학교

제출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5. 12. 8.)한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우리나라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년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를 위한 노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술인 공제회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이후 2011년에 이르러 예술인복지재단이란 형태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부와 예술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며, 그 실태도 충분히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예술인 복지법 4조의2를 통해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세부적으로 조사항목에 대한 범주가 설정되어 있지만, 조사여건의 한계로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욕구에 대한 파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예술인을 위한 적합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욕구가 파악되고 적절한 복지사업이 제안될 필요가 있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원로예술인과 여성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다. 일부 청년예술인을 포함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표본의 한계로 인해 전체 예술인의 복지욕구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예술인을 위한 복지욕구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의 조사내용과 결과가 예술인 복지조사를 위한 토대로 활용되기를 연구진은 바란다.

본 연구는 김태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김문길, 김은정, 임완섭, 황도경 부연구위원, 최민정 초빙연구원, 이주미, 김진희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원외 서울시립대학교 주찬희 박사 그리고 연구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도움을 주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가진 선생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차단비 사무관, 홍승모 주무관께도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결과가 예술인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공무원, 학생들에게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주요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2
제2장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사례	25
제1절 예술인 복지 정책사례	27
제2절 해외사례	57
제3장 예술인 대상 실태조사	79
제1절 분석개요	81
제2절 실태분석	84
제4장 예술인 복지지원 방안	133
제1절 원로예술인	135
제2절 여성예술인	138
제3절 기타 복지지원	147
제4절 전달체계	155
제5장 결론 및 함의	163
제1절 분석결과 및 함의	165
제2절 예술인 복지사업 실행을 위한 로드맵(안)	168
참고문헌	175
부 록	179

표 목차

〈표 1- 1〉 문화예술인 취업상태	18
〈표 2- 1〉 예술인 복지관련 논의	28
〈표 2- 2〉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2016.1월 기준)	32
〈표 2- 3〉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32
〈표 2- 4〉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	33
〈표 2- 5〉 시도문화재단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 사업 영역	34
〈표 2- 6〉 시도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관련 복지정책 사례	36
〈표 2- 7〉 건강보험료 지원규모	41
〈표 2- 8〉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규모	41
〈표 2- 9〉 농지연금 가입자	41
〈표 2-1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현황	42
〈표 2-11〉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현황	42
〈표 2-12〉 농식품부 예산 및 복지분야 예산 및 기금 추이	43
〈표 2-13〉 농식품부 복지 사업내용 예산 및 기금 추이	44
〈표 2-14〉 농식품부 복지사업별 비중	44
〈표 2-15〉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복지분야 예산 추이	48
〈표 2-16〉 예술인 및 기타 직업군 비교	49
〈표 2-17〉 선정기준선 수준별 사업분포	51
〈표 2-18〉 주요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선 변화	52
〈표 2-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선정기준의 변화	54
〈표 2-20〉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변화	55
〈표 2-21〉 프랑스 엔테르미탕 제도 변경 내용	61
〈표 2-22〉 2015년도 신진예술가 해외연구제도 연수원 채택상황(분야별 내역)	64
〈표 2-23〉 각 조합의 사업안내	66
〈표 2-24〉 문화부의 조직과 업무내용	71
〈표 2-25〉 중국 문화부 직할조직의 업무내용	72
〈표 2-26〉 정부예산에서 문화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73
〈표 3- 1〉 예술인 복지인식 및 욕구 조사 설문개요	82
〈표 3- 2〉 모집단의 연령별 남녀 분포	83
〈표 3- 3〉 조사대상자 인구적 특성	84
〈표 3- 4〉 조사대상자 사회경제적 특성	85
〈표 3- 5〉 예술인 정신건강 관련 분석(우울관련)	87
〈표 3- 6〉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	89
〈표 3- 7〉 사회보험 가입여부	90
〈표 3- 8〉 사회보험 수급경험(과거)	91
〈표 3- 9〉 예술인 관련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I	92
〈표 3-10〉 예술인 관련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II	94

〈표 3-11〉 재산이나 집안에 어려움 발생시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95
〈표 3-12〉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96
〈표 3-13〉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97
〈표 3-14〉 전업(겸업)예술인의 인구학적 특성	98
〈표 3-15〉 전업예술인의 고용형태	99
〈표 3-16〉 겸업예술인의 고용형태	99
〈표 3-17〉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100
〈표 3-18〉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외 일자리에 투자하는 주당 평균시간	101
〈표 3-19〉 전업(겸업)예술인의 소득분포 및 월평균 소득	102
〈표 3-20〉 연령별 월평균 소득	102
〈표 3-21〉 전업(겸업)예술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103
〈표 3-22〉 예술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	103
〈표 3-23〉 주관적 건강상태	104
〈표 3-24〉 만성질환 여부 및 만성질환 수	104
〈표 3-25〉 건강검진 수검률	105
〈표 3-26〉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	105
〈표 3-27〉 의료비 부담 수준	105
〈표 3-28〉 연령별 연평균 의료비 지출	106
〈표 3-29〉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106
〈표 3-30〉 연령별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107
〈표 3-31〉 치료를 포기한 경험	108
〈표 3-32〉 연령별 치료를 포기한 사유	108
〈표 3-33〉 의료보장 자격유형 비교	109
〈표 3-34〉 연령별 의료보장 자격유형	110
〈표 3-35〉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률(2015년)	111
〈표 3-36〉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111
〈표 3-37〉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에 대한 부담	112
〈표 3-38〉 건강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113
〈표 3-39〉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	113
〈표 3-40〉 예술인 유형별 평균 수입 및 지출	114
〈표 3-41〉 예술인 유형별 총지출 및 항목별 지출	115
〈표 3-42〉 지출하는 생활비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17
〈표 3-43〉 예술인 유형별 생활비중 주관적 부담 항목 순위	118
〈표 3-44〉 예술인 유형별 자산 현황	119
〈표 3-45〉 연령별 자산 현황	119
〈표 3-46〉 예술인 유형별 부채 및 수준	120
〈표 3-47〉 여성예술인의 걱정거리(불안요인)	121
〈표 3-48〉 여성예술인의 노동시장 특성	122
〈표 3-49〉 여성예술인의 1일평균 근무시간	123

〈표 3-50〉 여성예술인의 주당 근무시간 분포	124
〈표 3-51〉 여성예술인의 주요 예술활동분야별 고용형태	124
〈표 3-52〉 미취학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인구학적 특성	125
〈표 3-53〉 미취학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 특성	126
〈표 3-54〉 미취학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경제적 특성	127
〈표 3-55〉 미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128
〈표 3-56〉 미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예술활동 특성별	128
〈표 3-57〉 미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소득수준별	129
〈표 3-58〉 미취학자녀의 양육행태	130
〈표 3-59〉 미취학자녀의 양육에 따른 취업(직장생활)의 어려움	130
〈표 3-60〉 미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131
〈표 3-61〉 공연예술인 시간제보육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131
〈표 3-62〉 미취학 자녀의 보육양육 관련 의논 대상	132
〈표 4- 1〉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안)	173

그림 목차

[그림 1-1] 문화예술인 생활수준 인식	19
[그림 1-2] 문화예술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추이	20
[그림 2-1]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농촌개발·복지증진 및 농업인 복지 예산 및 기금 비중	43
[그림 2-2] 과학기술인 공제회 가입자 및 자산규모 추이	47
[그림 2-3] 미래창조과학부 전체 예산 대비 과학기술인 복지 예산	48
[그림 2-4] 문화부 예산 내역	74
[그림 2-5] 국가예술기금 지원건수 및 지원금	75
[그림 2-6] 중국의 문화기관 및 고용인 현황	77
[그림 3-1] 치료를 포기한 주된 사유	108
[그림 3-2] 의료보장 자격유형 비교	110
[그림 3-3]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112
[그림 3-4] 예술인 유형별 소득 및 지출의 상대적 규모	116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예술인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고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준은 미약함.
 -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였지만, 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며, 동 사업은 저소득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확장성에 한계를 지님.
- 본 연구에서는 복지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지원 및 복지전달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예술인 대상 사회복지사업 및 예술인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 대한 복지사업 사례 조사
- 예술인 대상 복지욕구 조사
 - 여성 및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실태, 욕구 및 만족도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 실시
- 여성 및 원로예술인 대상 기존 사회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제안
- 여성 및 원로예술인 대상 중장기적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제시

□ 연구한계

-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76번)’와 관련된 실태파악이 부족
- 예술인 대표성 측면에서 원로 및 여성 예술인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에 기초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간 및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

2.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사례

가. 예술인 복지 정책사례

- 정부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오래되지 않았음.
 - 예술인 복지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의 사망으로부터임. 이후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추진이 국회와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당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 2012년 11월 시행됨.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예술인 복지 증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을 토대로 예술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롭게 제안함.
 -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2013년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 예술인복지법의 목적과 예술인 정의 등을 기초로 지자체별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대한 조항을 포함함.
 - 지자체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전라북도 창작마중물 지원 시범 사업

- 지역문화재단은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영역으로 “문화예술창작진흥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14개 영역의 사업을 공통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인복지지원 사업
 -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재단 직접사업),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 문화예술기획 아카데미(재단 직접사업)
 - 신진예술가지원 사업
 -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각 시도문화재단의 사업명은 상이함.
 -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가육성지원, 차세대 artiStar지원, 최초예술지원 등
 - 창작지원금, 경비지원 등의 재정적지원과 멘토링 연계, 공연장대관, 기술인력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역량강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재정적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주로 '신청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적임.

○ 또한, 예술인의 특성상 예술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겸업 예술인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남.

□ 다른 직업군(농어업인,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 예술인 복지지원 사례

○ 정부에서는 2004년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약칭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은 매 5년을 주기로 2015년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농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중 예술인과 우선적으로 비교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임.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 이하는 정률(50%), 기준소득 이상은 정액을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 종사자의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음.

- 예술인의 경우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료의 50%,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들어 이공계 위기론,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임.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는 별도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차 2008~2012)을 수립하여 현재 2차(2013~2017)까지 이르고 있음.

-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들 수 있음.

□ 선정기준 관련 논의

○ 2016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은 2015년은 최저생계비 185%, 건강보험료는 200%를 2016년에는 소득은 중위소득 75%를 적용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기존 복지제도와는 유사한 특성을 지님.

- 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제도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2015년 진행된 예술인실태조사의 소득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가구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해외사례

- 독일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사회보험법(Kunstlersozialversicherung, KSV)을 제정
 - 1975년 문화예술 관련 직업들의 불안정한 경제적·사회적 실태가 독일연방의회에 보고된 것을 계기로, 1983년 예술인사회보험이 시행됨.
 - 예술가 사회보험의 집행기관은 예술가사회금고(Kunstlersozialkasse: KSK)
 - 2009년 5월 사회법전(SGB)제3편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영화·TV 업계의 문화 크리에이티브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폭적인 개정을 함.
- 프랑스는 공연, 영화, 방송분야 관련 단기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계약이 없을 때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실업보험제도에 해당하는 ‘공연예술 앵테르미탕(Intermittent du spectacle)’제도와 예술인을 정당한 직업군으로 인정하여 임금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주거복지 사례 중 하나로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가 및 관련 단체의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복지제도는 민간차원의 상호부조 형태로 운영
 - 문예미술국민건강보험조합(文藝美術國民健康保險組合), 동경예능인국민건강보험조합, 교토예술가국민건강보험조합, 오사카문화예능국민건강보험조합
 - 공익사단법인 일본예술가단체협의회(日本藝能實演家團體協議會, 이하 예단협)는 예술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74년부터 5년마다 예술인의 활동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 중국 문화부가 직할하고 있는 사업 및 단체 중 예술가 지원 관련 단체로는 ‘문화부 문화예술 인재센터’와 ‘문화부 정년퇴직 등 인원서비스센터’가 있음.
 - ‘문화부 문화예술 인재센터’의 업무내용은 문화사업 인재 관련 공개파견, 인사대리, 인재

교류, 인재개발연수, 평가, 자격검정작업, 유학이나 해외취업지원, 인사이력의 수집관리 등임.

- '문화부정년퇴직 등 인원 서비스 센터'에서는 예술퍼포먼스 단체의 정년퇴직 인원에 관한 지원이나 관리업무를 함.
- 2012년 5월 중국공산당 제12차 5개년 계획, 즉 문화부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개혁발전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문화 인재와 조직의 확대를 발전목표로 함.
- 문화예술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초기 상황으로, 아직까지 예술인의 지위향상이나 고용 및 사회보장에 대한 복지적 차원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3. 예술인 대상 실태조사

가. 분석개요

- 본 연구에서는 원로, 여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이에 원로 및 여성 예술인 실태파악을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반사항, 일반인식, 복지인식, 고용관련, 건강, 자녀양육, 경제여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함.
 - 또한 예술인이 아닌 비예술인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일부 조사문항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실태조사 자료의 조사문항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함.
-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구성틀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예술활동 증명예술인 총 16,779명으로 17세 미만 예술인 6명, 18~34세 이하 8,301명, 35~64세 이하 7,848명, 65세 이상 624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이 중 조사의 현실성 및 조사대상인 연령을 고려하여 17세 미만 예술인(6명), 외국인 예술인(27명)을 제외하여 표본추출틀은 총 16,747명임.
 - 원로, 여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조사대상은 총 280명으로 원로, 여성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청년(18~34세), 남성예술인도 조사대상에 포함함.
 - 목표표본규모는 연령별로 65세 이상 70명(남성, 여성), 35~64세 140명(남성, 여성), 18~34세 70명(남성, 여성)임.

나. 실태분석

-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인구학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이 60.4%, 여성이 39.6%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비중이 많음. 연령별은 비례 할당에 의해 추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3.6%, 별거·사별·이혼 등을 경험한 예술인은 12.1%, 미혼은 44.3%로 조사되었으며, 장애를 가진 경우는 3.6%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에 대한 전업, 겸업의 비율은 전업예술인은 57.1%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전업예술인이었으며, 겸업예술인은 35.4%,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7.5%이었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거 유형은 자가 37.5%이었으며, 보증부월세가 31.4%, 전세 20.0%로 나타나 비예술인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일반인식 조사는 크게 세 개의 문항-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생활에서의 불안요인-으로 구성하여 질문함.
 - 예술인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37.5%로 다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비예술인의 우울감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장 큰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예술활동 어려움(42.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16.4%)와 노후생활(16.4%)을 지적하고 있음.
- 복지인식
 - 예술인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진 이후 예술인을 위한 여러 복지지원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 주요 예술인 복지지원 제도의 인식을 보면, 창작지원금제도의 수급경험에서 조사대상자의 20.7%가 수급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4.6%로 조사됨.
 - 또한 정부에서는 예술인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상담(정서)지원 서비스를 최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예술인 정서 지원서비스를 경험한 예술인은 조사대상자의 2.5%는 지원경험을 0.7%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술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참여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많은 예술인이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예술분야 친구(48.9%)를 들고 있었음.

- 예술이라는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예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가족 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경우도 28.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은 1.4%,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관계망 구성은 주로 가족관계로부터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예술관련 친구나 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예술인의 고용형태

- 조사대상자 중 예술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57.1%, 예술과 다른 일을 함께 겸업하고 있는 경우 35.4%,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7.5%로 나타남.
- 예술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형태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시직 21.3%, 일용직 17.5%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임시·일용직이 38.8%로 나타남.
- 전업예술인이 아닌 겸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술활동의 고용형태가 임시·일용직이 54.6%로 반 이상으로 나타남. 이들의 경우 예술활동 외 직업도 마찬가지로 임시직 44.4%, 일용직 21.2%로 65.6% 정도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됨.
 - 예술활동 이외 다른 직업 활동을 갖게 된 주된 이유로는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때문이라는 응답이 45.5%,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소득이 낮기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약 89% 정도가 소득에 대한 이유였음.
- 전업예술인의 경우 예술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9%에 불과하였으며, 68.7%는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고 응답함. 특히 43.1%는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받으며 예술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35-64세의 경우 주된 이유가 가사 또는 양육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여성예술인인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여성예술인에 대한 보육 및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강(원로예술인)

- 조사대상 예술인의 약 14.3%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나쁨 + 매우 나쁨)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예술인의 30%는 3개월 이상 투약 또는 투병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남. 특히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약 67.1%가 만성

질환을 갖고 있었음.

- 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7%(다소 부담 + 많이 부담)가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원로예술인의 경우, 생활비 중 식비(40%), 주거비(20%) 다음으로 보건의료비(18.6%)가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나타났음.
- 미충족의료욕구 실태를 반영한 치료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비 부담이 6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라는 응답이 13.58%,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1.11% 순이었음.
 - 즉, 의료서비스 이용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대상자의 치료 포기 사유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예술인의 약 14.29%가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4%가 많이 부담 또는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 경제여건

- 조사 대상 예술인의 연간(15.1월~12월) 평균 가구 총수입은 약 3,8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조사대상 예술인의 개인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약 8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약 21.5%를 차지한 반면, 비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약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유형별 총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여성예술인의 총수입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예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¹⁾.
 - 원로예술인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총지출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예술인이나 여성예술인보다 각각 7.6%p,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예술인의 경우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예술인의 경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남성예술인의 경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예술인 연령대별 지난 1년간 가구총수입을 예술인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30대 이하 3,932만원, 40대 4,954만원, 50대 5,777만원, 60세 이상 4,087만원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본 조사와 비교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술인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분석해 보면, 먼저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으로는 식비(30.4%)와 주거비(22.1%)를 들고 있음.
- 조사에 응답한 예술인의 가구 총자산은 평균 약 4억원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예술인의 경우 평균 약 6억원으로 가장 높은 자산보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청년예술인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약 2억 7천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의 경우 응답자의 가구금융자산은 약 1억 4천만원이며, 응답자 유형별로는 남성예술인 약 3억 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예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금융자산의 경우 청년예술인과 남성예술인을 제외하면 중위 값이 모두 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중위값이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산 보유가 주택자산의 보유보다 더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줌.

□ 여성예술인

- 여성예술인이 인식하고 있는 걱정거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예술활동 어려움(42.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20.0%), 노후생활문제(10.0%) 순으로 나타남.
- 여성예술인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전업예술인은 53.0%로 여성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으며, 예술활동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비율은 43.0%,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0%로 나타남.
- 본 실태조사 대상자 280명 중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35명(12.5%)²⁾에 대해 미취학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 대상자의 82.9%가 '보육시설 및 대리 보육자 찾기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이 밖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사례는 11.4%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여성예술인들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구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커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훨씬 더 느낄 가능성 있음.
- 미취학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 '보육시설 및 대리 보육자 찾기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예술 활동의 특성 상 일반적인 어린이집 등의 운영시간과 실질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시간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예술인들을 위한 특화된 보육지원정책이 필요함.

2) 해당 사례 수가 35명에 불과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분석결과의 대표성 및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르고 있는 비율이 65.7%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성예술인은 84.6%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프로그램’이 연극인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공연예술인에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이용자격에 대한 확대 등이 요구됨.

4. 예술인 복지지원 방안

가. 원로예술인

□ 예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현재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 전체 평균 보험료의 50% 이하에 속하는 지역세대주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
- 하지만 초기 모든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시 재원에 대한 부담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초기 원로예술인 중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예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후, 점진적으로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에게로 확대

□ 원로예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약 6.78%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대비 발생 의료비 기준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고액, 중증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술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나. 여성예술인

□ 안정된 예술활동을 위한 소득보장

- 여성예술인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다수가 겸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예술인의 빈곤문제, 생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 여성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예술인 경력을 단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예술인 또한 예술활동을 하는 도중 경력단절을 경험. 경력단절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분리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음.
 -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설계시 여성예술인이 경험하게 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보육서비스 이용자격을 위한 예술 활동에 대한 증빙 지원체계 구축
 -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자격기준 논의시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특히 여성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자영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함에 따라 보육서비스 기준 적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여성예술인이 맞벌이 가구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구
- 예술인에 특화된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서비스의 홍보 강화
 - ‘반디돌봄센터’와 같은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제도적 체계 구축
 - 여성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법적조항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적근거 및 기반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여성예술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여성예술인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여성예술인 간 상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센터나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예술인들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제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 복지지원

- 예술인 복지 파수꾼(혹은 지킴이)
 -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과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혹은 반기별로 예술활동 상태, 생활상의 어려움 파악

-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65세 이상 고령의 원로예술인과 혼자 사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적용
 - 점진적으로 청년, 중장년의 예술인 간 네트워크 구성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 지역별로 선정된 복지파수꾼을 통해 장년 혹은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혹은 결혼 기념일 등 축하메세지 발송
- 예술인 전문심리 상담가 양성
- 현재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예술인의 특성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유도
 -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상담 및 교육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일정기간 예술인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교육과정(혹은 보수교육)을 가지도록 협약
- 예술인-기업 매개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양성
-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 개발과 예술과 기업,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목적으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개발과 기업내 문화예술 가치 제고를 위해 파견예술인 사업의 확대 혹은 확장이 필요하지만 예술인 중에서 기업 및 지역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술인은 많지 않은 상황임.
 -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으로서 기업, 지역사회 문화에 익숙하고 경영, 재무 등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컨설턴트 혹은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함으로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부합되는 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 등을 발굴하도록 지원
- 예술인 대상 사회 교육 : 경제, 재무 및 사회복지 관련
- 지역 금융기관 혹은 단체 및 협회 등과 연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제·재무 및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주기적(연 1회 혹은 분기별)으로 수행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예술인복지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대상 소액보험 사업(상해중심)
- 민간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해보험에 예술인이 저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해발생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미소금융중앙재단 혹은 우정사업 본부의 상해보험 사업에의 가입유도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여 부처 및 기관 간 협업

□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산형성 혹은 자산축적 사업

- 청년예술인이 학생시절부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졸업후 혹은 성인이 되어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시절 발표한 예술작품 및 예술활동을 기준으로 정부, 예술인복지재단 및 기업이 청년예술인의 예술작품 및 활동에 대해 기부 혹은 자금을 지원하고 축적된 자산을 통해 졸업 이후 대학, 해외 유학 및 연수 등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필요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만 허용되고 축적된 자산은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라. 전달체계

□ 전달체계 개편방안

- 지역의 접근성 문제는 복지재단의 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직접적인 접근방법과 지역별 기준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직접 지역사무소 개설에 드는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역 문화재단과의 업무연계

- 지역 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부 및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 수행하도록 하며, 이외에 지방문화재단의 좋은 복지사업을 전국단위로 홍보하는 기능을 중앙에서 수행하는 등의 협업체계 구축

□ 장르별 협회·단체 네트워킹 강화

- 장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회 사무국을 전달체계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현재 장

르별 협회나 단체를 통해 사업홍보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전달체계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공단 조직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단위의 부처간 협약 또는 예술인복지재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지방문화재단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간접고용 하는 방식으로 중앙단위 예술기관들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
- 주요 지역 혹은 광역단위로 문화예술관련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동 기관에 기존 문화예술기관들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예술인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 '공정위원회'의 설치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인을 복지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 과 혹은 팀의 설치

*주요용어: 예술인 (맞춤형)복지, 여성예술인, 원로예술인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예술인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고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준은 미약함.
-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였지만, 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며, 동 사업은 저소득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확장성에 한계를 지님.
 - 여러 분야의 다양한 예술인이 소득과 활동분야와 관련 없이 함께 참여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구축이 요구됨.
- 예술인 복지의 목적은 4대사회보험의 지원과 예술인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었지만, 현재는 산재보험만이 운영되고 있으며(오세곤, 2013), 사회보험 지원의 경우에도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이 존재하므로 ‘예술인 복지’의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 그동안 예술인복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주로 공제회설립을 위한 연구이었으며, 실질적인 예술인의 복지실태와 그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되는 연구를 진행한 바는 거의 없는 실정임³⁾.
 - 늘어나는 예술인들의 복지욕구와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예술인 맞춤형복지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활유지는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산업이 국가 성장의 주요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복지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부의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 맞춤형 복지지원 및 복지전달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 원로 영화인만을 대상으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지만, 동 조사는 영화에 한정되어 진행된 한계가 있음(김태완 외, 2008).

2. 예술인 복지현황

-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사망이후 동년 10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됨. 이후 2012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예술인 등록제,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등 다양한 고용 및 복지제도 등이 만들어짐.
- 하지만 현재의 예술인복지지원제도는 보장범위와 내용이 협소하며, 지원대상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은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술분야를 벗어나 다른 일자리를 모색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음.
- 과거에 비해 예술인의 노동시장 참여상태는 안정적이기 보다는 불안정한 형태로 변경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활동의 불안정을 유발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동거가구의 생활유지를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됨.
-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자유전문직(25.6%), 임시고용직(17.4%)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무직·은퇴 비중이 51.9%로 가장 높았음.

〈표 1-1〉 문화예술인 취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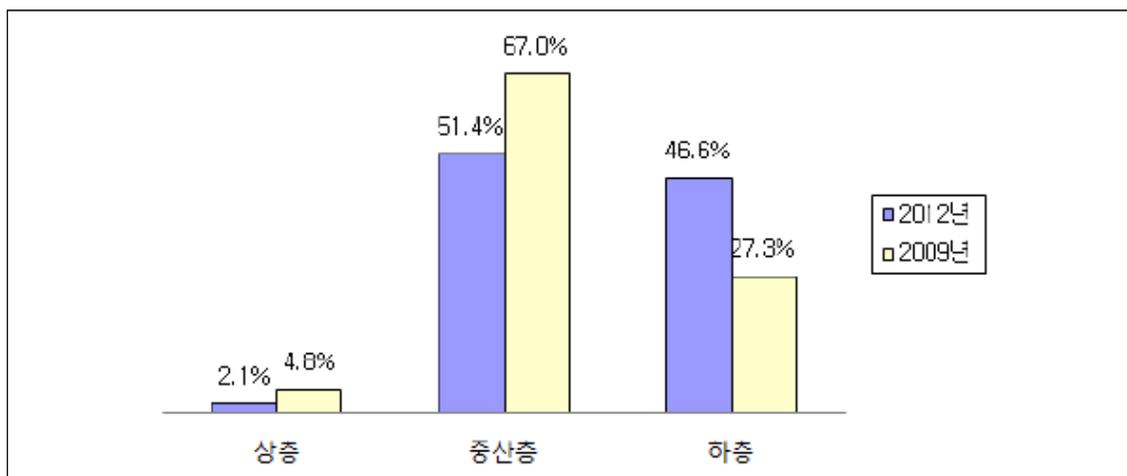
구분	2012년	2009년
자영업·고용주	16.2%	16.5%
전업작가·자유전문직	20.7%	26.4%
정규 고용직	18.3%	22.9%
임시 고용직	12.8%	10.4%
기타	5.6%	0.1%
무직·은퇴	26.5%	23.8%

자료: 허은영(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인용

- 직업이 없는 이유를 별도로 살펴보면, 은퇴(29.1%), 기타(28.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실업(17.0%), 가사(16.3%) 등의 순이었음.
 -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은 가사(39.56%), 기타(23.5%), 실업(14.0%)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은퇴 비중이 59.9%, 기타 16.1%로 높은 수준임.
- 기타를 제외하면 은퇴, 실업, 가사 등의 사유는 원로예술인, 청장년 예술인 및 여성예술인 등이 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다른 조건의 예술인에 비해 원로, 여성예술인이 좀 더 소득활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음.

- 예술인의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도 2009년에 비해 감소하여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009년 67.0%에서 2012년에는 51.4%로 하층으로 여기는 경우는 2009년 27.3%에서 2012년 46.6%로 크게 증가함.
-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예술인(48.0%)에 비해 여성예술인(57.6%)의 중산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중산층이라는 비중이 56.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 실제 예술인의 수입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29.5%이었으며, 남성(27.1%)에 비해 여성은 34.0%로 높은 수준이었음. 60세 이상에서는 동 비중이 36.1%이었음. 가구소득에서도 15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이 27.3%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 동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은 비예술인을 포함한 인식조사와 차이를 보여 2014년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비중이 21.6%인 것에 비해 예술인이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김미곤 외, 2014; p102).

[그림 1-1] 문화예술인 생활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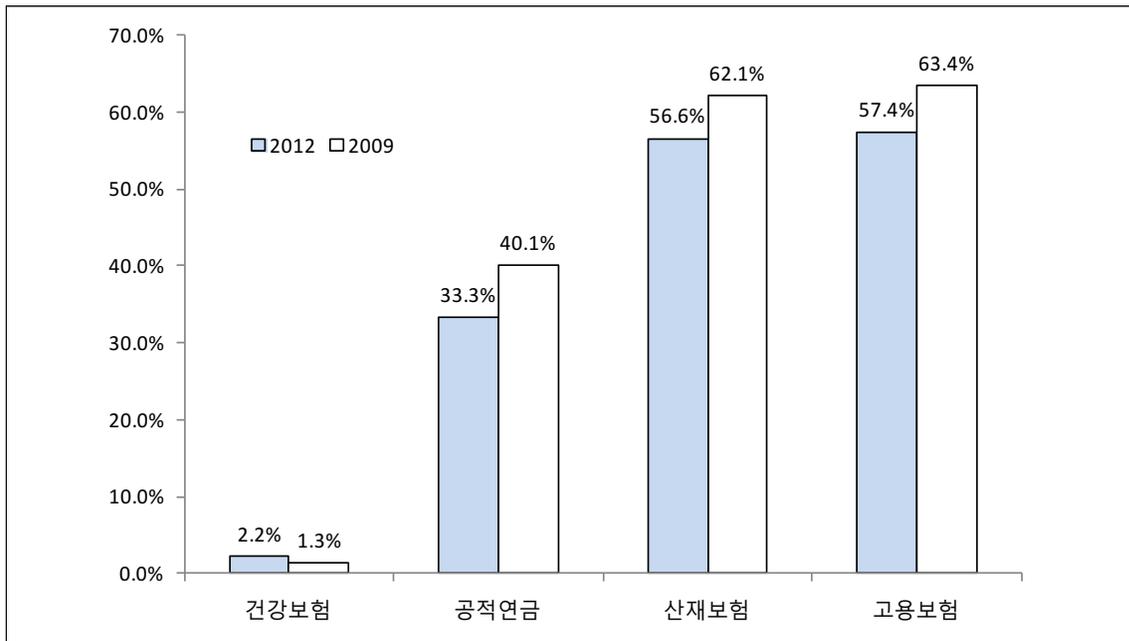
자료: 허은영(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인용

- 문화예술실태조사에서 복지관련 질문은 4대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여부를 질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이를 기초로 보면,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2009년대비 2012년의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복지욕구 및 복지인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의 사회보험 가입여부가 거의 유일한 자료임. 따라서 관련 자료 축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즉 원로예술인으로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사회보험 가입보다는 노령연금 수급 상

황이 중요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있지 못함.

- 여성예술인은 경제활동 참여가 낮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이 중요함에도 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단점이 있음.

[그림 1-2] 문화예술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추이



자료: 허은영(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인용

-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인식조사(전화조사)와 차상위 실태조사(3년주기)를 통해 복지부문에 대한 수혜현황과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동 조사자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예술인의 복지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으로 예술인의 생활형태와 복지인식 및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15년 3년단위 정기적으로 조사되어온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조사표 내용 및 조사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조사가 진행됨
 - 하지만 동 조사는 3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실태조사이며, 기존 조사와의 연계, 예술인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필요성 등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이 부족한 상황
 - 현재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실태 및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및 기초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

제2절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에서 운영중인 예술인 및 기타 직종 관련 사회복지사업 현황분석
 - 국내외 예술인 대상 사회복지사업 파악
 - 제도별 운영사례, 목적 및 대상 등 분석
 - 예술인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 대한 복지사업 사례 조사
 - 과학기술인,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분석을 통한 예술인 적용가능성 연구
 -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주요 지원대상으로 거론되는 농어촌 거주자 및 농어업인과 과학기술인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 분석을 통해 예술인 복지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동 지원대상을 통해 찾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

- 예술인 사회복지 관련 선행연구

- 예술인 대상 복지욕구 조사
 - 여성 및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실태, 욕구 및 만족도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 실시
 - 세부적 표본추출 및 설문지 구성은 제3장에서 다루고 있음
 - 예술인관련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만족도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수행

- 예술인 대상 맞춤형 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연구
 - 여성 및 원로예술인 대상 기존 사회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제안
 - 국내외에서 진행된 보건복지 분야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및 사례분석
 - 여성 및 원로예술인 대상 중장기적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제시
 - 주거, 건강, 보육 등 여성 및 원로예술인 대상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
 - 기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활용방안 제안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민관협력 방안,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참여방안 제시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 방법

- 여성 및 원로예술인 사회복지 수혜정도 및 인지도와 욕구파악을 위해 관련 문헌 자료 분석, 복지조사(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

- 국내외 예술인 및 기타 직군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제도 및 실태 분석
 - 국내외 사회복지 법 및 제도와 현황 분석
 - 예술인 이외 직종에 적용되는 사회복지 제도 및 운영사례분석

- 예술인을 대상 사회복지 욕구 및 인식조사
 - 조사대상 : 원로 및 여성예술인
 - 원로 및 여성예술인의 복지욕구 및 인식조사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원로 및 여성예술인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청년예술인 중장년 남성예술인에 대한 비교조사 실시
 - 조사대상 그룹별로 70명씩 총 280명에 대한 실태조사
 - 예술인복지법4조의 2(실태조사) 및 시행령2조의2에 근거하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정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조사로 예술인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실태조사를 실시
 - 반면에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는 표본이 부족하지만 시행령2조의2 1항에 명시된 수시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즉 특정예술인(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여성 및 원로예술인에 면접 설문조사
 - 전화조사와 비교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문항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표본추출방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표본추출 실시 예정

□ 예술인 복지 전문가 대한 자문회의

- 예술인 및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예술인을 위한 사회복지 현안,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

2. 기대 효과

- 여성 및 원로예술인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욕구파악을 통한 맞춤형 보건의복지 정책의 구현
- 예술인 복지정책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의 실현
- 복지 사각지대 예술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3. 한계

-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76번)’와 관련된 실태파악이 부족(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 직장내,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은 여성예술인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동 분야가 새롭고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든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함.
- 예술인 대표성 측면에서 원로 및 여성 예술인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에 기초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간 및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한계
 - 2015년 하반기 진행된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예술인 전수대상 13만명중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표본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약 2만여명에 못미치는 표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제 2 장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사례

제1절 예술인 복지 정책사례

제2절 해외사례

2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사례 <<

제1절 예술인 복지 정책사례

1. 예술인 복지 관련 논의

- 정부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오래되지 않았음 (이하 김태완·정희선, 2012; 참조).
 - 초기에는 정부의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 스스로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시작됨.
 - 1981년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1984년 영화인복지재단의 설립되었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이 한나라당 대선공약에,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으로 예술인 공제회 도입이 제안됨.
 - 위의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후 2005년 연극인복지재단과 영화산업노조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와 지원방안들을 위한 노력들이 시작
 - 예술관련 단체들의 설립과 더불어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들이 시작되었으며⁴⁾, 그 결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예술인을 위한 공제회 설립이 포함되었으며, 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진행
 - 예술인 공제회 관련 연구는 박영정·공혜영(2008a, 2008b) 연구를 시작으로 조성한 외(2008), 김태완 외(2009) 등의 연구가 있었음.
 - 2003년에는 예술인을 위한 당시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음(정갑영 외, 2003).
 - 공제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지만, 공제회 특성이 모든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이기 보다는 안정적 소득을 지닌 예술인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예술인들의 근로자 지위부여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짐.
- 하지만 예술인 복지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의 사망으로부터임.

4) 예술인 복지 관련 주요 토론회로는 2006년 “예술인복지방안을 모색을 위한 세미나”(서울연극협회, 연극인복지재단), 2007년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예술경영지원센터, 연극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2008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연극인복지재단, 정병국의원), 2009년 “예술인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있었음.

이후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추진이 국회와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 2012년 11월 시행됨.

- 예술인복지법을 토대로 2012년 11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동 재단을 통해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박영정·김태완·양효석 외, 2012).

〈표 2-1〉 예술인 복지관련 논의

연도	내용
1981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설립
1984	영화인복지재단 설립
2002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 설립 추진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공약(한나라당 16대 대선)
2003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출범
2004	〈새예술정책〉 ① 4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②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③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예술인 공제회 제도 도입 공약(열린우리당 17대 총선)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방안 제시 (문광위 이광철의원, 보건복지위 유시민의원)
	문화예술인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법안 마련 공약(민주노동당 17대 총선)
2005	연극인복지재단 출범
	전국영화산업노조 출범
2006	예술인복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서울연극협회·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7	전국미술인노동조합 출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전국영화산업노조 산별교섭 타결
2008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연극인복지재단·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예술인공제회 설립 검토(98번째 과제 중 하나)
	영화인 노후 복지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한국영화인복지재단·영화진흥위원회)
2009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한국연극인복지재단·정병국의원)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문화예술인 공제사업: 국회제출, 정부입법(공고 2009-145호))
2010	예술인 복지법안(문광위 정병국 의원)
	예술인 복지법안(문광위 서갑원 의원)
	영화인공제조합 설립방안연구(영화진흥위원회)
2011	예술인 복지법 발의(전병헌 의원, 일명 최고은법)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문광위 최종원 의원)
	예술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문광위 정장선 의원)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법률 11089호) 통과
2012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 시행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2013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 토론회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보험료 30%) 실시
2014	예술활동 증명사업
	예술인 사회보험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보험료 50%) 실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2015년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으로 변경)

자료: 김태완정희선(2012), 「예술인복지법 통과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8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 예술인들의 오랜 노력하에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예술인 복지지원기관으로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등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짐.
-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필요성, 부처 내·부처 간의 협의조정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조성현·김철, 2012).
- 예술계 내부에서도 활동분야에 따라 복지지원의 필요성 및 복지재정 확보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합의된 복지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
- 중장기적으로 예술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예술인 복지욕구 파악 및 증진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위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예술계는 물론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음(조성현·김철, 2012; 김태완·정희선, 2012).

2. 중앙, 지방정부, 지역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예술인 복지 증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예술인복지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조)’ 조항에 따르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
 -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술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롭게 제안함(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정감사 업무현황).
 - 2012년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여건 개선 기반 마련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설계 및 도입,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확대, 저작권 보호 강화
 - 창작활동 지원(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
 - 2013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 가입 지원하고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설계 시 반영 추진

-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30% 지원
- 창작지원금 및 교육훈련 지원(창작지원금 월 60만원, 5개월/ 교육훈련 강좌형·맞춤형·바우처)
- 예술인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 예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 예술인이 활동하는 장르의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예술인할인(패스)' 시범 시행
- 2014년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고 보조 비율 확대('13년 30% ⇒ '14년 50%)
 - 예술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 예술인 패스 도입, 예술인 대상 국공립 문화시설문화예술 관람 시 입장료 할인혜택 (30% 이상)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 추진(연령, 활동기간에 따라 3~8개월까지 월 1백만 원 지원)
 - 예술인의 지역·기업 파견 지원, 교육비 지원(최대 1백만원), 예술인 잡페어 개최 등
 - 예술인 신문고 구축
 - 문예지 발간 시 보조액의 50% 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급 의무화
- 2015년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 무술연기자, 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의 예술인들을 위해 산재보험료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29,850원))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립예술단체·공공기관문예기금 지원단체 대상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50%) 지원)

- 문화예술 창작 지원 체계 선진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대상범위 및 우수 신규사업 지원 비율 확대
-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 공연예술 공연장 대관료 지원 등 간접 지원,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계한 창작산실 사업 지원
 - 시각예술 신진·유망·중견·원로 작가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가 전작도록 발간 지원
 - 교육 및 훈련 지원
- 2016년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조성
 - 서면계약 법적 의무화
 -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 시행, 위반한 사업주에 제재 강화
 -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자산기준 완화(본인: 최저생계비 200%→250%/ 피부양자: 최저생계비 300%→375%)
 - 자산확인이 어려운 예술인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심의제’ 신설
 - 원로예술인 지원금 확대(기존 200만원→300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예술인 보육지원센터 대학로 외 지역 추가개소
 - 예술인 파견사업 확대
 - 190개 기관, 500명→300개 기관, 1천명
-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2013년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 지역별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의 목적과 예술인 정의 등을 기초로 지자체별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대한 조항을 포함함.
 -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부산, 제주, 안양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

〈표 2-2〉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2016.1월 기준)

연번	지역	구분 (단체장)	법규명	공포일	시행일	문화재단 유무
1	경상북도	광역시 (김관용*)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3.05.30	2014.5.30	문화재단 없음
2	인천 서구	기초 (강법석*)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1	2013.10.1	문화재단 없음
3	울산광역시	광역시 (김기현*)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2	2014.10.3	문화재단 없음
4	부산광역시	광역시 (서병수*)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30	2014.10.30	부산문화재단 (2009 설립)
5	대전광역시	광역시 (권선택*)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2013.12.1	2014.12.31	대전문화재단 (2009 설립)
6	창원시	기초 (안상수*)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4.2.7	2015.2.7	창원문화재단 (2008 설립)
7	제주특별 자치도	광역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2014.3.18	2014.9.18	제주문화예술재단 (2001 설립)
8	안양시	기초 (이필운*)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4.10.21	2015.1.1	안양문화예술재단 (2009 설립)
9	전라북도 전주시	기초 (김승수*)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5.5.11	2015.5.11	전주문화재단 (2006 설립)
10	광주광역시 서구	기초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7.10	2015.7.10	문화재단 없음
11	전라남도 군산시	기초 (문동신*)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10.8	2015.10.8	문화재단 없음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6a), 지방자치단체 예술인복지지원 정책 현황

□ 지자체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 부산광역시: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 2016년~2020년 5년간 총 3개분야 19개 과제 수행을 목표로 함.

- 2016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술인 행복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구성, 예술인 예장공간 운영 추진 예정

〈표 2-3〉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목표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직업권익 신장	예술인 생활 활력
추진 과제	①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② 예술인 행복코디네이터 운영 ③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⑤ 예술인 100인 라운드테이블 운영	① 표준계약서 정착 ② 청년예술가 인턴지원 ③ 우리동네 예술가 양성 및 지원 ④ 예술인파견지원 참여기관 매칭 지원 ⑤ 청년예술가 일자리 박람회 ⑥ 빈집을 Art Space로, '반딧불이' 사업 추진 ⑦ 예술인 예장공간 운영 ⑧ 예술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① 예술인자녀교육 지원 ②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③ 예술인 휴 안심프로그램 운영 ④ 예술인법률자문단 운영 ⑤ 부산예술인 명예의 전당 추진 ⑥ 예술인 패스 확대
사업비	2,750백만원	7,020백만원	1,410백만원

자료: 부산광역시(2016). <http://www.busan.go.kr/>에서 2016.01.21 인출.

□ 전라북도: 창작마중물 지원 시범 사업⁵⁾

- 창작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전업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작가들에게 용기와 자긍심 고취하고 전업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의 도약판 제공
 - 문학, 시각예술 분야, 도내 5년 이상 거주하고 55세 미만 전업예술인 대상
 - 개인 창작활동비 월 10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
 - 2012년 기준 연 개인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 우선선정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국가의 문화시책사업을 수행하며 예술창작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지역문화진흥업무 뿐만 아니라, 국비 매칭 지역 협력형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술창작지원,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등 국가의 문화시책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임.

〈표 2-4〉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

영역	지역문화진흥	예술창작지원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사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국제교류 - 시민문화활동 지원 - 지역문화자원 개발 - 문화도시: 지역재생 - 문화마을, 공동체만들기 - 문화시설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지원 - 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 - 신진예술가 육성 - 창작레지던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카드바우처 - 문화예술기획바우처 -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예술교육 - 사회문화예술교육 - 전문인력양성 - 학교예술강사 - 지원센터 운영 등

자료: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워크숍 자료집(2013)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제5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의해 정해지며 설립·운영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 재단설립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의사결정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함.

- 2014년 12월 기준, 전국문화재단은 광역 13개, 기초 47개 등 총 62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음(유영삼·김병철, 2015).

- 광역문화재단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등 13개 광역시·도에 설립되어 있으며, 울산·전북·경북·세종 등 4개 지역은 미설립 지역임.
- 기초문화재단은 47개 시·군에서 설립 운영 중이나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에 불과하여 기초문화재단 설립률은 낮은 편임.

5)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서 2016.01.21 인출.

□ 각 시도문화재단은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영역으로 “문화예술창작진흥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인복지지원”을 재단 직접사업으로 운영 중임.

○ 시도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창작진흥 및 지원 영역 외 14개 영역의 사업을 공통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 기타 특수업무를 수행 중임.

-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 사업 영역으로는 “문화예술창작진흥” 외 “문화시설운영 및 관리”,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운영”, “문화예술교육”, “시민의 문화향수증진”, “전통문화계승발전”, “문화재발굴 문화유산보전”, “문화정책연구 개발·자문”,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문화정보서비스”, “기금조성 및 운영”, “기부유치 및 회원사업”, “문화상품개발”, “문화산업육성”, “기타사업 및 위탁사업”이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예술인복지지원” 외 5개 시도에서 기타 특수업무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개별 사업을 추진 중임.

〈표 2-5〉 시도문화재단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 사업 영역

구분	문화예술창작진흥 및 지원	문화시설운영 및 관리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운영	문화예술교육	시민의 문화향수증진	전통문화계승발전	문화재발굴 문화유산보전	문화정책연구 개발·자문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문화정보서비스	기금조성 및 운영	기부유치 및 회원사업	문화상품개발	문화산업육성	기타사업 및 위탁사업	기타 특수업무
강원문화재단	○	○	○	○	○	○	○	○	○	○	○	○	○	○	○	예술영재 장학사업
경기문화재단	○	○		○	○	○	○	○	○	○	○		○		○	지방향토사 연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개발, 문화관광자원 및 콘텐츠개발
대구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의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	○				○	
전남문화예술재단	○	○	○			○	○	○	○				○		○	남도예술은행 위탁운영, 전라남도립국악단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예술인 복지지원
충남문화재단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자료: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자료집(2015)

□ 지역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인복지지원 사업

- 추진과제: 창작·기획 인력 양성, 예술인 커리어 개발 지원
 - 주요사업: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재단 직접사업),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 문화예술기획 아카데미(재단 직접사업)
- 일반예술활동지원
 - 예술의 창작 및 발표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창작 역량강화, 도민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급을 목적으로 함.
 - 지원규모: 개인 300만원~1,000만원/ 단체 400만원~2,000만원
- 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
 -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역량 및 예술성·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자격기준
 - 개인은 제주출신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또는 개인발표회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예술인
 - 단체는 창단사업 후, 국내외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지원규모
 - 개인: 국내외 문화예술관련 연수 및 교육기관의 전문과정 참가,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 행사 참가지원
 - 단체: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창작과 관련된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관련 기관과 제휴하여 시행하는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정책사례 : 신진예술가지원 사업

-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각 시도문화재단의 사업명은 상이함.
 -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가육성지원, 차세대 artiStar 지원, 최초예술지원 등
- 지원분야는 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전통), 다원으로 전남문화재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문화재단에 분야별 제한을 두고 있음.
- 모든 시도문화재단에서 만35세를 신청자격 연령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여부, 주소지여부, 지역연고여부, 최근 실적기준 년도 등 지역별로 다양한 요건을 제시함.
- 창작지원금, 경비지원 등의 재정적지원과 멘토링 연계, 공연장대관, 기술인력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역량강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재정적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표 2-6〉 시도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관련 복지정책 사례

구분	사업명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규모
강원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문학, 무용, 시각, 연극, 음악, 전통	- 강원도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가로 최근 5년 이내 활동실적이 있는 만35세 이하의 개인	- 창작지원금(월 25만원 이내) -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순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공연장 대관, 장비, 기술인력지원
경기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창작공연 지원	연극, 무용	- 만23세 ~ 만35세의 예술가 - 프로젝트팀, 신규단체 신청가능 (단, 평균연령 만35세 이하로 조직되고 만3년 이내에 설립된 팀)	- 선정작품당 1천만원 상금지원 - 제작자문 및 행정지원 - 공연장 대관, 장비, 기술인력지원 - 시범공연 홍보, 마케팅
대구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공연(무용, 연극, 음악, 전통), 시각(건축, 사진 포함)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 - 만 35세 이하의 개인예술가(초·중·고·대학생 제외) -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 매월 80만원 9개월간 지원
대전문화재단	차세대 artStar 지원	문학, 시각, 공연(대중,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다원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981. 1. 1 이후 출생의 전문예술가(초·중·고·대학생 제외) - 문학: 개인 작품집을 발간한 자, 신춘문에 당선자, 문예지 추천, 운문 5편, 산문 1편 이상 전문문학적 발표 - 시각: 1회 이상 개인 전시회 개최, 3회 이상 전시 참가, 국내·외 레지던시 참여작가 - 공연: 1회 이상 개인 공연을 개최한 자, 조연급 이상 2회 이상 공연 출연, 3회 이상 공연 출연 - 다원: 두 개 분야 이상의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 연출로 1회 이상 활동, 3회 이상 공연 출연	- 예술 창작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 - 1차년도 200~600만원 - 2차년도 500만~1,200만 원
부산문화재단	젊은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미정	- 부산지역 만 35세 이하의 젊은 예술가	- 6,500천원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 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 데뷔 및 초기 단계의 창작활동을 희망하는 만 35세 미만의 신진예술가 - 문화예술 공공지원금 지원 수혜 경력이 없는 예술가 우선 지원	- 창작지원금 2백만원 정액지원 (* 상금 방식으로 지급) - 전문가 멘토링 지원
전남문화예술재단	청년예술가 육성사업	구분 없음	- 전남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만35세 이하의 개인예술가 - 1차년도 사업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예술인에 한하여 최대 2년 연속 지원 가능	- 창작활동비지원(매달 40만원, 8개월) - 창작공간제공 - 전시·공연참여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멘토 컨설팅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시각, 공연(무용, 음악, 연극, 다원, 전통), 문학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전업예술가 - 1981.01.01. 이후 출생 예술가 - 대학원생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창작(작품제작)활동 및 발표지원 -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지원 - 역량강화프로그램 실시 - 500만원~1,200만원 지원
충남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문학, 시각, 공연(음악, 전통, 무용, 연극)	- 충청남도에서 주소를 둔 만35세 이하의 전문 예술가 (초·중·고·대학생 제외)	- 1차년도 500만원 - 2차년도 500만원~1000만원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문학, 시각, 공연(음악, 전통, 무용, 연극)	- 만 35세 이하의 예술인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연고(충북출생자, 1년 이상 거주자, 충북소재학교 졸업생)의 예술가로 최근 5년 이내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청년예술가 1명 당 4~8백만원 (개인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충북문화재단 주최의 컨설팅 -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 각 시도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참조(2016.03 기준)

□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한계

-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은 '신청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적임.
 -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에 못 미치는 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제한적임.
 -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을 하는 방법이 까다롭고, 예술인 특성상 예술작업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독립된 환경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 원로예술인들이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요구됨.
- 13개 시도문화재단 중 유일하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가복지에 관한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대상별(신진·원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예술인의 특성상 예술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겸업예술인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정책은 각 지역출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각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권 향상, 각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 등을 주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3. 다른 직업군에 대한 복지 예술인 복지지원 사례

가. 농어업 종사자

- 농어업 분야는 과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서 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196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농어업은 축소되고, 많은 농어업 종사자는 산업발전을 위한 노동력 제공의 기능을 수행(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참조)
- 더욱이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FTA 등 대외적 시장개방 정책으로 인해 농어업부문은 계속해서 위축되어 왔으며,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 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옴.
 - 도농 간 소득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농어업 종사자 소득은 2005년 78.2%, 2011년 59.1%까지 크게 줄어들었음. 2013년 63.0%로 상승하지만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을 보여줌.
- 정부에서는 도농 간 산업 및 소득 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약칭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⁶⁾, 동 기본계획은 매 5년을 주기로 2015

6) 동 기본계획은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은 2010년 법률명칭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됨

년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농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동 기본계획은 농어촌에 관한 정책을 포괄하여, 보건복지,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삶의 질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목적은 농어촌 거주자 및 농어업인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 정주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나가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역시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그 평가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함.
 - 농어촌 및 농어업 종사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법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도농간 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문화예술분야 및 그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본계획, 지원정책 수립 등의 논의가 요구됨.

□ 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중 보건복지 분야

- 보건복지 분야는 크게 보건과 복지 및 전달체계 관련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건분야는 우선적으로 도시에 비해 취약한 공공의료, 응급의료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정신노동이 많은 예술인을 위해서도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음. 단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
- 복지분야는 농어업인 사회보장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주축으로 하고 있음.
 - 사회보장 강화분야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강화, 농어업인 재해 보장체계 강화 및 농지연금을 포함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포함

□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중 예술인과 우선적으로 비교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임.

- 동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으로 1차 기본계획 수립이후 삶의 질 기본계획의 핵심적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업임.
-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 종사자의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음.

- 복지부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 종사자를 위해 보험료의 22%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나머지 28%를 농어촌 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지원
 - 최근 들어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에서 농어업인 소득 간 차이를 두어 저소득층에게는 현행과 같은 보험료 지원을 고소득층에게는 복지부 지원 보험료 경감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 이하는 정률(50%), 기준소득 이상은 정액을 지원하고 있음.
- 기준소득의 기준은 2007년 530천원, 2014년 850천원으로 두 번에 걸쳐 인상됨(1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소득이 아닌 표준소득 월액의 12등급을 기준으로 했음).
 - 현재 기준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원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월평균 보수 140만원(2016년기준) 이하 근로자의 보험료 60%(신규 60%, 기존 40%)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제기
- 예술인의 경우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료의 50%,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수 있음. 특히 노령층의 경우 의료비 및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
 - 현재 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는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일을 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 및 전업주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기타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안전재해보장제도, 안전보험(공제) 개선, 노인·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활동보조기구지원(구입, 수리 등), 여성 농업인 지원(영농도우미, 창업지원 등), 위기집단 지원(폭력, 학대 예방 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예술인과 관련하여 복지재단에서 이미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와 사고후 보상,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산재보험 지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하고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고령은 누구나 직면하게 되며, 장애 역시 각종 사회적 위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장애를 극복한 예술인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도 함.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예술인 역시 일차적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예술활동(작품제작, 전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들은 일반적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령 및 장애 예술인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에서는 여성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결과 여성의 비중이 34.8%로 많은 여성들이 문화예술분야에 참여하고 있음. 여성의 경우 일을 하는 과정(차별, 학대 등), 자녀 양육 과정(경력단절) 등에서 남성에 비해 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예술인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 파악할 필요가 있음(본 연구의 주요 과제중 하나임).

○ 3차 기본계획에 추가된 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임. 최근 들어 폭력·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내, 직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 및 학대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치료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음.

-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인을 위한 폭력 및 학대 등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피해지원 기관, 쉼터 등) 확충,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치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홍보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폭력 및 학대 등은 문화예술분야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부문임. 특히 도제식, 선후배 관계 등이 강한 문화예술분야에서 폭력 및 학대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76번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체계구축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주요 복지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면, 먼저 건강보험료 지원은 2007년 약 504천세대에서 2015년에는 358천세대로 감소함. 반면에 세대별 지원액은 연간 284천원에서 483천원으로 70.1%가 증가

○ 지원세대는 농어업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동일하게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줌. 반면에 세대당 지원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의 높아지고, 보험료 지원수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증가. 최근에는 보험료 지원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표 2-7〉 건강보험료 지원규모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월평균 지원 세대(천세대)	504	484	457	435	413	402	387	363	358
1세대당 평균 지원액(천원/년)	284	322	340	374	408	436	462	494	4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시기 도입된 농업인 연금보험료 역시 해마다 지원수준이 상향조정되고 있음. 지원대상은 2008년 273천명에서 2015년에는 311천명으로 증가.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지원예산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표 2-8〉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규모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기준 소득금액	48만원	52만원	62만원	73만원	79만원	79만원	79만원	79만원	85만원	91만원	
1인당 최대 지원가능액(월)	21,600원	23,400원	27,900원	32,850원	35,550원	35,550원	35,550원	35,550원	38,250원	40,950원	
예산	월평균 지원인원(천명)	-	-	273	253	243	219	230(266)	257(290)	291	311
	예산액(억원)	-	-	884	917	940	869	924	1,059	1,403	1,63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종사자로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됨. 도입당시 처음 120명에게 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약 4천여명, 2015년 5천여명을 지원할 예정. 농지연금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농업인의 규모에 비해서는 소규모임.

〈표 2-9〉 농지연금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8월)	2014	2015
가입자(누적임)	1,007(0.1%)	2,202(0.2%)	2,826(0.26%)	3,963(0.36%)	5,173

주: ()는 65세 이상 농가인구 대비 농지연금가입자 비율임
 자료: 농지연금 포털, 보도자료(<http://www.fplove.or.kr/>)

- 정부에서는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지원 수단 중 하나이면서 미래 농업인재 육성을 목표로 농촌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무이자)학자금 대출사업을 장기간 운영함(1994년부터). 2014년에는 42천여명이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누계로는 약 513천여명에 이르고 있음.
 - 학자금 지원사업이 무이자 이지만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사업이라면 순수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2005년부터 함께 운영하여 2014년까지 약 86천여명의 농업인 자녀 및 후계자들이 장학금을 수혜 받음.

〈표 2-1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고(출연금)	5,567	3,108	475	505	605	355	311	208
인원	513	304	29	31	33	34	40	42
용자액	11,563	5,575	929	1,012	1,103	925	1,021	997

주: 1) 94~계속(2004년 교육부→농식품부로 이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표 2-11〉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항목	인원	금액
2005	대학 및 고교 장학금	7,201	3,797
2006	대학 및 고교 장학금	8,665	6,230
2007	대학 및 고교 장학금	9,119	6,754
2008	대학 및 고교 장학금	7,984	6,146
2009	대학 및 고교 장학금	6,643	7,785
2010	대학 및 고교 장학금	7,590	9,330
2011	대학장학금	3,971	9,115
	고교장학금	5,417	2,778
2012	대학장학금	8,335	14,462
	고교장학금	6,344	3,252
2013	대학장학금	6,382	11,666
	고교장학금	1,024	512
2014	대학장학금	6,357	11,471
	고교장학금	1,000	500
2005~2014	총 계	85,982	93,8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 정부에서 농촌 및 농업 종사자를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일까?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농식품부의 농촌 및 농업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변화가 있지만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8년 3,580억원에서 2015년에는 4,565억원으로 천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농식품부 전체예산 대비 2008년 2.9%에서 2015년에는 3.3%까지 약 0.4%포인트가 증가하였음.
 - 특히 농지연금이 2011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표 2-12〉 농식품부 예산 및 복지분야 예산 및 기금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식품부 전체예산	124,242	146,363	146,738	148,644	154,083	135,268	136,371	140,431
농촌개발복지증진	13,351	17,485	16,982	16,536	16,097	16,484	16,449	17,229
농촌복지증진 ¹⁾	3,580	4,067	3,855	3,765	3,644	3,913	4,277	4,565
농지연금 ²⁾	-	-	-	62	190	237	339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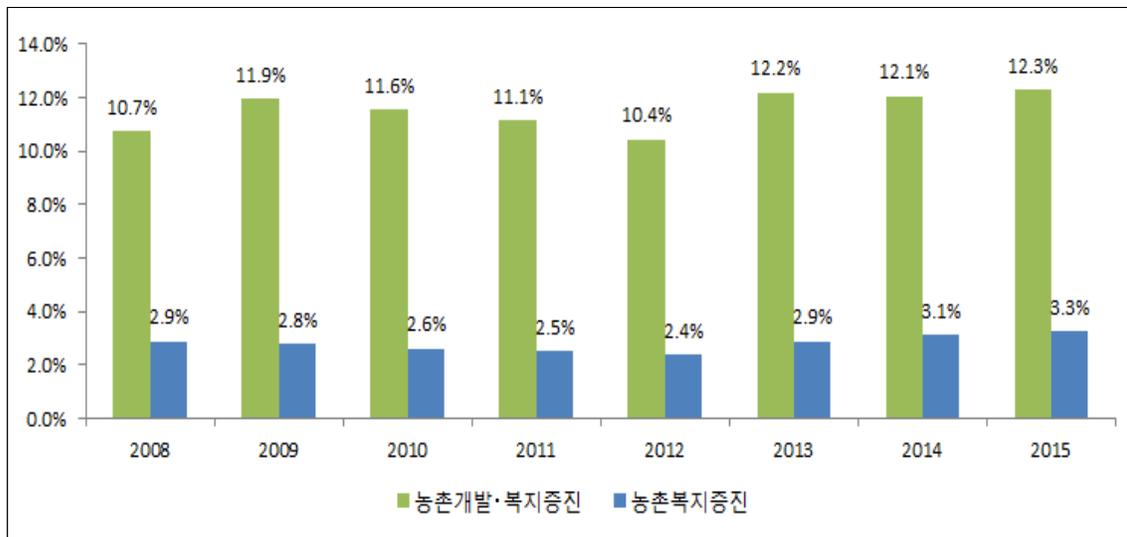
주: 1) 2013년부터 '농업인복지증진'은 '농촌복지증진'으로 부문별 항목명이 변경됨.

2) 농지연금은 2011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그림 2-1〕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농촌개발복지증진 및 농업인 복지 예산 및 기금 비중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 복지사업별로 보면 이미 소개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 사업의 농업인 복지지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73.7%), 기타 복지사업으로 보육여건 개선, 장학금 지원 등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이외 최근 신규사업으로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농지연금, 농업 안전 보건센터 지원 사업 등에 재정지원이 진행되고 있음.

44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표 2-13〉 농식품부 복지 사업내용 예산 및 기금 추이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어민 건강보험료	135,634	170,704	159,423	154,420	166,861	176,121	183,752	172,983
농어민 연금보험료	88,398	91,665	93,977	86,927	92,428	105,905	140,308	163,760
취약농가 인력지원 ¹⁾	5,792	5,992	6,520	6,520	6,300	7,140	7,560	8,610
농업인재해공제	27,839	32,176	34,445	37,229	35,841	36,818	39,669	48,951
농촌출신학자금용자 ²⁾	41,260	47,500	50,521	60,482	35,507	31,100	20,800	11,400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³⁾	41,108	40,648	40,648	30,961	-	-	-	-
농촌주택개량 ⁴⁾	18,000	18,000	-	-	-	-	-	-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	-	-	-	27,495	32,724	29,396	29,06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	-	-	1,505	2,105	2,40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	-	-	-	-	-	4,150	4,200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	-	-	-	-	-	-	15,150
농지연금	-	-	-	62	190	237	339	394
복지사업 소계	358,031	406,685	385,534	376,601	364,622	391,550	428,079	456,919

주: 1) 여성농업인 지원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변경(2008년부터)

2) 한국장학재단(시행주체)

3) 2012년 보건복지부 이관

4) 2007년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출금활용, 2010년부터 이차보전 일원화(일반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이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표 2-14〉 농식품부 복지사업별 비중

(단위 : %)

사업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어민 건강보험료	37.9	42.0	41.4	41.0	45.8	45.0	42.9	37.9
농어민 연금보험료	24.7	22.5	24.4	23.1	25.3	27.0	32.8	35.8
취약농가 인력지원 ¹⁾	1.6	1.5	1.7	1.7	1.7	1.8	1.8	1.9
농업인재해공제	7.8	7.9	8.9	9.9	9.8	9.4	9.3	10.7
농촌출신학자금용자 ²⁾	11.5	11.7	13.1	16.1	9.7	7.9	4.9	2.5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³⁾	11.5	10.0	10.5	8.2	-	-	-	-
농촌주택개량 ⁴⁾	5.0	4.4	-	-	-	-	-	-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	-	-	-	7.5	8.4	6.9	6.4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	-	-	0.4	0.5	0.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	-	-	-	-	-	1.0	0.9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	-	-	-	-	-	-	3.3
농지연금	-	-	-	0.0	0.1	0.1	0.1	0.1
복지사업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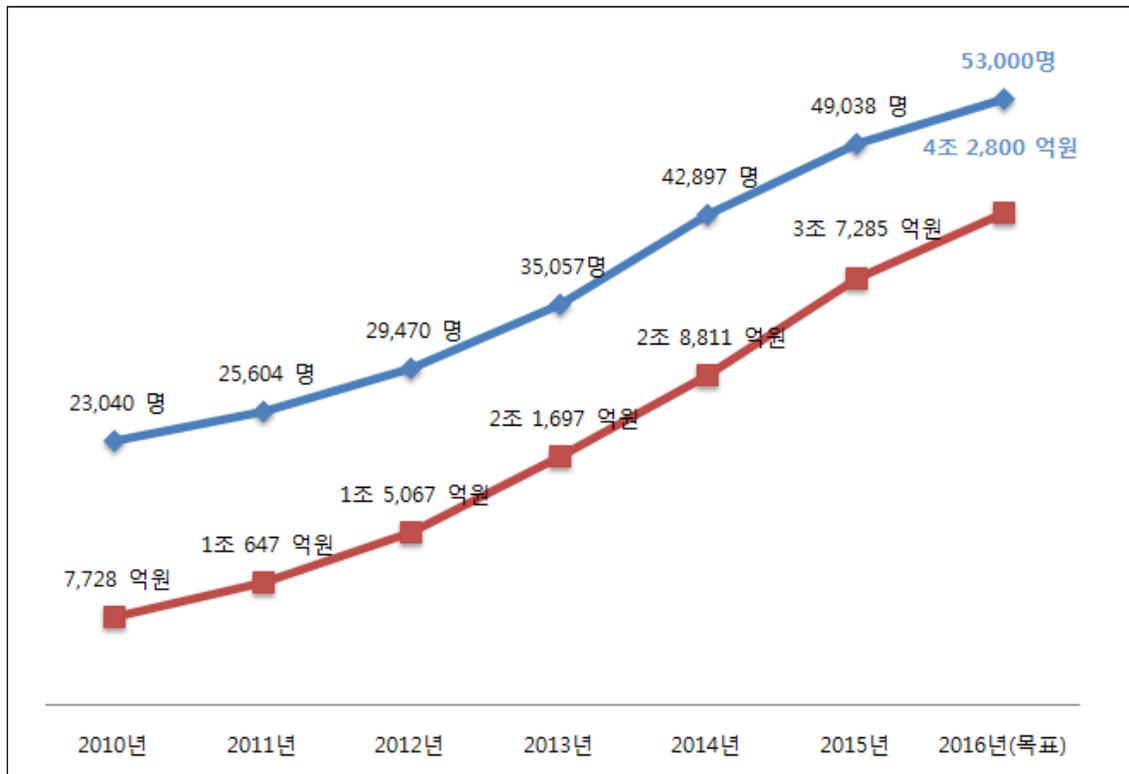
나.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들어 이공계 위기론,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임(홍성주, 2012: 이하 참조).
 - 외부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에 의존적인 산업기술을 자체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투자에 관심이 제고
 - 정부에서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기초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법7조)'을 수립하기 시작
 - 법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조항에서는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연구자의 공적기록, 우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상과 활용방안 지원, 과학기술인 등록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규모 및 내용, 재정적 지원 부문 등에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
- 여기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기본계획속에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봄.
 -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적용된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을 수립하면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포함
 - 동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포함함. 하지만 동 기본계획은 국민의 정부 임기말 시점에 수립되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새롭게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 참여정부에서는 기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새롭게 수정하여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파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모색
 - 동 계획에서는 전주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후보장 강화, 처우개선 등이 포함
 - 과학기술인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설립(2003)하고,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은 기존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더불어 과학영재 육성, 수학과학 교육 및 문화예술간 연계 교육, 이공계 진로 다양화, 과학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등을 포함(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

- 복지증진의 대표적 방안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약 600억원을 지원
 -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경력(퇴직) 과학기술자 재취업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
-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실현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지원
- 세부적으로 공적연금(사학연금)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인 전용 복지콤플렉스 건립,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지원, 이공계 공직임용 기회 확대,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두고 있음.
- ※ 2015년 (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 복지콤플렉스 조성사업 시작
- 이외에 퇴직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술인 멘토, ODA 지원 강화 등과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모색
 - 반면에 예술인 복지지원에 기본계획은 물론 노후보장수단인 연금에서도 국민연금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예술인을 위한 지원은 아직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는 별도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차 2008~2012)을 수립하여 현재 2차(2013~2017)까지 이르고 있음
- 동 계획 속에서는 과학영재의 육성과 지원기관 확대, 프로그램 개발, 해외교류 등을 포함하여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사회발전과 국제적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분야 인재의 조기발굴, 지원 등을 위한 방안마련이 과학기술인 영재발굴 계획 등과 비슷하게 함께 선행되어야 함.
-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들 수 있음. 동 공제회는 2002년 제정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공적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제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노후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의 다양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특징은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초기부터 재정지원을 했다는 점임.

- 즉 설립당시인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00억원 도합 40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후 과학기술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2천억원의 자금(2008년)을 조성하여 이를 토대로 안정적 공제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지원과 과학기술인의 가입확대로 2015년 기준(2월)으로 자산 3조원을 달성함.
-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설립된 이후 가입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약 23천명에서 2015년에는 49천명으로 2016년에는 5만명 이상의 가입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

[그림 2-2] 과학기술인 공제회 가입자 및 자산규모 추이



자료: 과학기술인공제회(2016),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5만명 돌파(보도자료, 2016. 3)

- 과학기술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규모는 2013년 미래과학창조부 신설 이후, 2014년부터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
-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예산의 경우 농식품부와 같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전체예산 증가 양상에 따라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향상(과학기술인 복지 콤플렉스 운영,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을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음.

- 과학기술인 만남·교류 및 활동거점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예산은 2014년 10억 원에서 2015년 2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함.
- 2015년부터 과학기술인의 노후 주거 안정 및 지식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에 17억 원이 편성됨.

〈표 2-15〉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복지분야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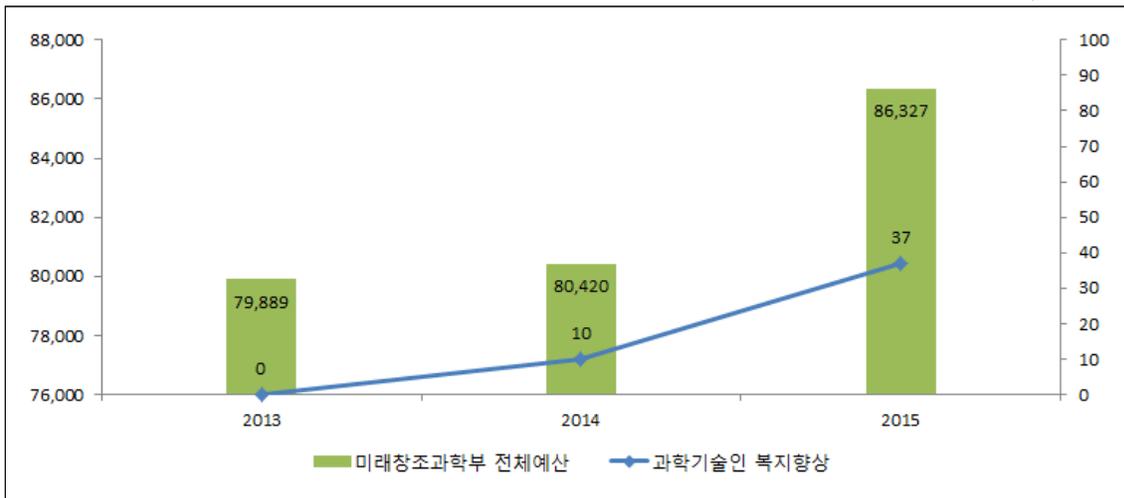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미래창조과학부 전체예산	79,889	80,420	86,327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	10	37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운영	-	10	20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	-	-	17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그림 2-3〕 미래창조과학부 전체 예산 대비 과학기술인 복지 예산

(단위: 억 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표 2-16〉 예술인 및 기타 직업군 비교

구분	예술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
지원논거	외부: 문화예술콘텐츠 등 미래 한국 주요 먹거리로 인식 내부: 불안정 처우, 낮은 소득으로 인한 생활고	외부: 대외시장 개발에 따른 농어업인 소득감소 내부: 고령화, 농촌은 고령이라는 정서적 측면	외부: 노벨상 등 세계적 위상의 과학기술 개발 내부: 이공계 약화, 기초과학 부실화
지원범	문화예술진흥법 18조5항(문예진흥기금의 활용) 예술인복지법 4조(책무), 7조(산재보험), 10조(복지재단 사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정부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5년단위)을 통한 인적·물적 지원 재정: 농어촌 특별세를 통한 재정지원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5년단위 지원계획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안정적 운영
지원대상	① 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② 기타 추가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미비	① 등록 농어업 종사자 ② 복지사업별 농어촌 거주자(예, 보육지원 등) ③ 기타 추가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① 등록 과학기술인 ② 기타 추가적으로 과학 영재,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복지 사업 수행
국정과제 연계	76.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11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	33.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 52.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15.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회적 인식	인문예체를 통한 문화예술계 긍정적 측면 인지, 향후 미래 산업군으로 발전성 인식 문화예술인에 대한 여전한 차별(부정적 인식, 자녀의 미래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 인지 등)	귀농귀촌 증가, 농어업 투자를 위한 재정지원(농특세), 재해(구제역, AI 등) 등 위기 발생시 우선지원 대상 ⇒ 국민들의 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동의 및 관대	국가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인지, 자녀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이공계 진출의 관대
한계와 발전성	↓ -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원에 대한 필요성 낮음(대중인식이 지속되지 못함)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본계획 수립 부족 -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 증대 ⇨ 실제 지원으로 연계 방안 모색	↓ -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에 대한 욕구로 농촌의 발전가능성 증대 - 정부의 안정적 재정화보(농특세)를 통한 투자 확대 및 지원정책의 다양화 추구 가능	↓ - 과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이공계 진학률 및 외부평가를 통한 기초과학분야 중요성 감소 - 일부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화(게임, 바이오 및 나노 등)와 이로 인한 다른 과학분야(수학, 화학 등)의 소홀 - 법과 기본계획을 통해 주기적 평가가 가능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 가능

4. 선정기준 관련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문화향수 사업과 예술인복지지원사업으로서 문화 및 여행바우처와 창작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임. 무엇보다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창작지원을 위한 창작지원금 사업의 선정기준 명확화는 무엇보다 중요함.
 - 여기서는 선행연구와 기존 제도를 중심으로 타부처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수준과 그 근거들에 대해 분석하고 창작지원금 사업의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000년대 들어 많은 복지사업들이 만들어져 왔으며, 복지사업의 증가는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에서 나타남.
 - 각각의 복지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혹은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강신욱 외(2011) 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 만을 기준으로 2011년 289개의 복지사업들이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복지부가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 문화체육관광부는 2개사업(문화 및 여행바우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사업은 각각의 선정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사업 선정기준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선정기준선만 해도 23개 이르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100%, 120%, 150% 수준임.⁸⁾
 - 복지사업에 있어 각 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각 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과 두 번째로 사업운영을 위한 자원과 인력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정된 복지기준선을 통합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및 여행바우처(여행이용권)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맞춤형 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 2016년에는 중위소득기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8) 여기서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 기준이며,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외에 추가적인 선정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음.

〈표 2-17〉 선정기준선 수준별 사업분포

소득기준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소득인정액≤정액(50/80만원)	2	0.7	0.7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00%	27	9.3	10.0
소득≤최저생계비 100%	1	0.4	10.4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22	7.6	18.0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7	2.4	20.4
소득≤최저생계비 120%	3	1.0	21.5
소득인정액≤정액(72/11281)	1	0.4	21.8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40%	1	0.4	22.2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50%	6	2.1	24.2
소득≤최저생계비 150%	17	5.9	30.1
소득≤전국평균 50%	3	1.0	31.1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200%	1	0.4	31.5
소득≤최저생계비 200%	4	1.4	32.9
소득인정액≤전국평균 100%	4	1.4	34.3
소득≤도시근로자 평균 70%	2	0.7	35.0
소득≤분위수 50(=중위소득)	6	2.1	37.0
소득인정액≤분위수 70	5	1.7	38.8
소득≤최저생계비 300%	4	1.4	40.1
소득≤전국평균 100%	2	0.7	40.8
소득≤도시근로자평균 100%	3	1.0	41.9
소득≤분위수 70	3	1.0	42.9
소득≤전국평균 150%	7	2.4	45.3
소득≤도시근로 200%	2	0.7	46.0(133)
미확인	108	37.7	83.7
소득제한 없음	47	16.3	100.0(289)

자료: 강신욱 외(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7(재인용)

-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가 중위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비교해 보면 최저생계비 100%는 중위소득 약 43%, 120%는 중위소득기준 약 50%, 150%는 중위소득 기준 60% 이상일 것으로 예상
- 2016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예술인 창작지원금⁹⁾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은 2015년은 최저생계비 185%, 건강보험료는 200%를 2016년에는 소득은 중위소득 75%를 적용하고 있음.

9)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사업은 2014년 초기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업의 취지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갑작스러운 소득활동 미비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됨. 하지만 동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유사 및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2015년부터는 창작지원금 사업으로 변경. 동 사업의 선정기준선 역시 많은 예술인의 창작지원을 돕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표 2-18〉 주요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선 변화

부처명	급여/서비스 명	급여선정/소득기준 (2010년기준)	급여선정/소득기준(2016년기준)	비고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29%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3%		주거급여 우선유지사업	
교육부	교육급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국토교통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3%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보건복지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
	방과후 보육료지원					
	장애아동수당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및 여행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75%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지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50%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		
	청소년 한부모가구 교양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연료비, 의료비 등)	소득≤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75%	-		
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	소득≤ 최저생계비150%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생활, 건강지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72%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제도	소득≤전국평균 50%	기준 중위소득 80%	-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200%	소득≤전국평균 60%	-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소득≤도시근로100%	월평균소득액≤전년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액	-		
국토교통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소득≤도시근로 180%(85m 초과)	소득≤도시근로 70% (60m 이하)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소득≤전국평균150%	소득≤전국평균 150%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소득≤도시근로200%	소득기준 없음			

□ 일부 복지사업으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노인돌봄사업의 선정기준 변화에 대해 보고자 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 사업과의 유사성 측면에서 노인돌봄사업의 경우 고령예술인을 위한 복지지원 비교차원에서 살펴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¹⁰⁾에게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됨(보건복지부, 2016a).

1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함.

- 기존 최저생계비에 의한 절대적 기준에서 2015년 맞춤형 급여체제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의 적정선 이하로 선정기준이 변화함.
 - 기준선 또한 생계지원과 의료, 주거지원의 소득기준이 각각 최저생계비의 120%, 150% 이하에서 지원내용별 구분 없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이것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변경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정해짐.
 - ~2014년 12월 31일
 - 소득 기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이하)
 - 2015년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일 것(1인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 이하
 - 재산¹¹⁾ 기준: 지역별¹²⁾로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2016년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로 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로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경우 시기별로 위기가 발생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변경되는 것과 맞추어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변경해 옴.
 - 무엇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기준 설정에 과학적 및 합리적 근거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또 다른 지원기준인 위기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위기 범주에 비해서 중요성이 감소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연동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기준 변경과 규모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정경희 외, 2014).

11)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합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함.

12) 지역구분은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에 대한 공적 보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어 각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선정기준이 적용됨.
- 2007년 차량보유와 관련한 재산기준이 있었으며, 부양자가 근로능력자로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8년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범위가 80%에서 150% 이하로 지원범위가 확대됨.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의해 중증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포괄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경증대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표 2-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선정기준의 변화

구분	선정기준	우선순위 ¹⁾
2007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 건강: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치매·중풍 등 중증) - 재산: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또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 제외 - 부양: 근로능력자가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타 돌봄서비스와 중복급여 제외	- 독거, 부부노인
2008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건강: (1월~6월)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7월 이후) 40점 이상~55점 미만 - 타 돌봄서비스와 중복급여 제외	① 소득수준 ② 동거가족 유무 ③ 부양가능여부
2009	- 전년동일(2008년 7월 이후)	- 전년동일
2010	- 전년동일	- 전년동일
2011	- 연령: 만 65세 이상 - 건강: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②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기준 ②의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만 가능)	① 건강상태 ② 소득수준 ③ 동거가족 유무
2012	- 기존대상자 전년동일 - 신규신청자 기준변경 -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 - 건강: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진단서 첨부 제출)	- 전년동일
2013	- 2011년과 동일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의사진단서 첨부): 2012년도 치매 또는 중풍으로 인하여 의사진단서만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기준(200% 이하)이 적합할 경우 2013년까지 자격기준 유예	① 건강상태 ② 동거가족 유무 ③ 고령가구
2014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전년동일	① 대상자 특성 1) 독거노인 2) 치매질환자 3) 노인성질환자 ② 건강상태
	- 단기가사서비스지원 ①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② 골절 또는 중증질환수술자로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 제출 ③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독거노인
2015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전년동일	- 전년동일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②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③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해당없음

주: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구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됨.

자료: 정경희 외(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개발방안 연구, 재인용

- 이후 2009년, 2010년은 선정기준에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2011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A·B,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상태 선정기준이 개정됨.
- 2012년에는 기존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전년과 동일하나, 201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55점 이상~75점 미만→ 53점 이상~ 75점 미만)로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등급외 A 판정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편입을 예상하여 신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함.
- 2013년에는 2012년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 서비스우선권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당년까지만 자격기준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서비스우선권을 취소함.
- 2014년, 2015년에는 2011년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만 75세 이상)를 서비스대상에서 우선함.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013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로 단계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였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

○ 2014년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 2015년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범위 확대함.

- 2014년은 ‘가구’ 소득으로 등본내 성인가족 전원의 소득을 포함
- 2015년은 ‘가구원’ 소득으로 형제, 자매, 기타 등의 소득은 제외한 신청인 본인과 부모, 자녀, 배우자, 사위, 며느리 중 성인가족의 소득을 포함

〈표 2-20〉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변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명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좌동)
사업목적	- 활동수입 없는 기간 소득지원 - 위기상황지원	- 낮은 활동수입 보완적 지원 - 창작활동 장려 및 동기 고취		(좌동)
사업대상	저소득예술인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	활동을 희망하지만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	(좌동)
선정기준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좌동)		(좌동)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건보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	“신청인이 등재된” 건보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예술 경력 기간	현재(최근)예술활동 실적	- 예술경력 기간 - 예술활동수행 (신청 후)	(좌동)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6b),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인용

- 2015년에는 원로예술인을 특정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원로예술인의 경우 현재의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일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는 달리 예술경력 기간과 선정 후의 예술활동 수행을 인정함.
 - 2016년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역시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의 개념으로 개정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의 보험가입 형태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판별함.
- 각각의 복지사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은 사업의 고유특성, 예산기준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이라는 개념하에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이를 선정기준으로 삼아왔음.
 -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되며 기존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어도 선정기준의 설정목적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역시 각각의 선정기준선을 가지고 있음.
 - 두 제도 모두 전체 지원대상자 중 지원대상의 비율(노인의 70%, 중증장애인의 70%)이 확정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의 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70%에 해당되는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경우에 초기 도입당시는 중증장애인의 70%가 대상이 아닌 56%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당시 동 기준이 설정된 근거는 중증장애인중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시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 5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정함.
 - 위에서 살펴본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소득 및 재산기준 보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위기 기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제도가 발전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기존 복지제도와는 유사한 특성을 지님.
 - 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제도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2015년 진행된 예술인실태조사의 소득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가구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해외사례

1. 독일¹³⁾

□ 독일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사회보험법(Kunstlersozialversicherung, KSV)을 제정

○ 1975년 문화예술 관련 직업들의 불안정한 경제적·사회적 실태가 독일연방의회에 보고된 것을 계기로, 1983년 예술인사회보험이 시행됨.

- 예술인사회보험은 자영(自營)의 예술·언론인을 위한 법적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¹⁴⁾,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3제도)로, 예술인 사회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함.

- 2012년 현재 자영업적 자유직업군¹⁵⁾의 주요 직종별 분포를 보면 문화분야 종사자가 291,000명에 달함.

○ 가입 대상자는 자영예술인으로 활동하여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자영 예술인이란 음악 설치 또는 회화 미술에 종사하는 창조, 수행, 혹은 교육을 행하는 이들로 정의됨. 언론인은 소설가, 기자 또는 다른 형태의 저술가를 가리킴.

-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3,900유로(월평균 325유로)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다만 예술 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가의 경우는 가입 후 처음 3년간은 반드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도 됨. 또한 6년간 2회까지는 위의 소득 기준을 넘지 못해도 자격유지 가능

- 해당 예술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업활동이어야 하고,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아야 함. 또한 예술 및 저술활동이 기본적으로 독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지만,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면 사회보험 적용 가능

- 예술가의 구체적인 활동 분야는 집필, 조형예술, 음악, 표현예술 4분야로 나누어 짐.

○ 본 제도의 운영 재원은 예술인 본인, 연방정부, 사용자(예술·출판관계 기업)가 분담

- 보험료 중 예술인 본인이 50%부담, 국고(연방정부)보조가 20%, 예술·출판관계 기업에

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3)의 <주요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4) 일반적으로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는 강제가입(의무가입)이 아니라, 일정의 조건 하에 임의가입이 가능함. 다만, 보험료는 피용자가 본인·사업주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임.

15) 독일의 파트너십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자유직업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됨. 첫째, '카탈로그상의 직업군'으로, 해당 법규 내에 이미 구체적으로 그려진 직업들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크게 네 가지 집단으로 나뉘는데, 의료관련 직업, 법·세금·경제경영·고문관련 직업, 자연과학·기술관련 직업, 정보전달 관련 직종 및 문화직종임. 두 번째 집단은 카탈로그상의 자유 직업군과 '유사한 직업군'임. 카탈로그직업군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유사직종들을 뜻함. 이는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규정됨. 예를 들어, 치과의사는 카탈로그 직업군에 속하지만 치과보조사는 유사직종에 속함. 세 번째 유형은 '업무상의 자유직업'임. 업무상 자유직업에서의 업무란 "자영업적으로 행해지는 학문직, 예술직, 문필직, 강의직 또는 교육직상의 업무"를 가리킴(박명준, 2013).

서 예술인사회분담금으로 30%를 원조

- 사용자의 개념은 기획사, 갤러리, 음반회사 등 예술가의 예술 활동 및 작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주체임.
- 대상기업의 신고에 근거하여 예술가사회금고가 부과결정·징수함.

○ 예술가 사회보험의 집행기관은 예술가사회금고(Kunstlersozialkasse: KSK)

- 예술가사회금고는 독일연방관청에 소속되어 있음.
- 이 기관은 실제 예술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보험료, 연방보조금, 예술인사회보험분담금을 모으기 위한 기관으로, 모아진 자금은 각 보험자에게 이양함.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단에서 담당함.
- 예술가사회금고는 예술가의 자격확인,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거한 보험료 산정, 납부상황 등을 점검함.

○ 2009년 5월 사회법전(SGB)제3편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영화·TV 업계의 문화 크리에이터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폭적인 개정을 함.¹⁶⁾

- 통상, 실업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전 2년 동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함. 그러나 예술가는 단기적인 일이 많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음.
- 개정 후는 최대 6개월까지 이동 등의 직무에 관계하는 활동도 직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해짐. 다만, 일반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가장 최근 연간수입이 전고용자의 평균 연수입을 넘지 않아야 함.

2. 프랑스¹⁷⁾

□ 공연, 영화, 방송분야 관련 단기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계약이 없을 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종의 실업보험제도에 해당하는 ‘공연예술 앵테르미탕(Intermittent du spectacle)’¹⁸⁾제도가 있음.

○ 이 제도는 영화계 종사자들의 요구로 1936년에 시행된 제도로, 프랑스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도¹⁹⁾

16) (株)野村総合研究所. 2013. 諸外国の文化政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文化庁委託事業.

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3)의 <주요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8) 앵테르미탕이란 기간을 정한 반복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개념(한국노동연구원, 2014).

19) 1936년 영화산업계의 인력이 부족하여 영화제작자들은 인력수급의 편의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계약을 맺게 됨. 이어 1939년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유급휴가 및 기금을 관리하는 창구가 만들어지고, 1958년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 이때 영화제작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보험 적용, 1967년에는 전국 단위의 고용지원센터가 설립, 공연분야를 담당하는 지점이 처음으로 설립됨. 1968년에는 공연분야 사업체에게 실업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1969년에는 예술가가 앵테르미

- 프랑스의 문화예술인 대상 실업보험 대상은 공연기술직과 공연예술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노동을 하는 임금근로자
 - 공연기술직의 경우 엔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로, 고용주의 활동영역이 다음의 9개 해당영역이어야 하고(① 시청각 제작, ② 영화제작, ③ 음향편집, ④ 창작 및 행사서비스 기술지원, ⑤ 라디오 방송, ⑥ 및 ⑦ 민간 및 지원된 공연, ⑧ TV방송, ⑨ 애니메이션 제작), 둘째는 노동자의 직종으로 위의 9개 영역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하는 직종이어야 함.
 - 공연예술가의 경우, 이들의 고용주가 민간-공공에 관계없이 적용
 - 2011년 기준,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39만 명으로, 이 중 2/3정도에 해당하는 254,394명이 이 제도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납입함.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인원은 105,100명이었음.
- 한편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실업보험기금의 적자지속으로 인한 재정손실 가속화와 제도 약용²⁰⁾으로 인해 2003년 제도개혁을 시행, 수급자격 강화 및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축소함.
 - 수급자격은 공연기술자는 1년 중 304일(10개월) 중 최소 507시간, 공연예술가는 1년 중 319일(10.5개월)간 최소 507시간(제도 개혁 전, 12개월 동안 507시간)을 근로를 하고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의 근로기간의 판단기준은 고용주가 신고한 노동시간으로 계산되는데, 공연기술가와 공연예술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공연기술가 경우, 노동시간은 매 월 208시간만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각 지역의 노동청의 승인을 받으면 260시간까지 가능함.
 - 질병, 임신, 입양, 육아, 산재 등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은 일일 5시간씩 노동한 것으로 인정
 - 공연예술가의 경우, 고용주가 신고한 노동시간 또는 스탬프로 계산. 1스탬프는 동일한 고용주와 연속 5일 미만의 노동을 하였을 경우 12시간으로 인정하며 연속 5일 이상의 노동을 한 경우 1 스탬프는 8시간으로 인정. 월 당 28 스탬프까지 가능
 - 예술가를 대상으로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수행한 교육 55시간(50세 이상인 자는 90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 다만,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은 해당 예술가의 전공에 맞는 역량전수이어야 함.

탕 체계에 포함, 이후 공연분야 기술직도 포함됨.

20) 공연 및 영상분야에서 일하지만 실제 공연예술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며 정규직 혹은 준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할 인력(예: 매표소 직원)들이 제도의 유연성을 악용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박지은, 2015).

- 공연기술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질병, 임신, 입양, 육아, 산재 등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은 일일 5시간씩 노동한 것으로 인정
-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연속 8개월(243일)(제도 개혁 전, 연속 12개월)
 - 엔테르미탕 실험보험 급여 수급자가 퇴직하여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됨
 - 실업수당 최저급여액은 일당 28.58유로, 최고급여액은 일당 31.36유로(2014년 7월 1일 기준)
 - 실업급여 지급은 신청 후 일정기간 심사대기 및 임금수준에 따른 지급유예 기간을 거쳐 지급됨.²¹⁾
 - 실업수당 한도액이 도입됨.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예술가가 또 다른 노동계약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수당은 계속 지급되었지만, 임금소득과 실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사회보장제도 상한액의 1.4배인 월 4,283유로를 넘지 못하도록 변경함(2014년 변경 내용).
- 실업보험 분담비율은 총수입의 12.8%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함.
 - 고용주는 8.0%, 예술가는 4.8%의 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함(2014년 변경 내용).
 - 고용주의 실업보험 분담비율은 노동계약 기간에 따라 추가로 증가함. 기본적으로 3개월 미만 계약은 부담비율이 0.5% 증가하고, 1개월~3개월은 1.5%, 1개월 미만일 경우는 3% 증가함.
- 실업보험료 납부는 징수센터(Centre de recouvrement) 혹은 예술인 사회보장 기관인 GUSO가 담당
 - 징수센터는 국가조직으로 공연분야가 주요 활동인 고용주들에게 고용된 예술가의 실업보험 기여를 담당
 - 징수센터에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는 항시적이거나 일시적 고용주
 - 징수센터는 항시적 고용주들에게 매월 납부고지서 발송, 고용주는 고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험료와 같이 징수센터에 송부
 - 일시적으로 예술가를 고용하는 일시적 고용주들은 고용이 있을 경우, 월간증명서를 통해 현황을 알리고 보험료 납부
 - GUSO는 엔테르미탕의 보험료 징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분야 다양한 형태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단일 창구. 따라서, 공연관련 고용을 하는 고용주는 GUSO에 하나의 형식으로 한 번만 신고하면 사회보장관련 신고가 이루어지게 됨.

21) 지급유예기간은 2014년에 변경된 내용으로, 이 전에는 10개월 혹은 10.5개월 동안 총 2만 유로(약 2,900만원)이상의 임금은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었음. 2014년 변경된 내용은 기준 임금액이 9천 유로(약 1,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지급유예기간은 75일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180일로 늘어나게 됨(김상배, 2014).

〈표 2-21〉 프랑스 엔테르미탕 제도 변경 내용

구분	과거 안	개정 안
지위	특별지위	특별지위(유지)
수급자격	507시간/12개월	(공연 기술가)507시간/10개월 (예술가)507시간/10.5개월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속 12개월	연속 8개월(243일)
실업수당 최저액/1일	24.24유로	28.58유로
보험료 부담비율	(사용자) 7% (근로자) 3.8%	(사용자) 8% (근로자) 4.8%
실업수당 한도액	-	월 4,283유로

주: 2014년 변경내용.

자료: 김상배(2014), 한국노동연구원(2014)

□ 프랑스는 예술인을 정당한 직업군으로 인정하여 임금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은 ‘예술가의 집(Maison des Artistes, 이하 MDA)’과 ‘작가 사회보장관리협회(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des auteurs, 이하 AGESSA)’가 대표적

- MDA는 조형예술 및 디자인 등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를, AGESSA는 작가, 번역가, 책 일러스트레이터, 극작가, 사진작가, 작곡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창작물 저자 등 저작권을 가진 예술가를 담당했으나 2013년부터 사회보장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박지은, 2015).

- 이 두 기관은 예술가·작가들의 보험납부금액을 결정 및 징수, 예술가 현황 파악 등 예술인의 복지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임.

○ 가입대상은 프랑스에 주소지가 있고,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직전 년도 연소득이 8,487유로 이상(2014년 기준)이어야 함.

- 상기의 소득 기준액을 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예술 활동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빙서류 혹은 소득감소를 설명하는 소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각 위원회가 검토하여 가입여부 결정

-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와 배급자(출판사, 화랑 등)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운영

○ 저자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짐.

- 출판사는 원천징수의 형태로 저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총 9%를 3가지 사회보험 기여금으로 납부, 이는 저작물 공급자가 원천적으로 납부

- 저자는 자신의 직업훈련을 위한 기여로 0.35% 부담

- 일반사회보험에서는 저자의 소득 100%를 기준으로 1%를 기여, 일반사회기여보험 및 사회부채상환기여는 각각 저자 소득의 98.25%에 7.5%, 0.5%를 기여함.

- 예술가-작가들을 위한 조세혜택으로는 ① 예술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로 할인(일반 상품은 19.6%), 전년도 매출액이 41,700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 면제, ② 직업상 필요한 경비(재료의 구입 및 설비 취득 비용, 작업실 임대료, 연구비, 이동경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③ 연 32,100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괄 소득세를 적용하여 절차 간소화, ④ 아틀리에 등 창작활동에만 사용되는 장소에 대한 거주세 면제, 혹은 작업장과 거주공간이 혼용될 경우 작업장 비율에 따른 거주세 할인, ⑤ 예술가-작가가 아틀리에 등 작업장의 소유주일 경우, 해당 작업장의 부동산세와 대출이자 소득 공제(작업경비로 인정), ⑥ 아틀리에의 세입자일 경우, 임대료, 관리비, 건물 보험료를 작업경비로 인정하여 소득 공제, ⑦ 신진작가 지원을 위해 전문 활동 첫 5년간은 소득 금액의 50%만 과세대상으로 적용함(이영리, 2012).

○ 2009년 공연예술, 시청각예술(영화, 영상제작, 방송 및 라디오)음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기간으로 일하는 관리자, 비관리자, 예술가, 기술직 모두에게 재해보장보험과 건강 비용에 대한 보험체계 규정

- 보장내용은 예술가 및 작가들은 의료, 출산 및 육아, 장애, 노후, 사망, 가족수당 부문에서 일반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음. 단 노후는 예술인특별제도로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창작분야 퇴직연금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음.
- 별도의 실업수당은 없지만, 질병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면 4일째부터 의료보험을 통해 일일 수당(상해기간 중 활동지원비)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활동을 못해 소득이 없을 경우, 고용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특별연대보조금을 최대 1년간 수령가능.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에게는 창작지원이 아닌 순수 경제지원을 하는 특별보조금(최대 1,000유로)을 받을 수 있음.

□ 프랑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사례 중 하나로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이 있음(박지은, 2015).

○ 프랑스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은 단순한 작업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창작의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아틀리에에 입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아틀리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나 기존의 개인 공간 및 기존 아틀리에 수리 등의 지원도 포함
- 지원 자격은 프랑스에 거주하며 화가, 판화가, 조각가, 사진가, 조형예술가, 비디오작가 등의 예술가이면서 MDA나 AGESEA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국공립차원에서 제공하는 작가 아틀리에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아틀리에 아파트와 작업

아틀리에가 있음.

- 아틀리에 아파트는 작업공간인 아틀리에와 거주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예술가들에게 최소의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취지로 만들어 짐.
 - 아틀리에 아파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예술적인 선택 기준(예술작업의 수준, 예술성 등), 소득수준의 기준, 조형작업과 해당 아틀리에 구조의 상관성, 예술가 가족의 수와 아틀리에 크기의 상관성임. 문제는 실제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 작업아틀리에에는 예술작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 파리 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예의 1기 임기 때부터 작업아틀리에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전시킴.
 - 작업아틀리에에는 작가가 저렴하게 책정된 아틀리에 임대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거주공간의 임대료와 작업 공간의 임대료를 중복해서 지불해야 하고, 거주지 인근에 작업아틀리에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최근에는 버려진 거주 공간이나 공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 스쿼트 운동(movement squat)²²⁾이 일어나고 있고, 작가들이 일정한 아틀리에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대신 각 예술관이 제공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음.

3. 일본

- 일본은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가 및 관련 단체의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일본의 문화청(文化廳, Agency for Cultural Affairs)²³⁾은 신진예술인 등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음
 - 신진예술인의 해외연구(신진 예술인 해외연수제도)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분야의 예술인에게 해외에서 실천적인 연수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종래의 1년 연수, 2년 연수, 3년 연수, 특별 연수(80일), 고등학생 연수(350일)와 함께 2014년도부터 단기연수(20~40일)을 신설. 지금까지 약 3,250명 파견
 - 차세대 문화를 창조할 신진 예술인 육성사업은 신진예술인 등이 기초나 기술을 연마해

22) 예술 스쿼트(Squat artistique):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거나 거주권이 없는 예술가들이 빈 공간을 점거하여 창작공간과 대안적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운동

23) 문화청(文化庁, Agency for Cultural Affairs)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외국(外局) 중 하나로,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도모하면서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함.

가기 위해 필요한 무대 등의 실천 기회나 넓은 시야, 지견,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지식을 체득할 장소 제공과 함께 기반정비를 마련하고 있음.

- 대학을 활용한 문화예술 추진사업은 예술계 대학 등이 보유한 자원(교원, 교육연구기능, 시설·자료 등)을 활용한 무대기술, 미술 등에 관계하는 아트매니지먼트 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음(文化庁, 2015b).

〈표 2-22〉 2015년도 신진예술가 해외연구제도 연수원 채택상황(분야별 내역)

	1년연수	2년 연수	3년 연수	특별연수	단기연수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술	20	4	-	2	3	-
음악	16	2	-	3	2	-
무용	3	1	-	1	2	5
연극무대미술 등	7	-	-	2	1	-
영화미디어 예술	8	-	-	-	-	-
계	54	7	-	8	8	5

자료: 文化庁(2015a).

□ 반면, 일본의 예술인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복지제도는 민간차원의 상호부조 형태로 운영

○ 이에 일본문예가협회(文藝家協會)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1953년 4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의 설립허가 및 예산허가를 받아 문예미술국민건강보험조합(文藝美術國民健康保險組合)을 설립

- 이 외에도, 프리랜서 예술인 대상으로 지역으로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조합으로는 동경예능인국민건강보험조합(東京藝能人國民健康保險組合), 교토예술가국민건강보험조합(京都藝術家國民健康保險組合), 오사카문화예능국민건강보험조합(大阪文化藝能國民健康保險組合)이 있음.

○ 문예미술국민건강보험조합(文藝美術國民健康保險組合)은 문예·미술·영화·사진 등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조합

- 2015년 1월 현재, 조합원(세대주)은 7,601명(그 중 특례조합원은 226명), 가족은 5,862명, 총 13,463명이 가입되어 있음.
- 가입자격은 이 조합의 가맹단체 회원이고 일본에 거주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보험료는 조합원의 수입에 관계없이 균등
- 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보험급부와 보건사업이 있음. 보험급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법정급부와 조합이 임의로 시행하는 출산·사망 등에 대한 것이고, 보건사업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 유지·질병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

○ 동경예능인국민건강보험조합은 1952년 국가의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법인으로 설립

- 당초에는 동경도에 거주하는 예능 관계자만 가입대상으로 했지만 1972년 관계관청의 허

가를 얻어 적용지역을 확대, 동경근린지역(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에 거주하는 예능관계자도 가입 가능하게 됨.

- 2013년 현재 조합원은 5,239명, 가족 4,720명 총 9,959명이 가입되어 있음.
- 보험료는 조합원의 소득에 따라 다름. 기초공제후의 총 소득액의 0.44%임(월액).
- 의료비의 자기부담은 조합원 및 가족은 의료비의 30%, 미취학아동은 20%, 70~74세 미만은 20%, 75세 이상은 10%를 부담함.
- 동경조합에서 하는 건강사업은 특정건강·보건지도, 건강검진, 뇌검사보조, 치과검진보조, 예방접종보조 등이 있음.

○ 교토예술가국민건강보험조합은 1961년 교토에 거주하는 예술가, 전통공예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공공법인

- 2015년 현재 조합원(사업주)은 1,800여명, 종업원 및 가족을 포함 4,550여명이 가입되어 있음.
- 가입자격은 예능, 미술, 공예, 전통공예, 기타 예술관계 업무에만 종사하는 개인사업주로, 그 가족도 가입가능. 주민표의 주소가 인가구역(교토부(京都府)이외의 인가구역 해당)이어야 함.
- 보험료는 기초공제후의 총소득액의 0.6%임(월액).
- 의료비의 자기부담은 조합원 및 가족은 의료비의 30%, 미취학아동은 20%, 70~74세 미만은 20%, 75세 이상은 10%를 부담함.
- 교토조합에서 하는 건강사업은 특정건강·보건지도, 건강검진, 골다공증예방, 개별치과검진, 인플루엔자예방접종, 건강워킹 등이 있음.

○ 오사카문화예능국민건강보험조합은 1954년 12월에 설립,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예능이나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오사카부(大阪府)의 인가를 얻은 공공법인

- 2015년 현재 조합원은 2,018명, 가족은 1,708명 총 3,726여명이 가입되어 있음.
- 가입자격은 조합에 가입된 단체 회원이거나 예능, 음악, 미술, 사진·영상, 작가·문예가, 문화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함. 또한 주민표의 주소가 조합의 인가지역(오사카부(大阪府) 이외의 인가구역 해당)이어야 함.
-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후기고령자지원보험료와 개호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보험료는 세대 소득에 따라 18단계(1등급은 월액 약 8만원, 18등급은 월액 약 28만원)로 구성, 후기고령자지원보험료(약 2만 2천원)와 개호보험료(약 2만 5천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되어 있음. 가족의 의료보험료는 1개월에 1인 당 약 4만원
- 의료비의 자기 부담은 조합원 및 가족은 의료비의 30%, 미취학아동은 20%, 70~74세 미만은 20%, 75세 이상은 10%를 부담함.

- 오사카조합의 건강사업은 건강검진, 생활 습관병 검진, 인플루엔자예방접종, 기타 보건 사업 등이 있음. 출산육아 일시금은 출산한 경우 출산일시금으로 약 420만원을 지급²⁴⁾

〈표 2-23〉 각 조합의 사업안내

구분	가입자격	보험료 ²⁵⁾	지급액	의료비부담
문예 미술	문예, 미술 및 저작활동에 종사, 조합가맹 각 단체 회원	· 수입에 관계없이 균등 · 조합원: 월 169,000원 (의료보험 138,000, 후기고령자지원 31,000원) · 가족: 월 87,000원 · 개호보험료: 월 36,000원 · 특례조합원: 월 10,000원	· 출산육아일시금: 약 420만원 · 장제비: (본인) 70~110만원 (가족) 70만원 · 질병예방: ① 75세 미만 (본인) 23만원이내 (가족) 18만원 이내 ② 만 50세 미만 (본인) 34만원 이내	조합원·가족: 30% 취학전 아동: 20% 70세 이상: 10~30%
동경	조합원(프리로 예능활동을 하는 예술가제작스텝 등)과 그 가족, 가입은 세대단위. 동경 인근 거주자(주민표 주소지)	· 의료보험료: (월)기본금액 45,000원+공제후 총소득액의 0.44% · 개호보험료: (월)기본금 15,000원+공제후 총소득액의 0.08% · 후기고령자지원금: 기본금 15,000원+공제후 총소득액의 0.12%	· 출산육아일시금: 약 420만원 (다만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약 16만원 지급) · 장제비: (본인) 50~100만원 (가족) 30만원 · 입원 시 위로금: 입원 일로부터 6일 이후, 일일당 약 7,000원 지급(60일 한도) · 응급 시 이송비	조합원·가족: 30% 취학전 아동: 20% 70세 이상·75세 미만: 20~30%
교토	예능, 미술, 공예, 전통공예, 기타 예술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주 및 가족, 교토 인근 거주자(주민표 주소지)	· 의료보험료: (월)기본금액 41,000원+소득의 0.6% · 개호보험료: (월)기본금액 11,000원+소득의 0.15% · 후기고령자지원금: 월 12,000원	· 출산육아일시금: 약 420만원 (다만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약 400만원 지급) · 출산육아용품, 잡지 지급 · 장제비: (본인) 50~100만원 (가족) 50만원 · 인플루엔자예방접종: 2만원 내에서 지급 · 치과검진: 자기부담 1만원 · 염증, 마사지 치료 · 치료용장구(코르셋, 약사용안경 등)	조합원·가족: 30% 취학전 아동: 20% 70세 이상: 20~30% (과세소득이 145만 엔 이상 및 세대원은 의료비의 30% 자기부담)
오사카	가입단체 회원 혹은 예술계 종사자, 오사카 인근지역 거주자(주민표 주소지)	· 조합원과 가족의 전년도 과세표준액의 합계금액으로 1등급(8만원)~18등급(28만원)으로 구분 · 가족: 월 4만원(정액) · 개호보험료: 월 25,000원(정액) · 후기고령자지원금: 월 22,000원	· 출산육아일시금: 약 420만원 · 장제비: (본인) 30~50만원 (가족) 20만원 · 입원 시, 식사대 약 2,600원 지급 · 소아약시 등 치료용 안경 등 (9세미만 아동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 안경: 38만원(상한) - 렌즈: 16만원(상한) · 골절 등으로 인한 마사지치료비 · 응급 시 이송비	조합원·가족: 30% 취학전 아동: 20% 70세 이상: 20~30% (과세소득이 145만 엔 이상 및 세대원은 의료비의 30% 자기부담)

자료: 文芸美術国民健康保険組合.2015.事業案内, 日本芸能実演家団体協議会ホームページ, 京都芸術家国民健康保険組合ホームページ, 東京芸能人国民健康保険組合ホームページ, 大阪文化芸能国民健康保険組合ホームページ, 각 사이트 참조 (2016.02.14 인출)

- 출산 시, 임산부가 미리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조합이 임산부를 대신하여 420만원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 의료기관에서의 청구금액이 420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함.
- 동경도 23구의 2015년도의 보험료(연액)
 - 의료비: 가입자 전원의 기초공제후 총소득액×6.02% + 균등할(均等割) 약 300,600원×가입자 수(한도액 약 510만원). * 구(區)는 통일 보험료임.
 - 후기고령자지원금: 가입자 전원의 기초공제후 총소득액×2.34% + 균등할(均等割) 약 100,800원×가입자 수(한도액 약 140만원)
 - 개호보험료: 가입자 40~64세 전원의 기초공제후 총소득액×1.62% + 균등할(均等割) 약 150,000×가입자 수(한도액 약 120만원). * 개호보험료는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예(구에 따라 비율 및 금액이 상이함)
* 기초공제후의 금액이란, 총소득액에서 기초공제 약 330만원을 뺀 금액. 구(區)는 통일 보험료임.

- 공익사단법인 일본예술가단체협의회(日本藝能實演家團體協議會, 이하 예단협)²⁶⁾는 예술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74년부터 5년마다 예술인의 활동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 2015년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중·고령층 비율 증가
 - 2015년 조사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4세, 50세 이상이 응답자의 59.6%를 차지함. 5년 전의 조사(2009년)에서 평균연령은 51.5세, 50세 이상이 53.7%, 10년 전인 2004년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1.8세, 50세 이상이 53.5%로, 중·고령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한 해 동안 예술 활동 이외의 다른 업종에 종사한 응답자가 23.5%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점포나 공장 등에서의 아르바이트로 일한 비율이 11.5%를 차지함.
 - 개인 수입은 연 300만 엔 미만이 50%정도를 차지하였음.
 - 특히 200~300만 엔 미만이 17.7%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 엔 미만이 15.7%, 100만 엔 미만이 13.4% 순으로 나타남.
 - 수입의 형식으로는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가 56.9%로 가장 높았고, ‘월급, 연봉 등 정해진 보수’를 받는 비율은 낮게 나타남.
 - 업무환경에 대해서, 업무 상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26%로 나타남.
 - 상해치료비 등의 부담은 ‘본인이 부담’이 69.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은 7.6%에 그침.
 - 만일의 경우나 노후 준비에 대한 질문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에 가입’이 60.0%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가입’은 57.3%를 차지함.
 - 안심하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는 ‘예술 활동의 많은 기회’가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수나 업무시간 등 업무 조건’이 38.7%,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공적지원’이 31.2%,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제의 충실’(22.7%) 순으로 나타남(日本藝能實演家團體協議會, 2015).

26) 예단협은 1965년 설립된 예능실연가(이하 예술인)단체로 구성된 공익사단법인. 예술인단체 등의 상호 교류와 연수를 통한 예술 활동 추진, 저작권접권자의 권리 옹호, 예술가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연극, 음악, 무용, 연기 등 67개의 단체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중국

□ 2000년대 들어서부터, 중국은 「문화체제혁명」이라는 이름아래 문화의 산업화, 시장화를 진전 시켜옴. 이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던 문화를 산업으로 간주, 문화조직을 기업형태로 전환한다는 제도변경을 말함(渡辺浩平, 2013).

□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 문화체제개혁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됨.

○ 제 1기: 1978년 ~ 1992년

-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기존 문화의 부흥과 약간의 제도 변경임. 문화를 맡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불리는 국가조직이었음. 즉 정부에서 분배된 재정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함. 여기에 기업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그 시대의 개혁 요점. ‘사업단위, 기업화관리’라고 하는 것
- 사업단위의 극단은 작품의 유무, 관객의 수와 관계없이 운영예산이 지급되고 단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됨. 그러나 1980년말, 농촌부터 실시된 경제개혁과 함께 문화조직에 대해서도 ‘경영도급제(經營請負制)’를 도입, 조직이 자신의 경영에 책임을 갖도록 제도변경을 함.
- 1989년, 문화영역에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여, ‘문화시장관리사(文化市場管理司)’의 설치를 결정. 또한 재정부는 문화사업단위를 공익성, 준공익성, 경영성으로 나누어 예산집행을 함. 결국 제 1기는 문화산업화에의 실험이 이루어진 시기임.

○ 제2기: 1993 ~ 2002년

- 2000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제출됨. 이 시기에 행해진 것은 미디어의 ‘집단화’임. 지금까지 문화산업의 조직은 소과지역에 의한 개별 관리가 일어졌고,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선 발전은 할 수 없었음. 집단화는 시장의 일부 자유화를 위해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지역을 넘어 통합화하기 위한 조치였음.

○ 제3기: 2003 ~ 현재

-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사업’과 ‘산업’을 분리한 조직의 제도개변(改變)임.
- 중국은 문화상품(產品)에는 상품의 속성과 이데올로기의 속성이 있다고 봄.
- ‘문화사업’이란 현대생활에 있어서 시장의 도입이 불가능한 활동, 또는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상품을 비영리적인 원칙으로 생산, 분배, 전파하는 각종의 활동을 말함. ‘문화산업’이란 현대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문화상품은 상품으로서 생산되어 이윤을 얻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전자는 ‘공익성문화사업’이고 후자는 ‘경영성 문화산업’임. 전자는 시장화를 하지 않고, 재정에 의한 운영을 하는 반면, 후자는 시장화로, 소유형태도 주식시장의 상장이나 비공유제자본, 외화투자 등의 참가를 일부 허용함.

- 2005년에는 공유제 자본 이외의 문화시장의 투자 규칙을 명확히 함. 여기에는 문화 이데올로기의 부분 지도권은 공산당이 장악, 즉 자국의 '문화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참여를 인정한다는 것임.
- 이 시기에 문화사업을 전면적으로 번영시켜, 문화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방침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부분인 문화부가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음((株)野村総合研究所, 2013).

- 문화혁명 이후 1982년에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국가 출판사업 관리국, 국가문물사업관리국, 외문(外文)출판발행 사업국이 문화부에 통합되었음.
- 문화부에 소속된 직원은 총 342명으로 그 중 부장 1명, 부부장 4명, 관리직급 44명으로 구성. 문화부는 15개 부문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외에 조직의 운영을 직할하고 있는 사업 및 단체는 30개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부의 15개 부문 중 예술부문의 업무 내용은 문학예술발전계획책정/ 대표적·모범(模範)적·실험적인 예능종목, 사회적 가치가 있는 문예작품, 국가를 대표하는 민족적 특색이 있는 문예단체에의 원조/ 전국적인 예술전시, 중요한 예능활동 원조를 하고 있음.
 - 문화부가 직할하고 있는 사업 및 단체 중 예술가 지원 관련 단체로는 '문화부 문화예술 인재센터'와 '문화부 정년퇴직 등 인원서비스센터'가 있음.
 - '문화부 문화예술 인재센터'의 업무내용은 문화사업 인재 관련 중개파견, 인사대리, 인재 교류, 인재개발연수, 평가, 자격검정작업, 유학이나 해외취업지원, 인사이력의 수집관리 등임.
 - '문화부정년퇴직 등 인원 서비스 센터'에서는 예술퍼포먼스 단체의 정년퇴직 인원에 관한 지원이나 관리업무를 함.

□ 문화부 문화예술 인재센터는 1996년 6월 중앙기구 편성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됨.

- 문화부 직속 전민소유제 사업단위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지님.
 - 전국 문화예술인의 중개서비스 및 문화산업이 필요한 직업평가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인의 전문소양평가를 담당. 구체적으로는 문화산업에 관련한 전문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 인정, 문화부의 위탁을 받아 문화예술 직함에 관련한 테스트,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외 문화 예술 전문등급 시험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위탁을 받아 인사대리 및 인재파견²⁷⁾ 서비스를 제공함. 문화

27) 인재파견이란 인재임대라고 함. 파견 직장과 비파견 직장 간의 계약협력임. 파견 직장과 파견 직원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구축함.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인력자원관리로 볼 수 있음. 중국의 개혁개방이 점차 심화되고 사회노동보

예술인재를 교류하거나 기타 문화 활동을 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함. 문화예술인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문화예술 추천과 헤드헌팅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위한 인재의 정보수집, 정리, 관리 등을 하고, 문화예술인의 취업을 위해 인력 선정, 홍보, 문화예술인재 교류 정보 등 관련 발행물이 있음.

- 문화예술인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연출, 전시, 기능대회, 문화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문화부에 속한 예술단체·기구 및 관련 인원의 내부관리, 사회보험 가입, 인사분쟁 중재업무를 담당함.
- 중국 정부는 정보공개서비스망을 개설할 계획임. 이에 문화부 문화예술인 인재센터에서는 문화 예술인 인재뱅크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 해당하는 대상은 문학, 음악, 댄스, 사회자, 사진작가, 창의작가, 애니메이션, 게임, 서예, 서커스, 조각가, 민족 전통문화 등이 포함됨.

□ 문화부 정년퇴직 등 인원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부소속의 예술단체에서 종사했던 예술인이 퇴직 한 경우 다양한 지원과 관리업무를 시행함.²⁸⁾

- 예로 퇴직한 예술인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노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강의 및 상담시간을 개최. 재산 상속문제, 재혼상담 등 노인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
- 건강강좌를 열어 퇴직예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 노인성 질환인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 질환 예방 등에 대한 강좌 개최

장제도도 점차 보완되면서, 구직자의 새로운 관념에 따라 인재파견이 이미 서로 다른 인재시장에서 발전해옴. 파견회사가 주로 파견인원의 월급지급과 사회보장료의 납입 등 인사관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함.

28) 중국문화부 퇴직 등 인원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http://www.mcprc.gov.cn/whzx/zsdwtdt/whbltxryfwzx_zsdw/201411/t20141106_437052.html)

〈표 2-24〉 문화부의 조직과 업무내용

부문명	업무내용
사무부문	- 중대안건의 진척 상황 관리, 조정 - 내부규칙, 매해 계획책정, 회의운영, 자료작성 - 기타 정보セキュ리티, 재무 등
정책법규부문	- 문화예술방침책정, 중장기발전정책의 책정 - 법률 등의 초안 작성, 법률관계 사무 - 중요문화정책연구
인사부문	- 인사관리, 인재개발, 조직편제, 임금관리 등 - 조직 인재계획 책정
재무부문	- 문화부내 경리 - 해외설치의 문화기관과 직할사업의 재무감독 - 문화관련 통계작성 - 관할 기관 및 직할사업의 건설, 자산매입 - 문화시설의 건설감독
예술부문	- 문화예술발전계획책정 - 대표적·모범적·실험적인 문예종목, 사회적 가치가 있는 문예작품, 국가를 대표하는 민족적 특색이 있는 문예단체의 원조 - 전국적인 예술전시, 중요한 문예활동에의 원조
문화과학기술부문	- 문화과학기술 발전계획의 책정 - 중점문화예술의 보급 활동 - 문화과학기술의 정보화 추진 - 고등 기술교육 기관의 설치 - 문화예술업의 교육지도
문화시장부문	- 문화시장 발전계 획과 정책 책정, 관련 법규 초안 작성 - 문화시장의 법률 집행 추진 - TV, 라디오, 신문, 출판 등에 관한 법률 집행 추진 - 문화영역의 경영활동 감독관리(인터넷 상의 음악미술오락, 휴대전화용 음악, 인터넷 카페, 게임기, 인터넷게임서비스 등)
문화산업부문	- 문화산업발전계획 및 정책 책정, 법규의 초안 작성 - 문화산업발전 원조, 촉진 - 문화산업거점, 구역의 특색적인 문화산업군의 구축 감독 - 해외와의 문화산업 교류·협력 추진 - 애니메이션, 만화, 인터넷게임 산업 계획, 거점설치, 프로젝트 입안, 해당산업계협회의 지도
공공문화부문	- 사회문화사업의 발전계획, 정책 책정, 관련 법규의 초안 작성 - 대중문화, 소수민족문화, 미성년문화, 고령자문화의 지도 - 도서과과 문화시설사업 지도 - 문화정보자원공유화 프로젝트와 고서 보호 작업 지도
무형문화유산부문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 책정, 관련법규의 초안 작성 - 국가급(국보급, 매우중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계획책정,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작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승인 - 우수민족문화의 전승 보급 작업
대외문화연락국	- 외국 문화교류와 외국에의 문화선전활동 감독관리 -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문화교류정책 책정, 관련 법규 초안 작성, 사업 실시 - 중국과 외국 간의 협력 성명에 관한 업무 실시 - 외국에의 문화교류활동 실시
조직 내 당위원회	- 공산당 관련 업무
주부 규율 감사국	- 당의 방침 및 법률, 국무원의 결정 준수 감독 - 당조직·당원에 대해 고발수리, 당의 규율준수 조사
정년간부국	- 정년간부의 대우결정 등의 실시 - 직할사업의 정년 간부 대우 등의 지도
조직지원국	- 내근 계획책정과 제도연구의 실시, 내근 체제개혁 추진, 문화부 내 타 조직 지원 - 지원업무계획과 요구에 근거한 기관과 계약, 업무의 실시

자료: (株)野村総合研究所(2013)

〈표 2-25〉 중국 문화부 직할조직의 업무내용

사업·단체명	업무내용
문화부 정보센터	- 전자정보관리, 내부 네트워크 관리, 공개용 홈페이지 관리 등
중국 예술연구원	- 예술 및 과학기술연구에 관한 창작, 교육
중국 국가도서관	- 고서나 국내의 문헌의 수장·보호, 문헌정보공개, 도서관 사업 발전연구, 서적에 관한 국제교류 등
고궁박물관	- 자금성(紫禁城)을 기초로 건설된 중국 최대 박물관 운영
중국 국가박물관	- 역사품이나 예술품의 수장, 전람, 연구, 교육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박물관의 운영
중앙 문화간부학원	- 문화에 관한 교육연수 기구. 리더연구교육, 경영이나 예술·전문인재의 교육, 연구 등
중국 문화미디어 집단유한회사	- 국무원(國務院)이 출자하여, 문화부가 주관하고, 재정부가 경영이나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국영의 대형문화기업 - 국가공공문화발전 센터, 국가동화만화산업정보 센터, 국가문화홈페이지센터, 국가문화예술자원정보센터, 국가문화산업발전연구센터, 국가대외문화선전센터, 국가역사문화발전연구센터, 국가문화예술창발(創發)발전센터를 운영
중국 국가 경극원	- 경극의 계승, 상연, 대외교류
중국 국가 화극(話劇)원	- 문화부직속의 연극단체이며, 자기부담의 극장에서 상연
중국 가극(歌劇)무극(舞劇)원	- 가극단, 무극단, 민족악기단, 관현악단, 창작실, 무대미술제작부를 두고, 다종다양한 퍼포먼스를 실시
중국 동방연극 예술집단유한회사	- 중화민족음악과 무도(舞鄺)의 전통계승, 세계 각국의 음악과 무도의 실시, 새로운 퍼포먼스의 창작 등을 하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국가급 대형연예집단
중국 오케스트라	-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구성
중국 아동예술극원	- 아동극의 창작상연을 하는 중국 아동극의 전당으로, '중국의 모든 아동이 아동극을 보게 하는 것'을 이념으로 활동
중앙 가극원	- 아시아에서 우수(有數)한 규모와 실력을 갖고 있는 가극원(가극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무대미술부를 소유)
중앙 발레단	- 고전, 근대, 중국 오리지널 발레극을 상연
중앙 민족 악단	- 중국 민족 악기의 악단으로, 민족관현단과 민족합창단으로 구성 -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민족음악을 연주하여, 근대음악이나 타국의 민족음악 출연
중국 미술관	- 근대 중국 예술작품을 수장, 연구, 전시하는 박물관
중국 국가화원	- 창작연구부문, 이론연구부문, 교학연수부문, 예술교류부문, 미술관, 예술정보센터 등을 소유, 예술가창작, 연구, 전시, 교류 환경을 제공
중국 대외문화집단회사	- 국영의 대외문화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중국문화연출이나 예술전람제공을 하는 중국 유일의 전 세계 연출업무와 예술전람업무를 하는 기업
중국 디지털문화집단 유한회사	- 디지털문화상품의 제작, 출판
중국 동화만화집단 유한회사	- 민족특색, 시대특색을 반영한 국제수준의 애니메이션 게임의 개발, 산업파크 건설, 매출 채널 개발, 국제교류나 해외 진출의 추진
문화부 공왕부(恭王府)관리센터	- 공왕부의 보호, 일반개방을 관할
문화부 문화예술인재센터	- 문화사업 인재와 관련한 중개·파견, 인사대리, 인재교류, 인재개발 연수, 평가, 자격검정 작업, 유학이나 해외취업지원, 인사이력의 수집관리 등
문화부 정년퇴직 등 인원서비스 센터	- 예술퍼포먼스단체의 정년퇴직 인원에 관한 지원이나 관리업무
문화부 예술발전센터	- 전람회나 무대실행, 대외교류활동의 실시, 예술가 평가와 실행, 영화제작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종 업무
국가 청사(淸史)편찬부문	- 청의 역사 편찬 관리, 추진업무
중외(中外)문화교류센터	- 무대, 전시, 영화 등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문화부 민족민간문화예술개발센터	- 민족이나 민간의 문화전통, 문화유산의 선전, 보호, 발굴
중국 예술과학기술연구소	- 문화예술과학기술의 연구
문화부 전국공공문화발전센터	- 문화정보 자원건설관리 관련 사업 이외의 공공문화 서비스, 국민 문화 활동 지도나 관련 인원의 지도

주: 국무원(國務院): 중국 국가행정의 최고권력 집행기관

자료: (株)野村総合研究所(2013)

□ 중국의 2015년도 정부예산총액은 2,501,200백만 위안(약 427조 6,140억 원)으로, 그 중 문화부의 예산은 6,416백만 위안(약 10,2190억 원, 0.26%)임.

○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관련 예산 비율은 예년 0.2% 전후임.

- 문화부 예산 중 '박물관'에 대한 것이 1,708백만 위안(약 3,240억 원, 2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예술발표단체'에 대한 것이 1,003백만 위안(약 1,910억 원, 16%), 도서관 809백만 위안(약 1,540억 원, 13%) 순으로 나타남.
- 2013년도 중국 문화부 예산과 비교하면 박물관이 31%로 문화부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도서관 22%로 나타남. 예술발표단체는 12%로 4번째 순위로 나타났음.
- 2013년과 2015년의 문화부 예산 내역을 비교해보면, 박물관의 예산내역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지만, 2013년에 비해 예술발표단체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전 국민의 문화소양 함양을 위한 예술단체의 지원의 결과로 볼 수 있음.²⁹⁾

〈표 2-26〉 정부예산에서 문화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백만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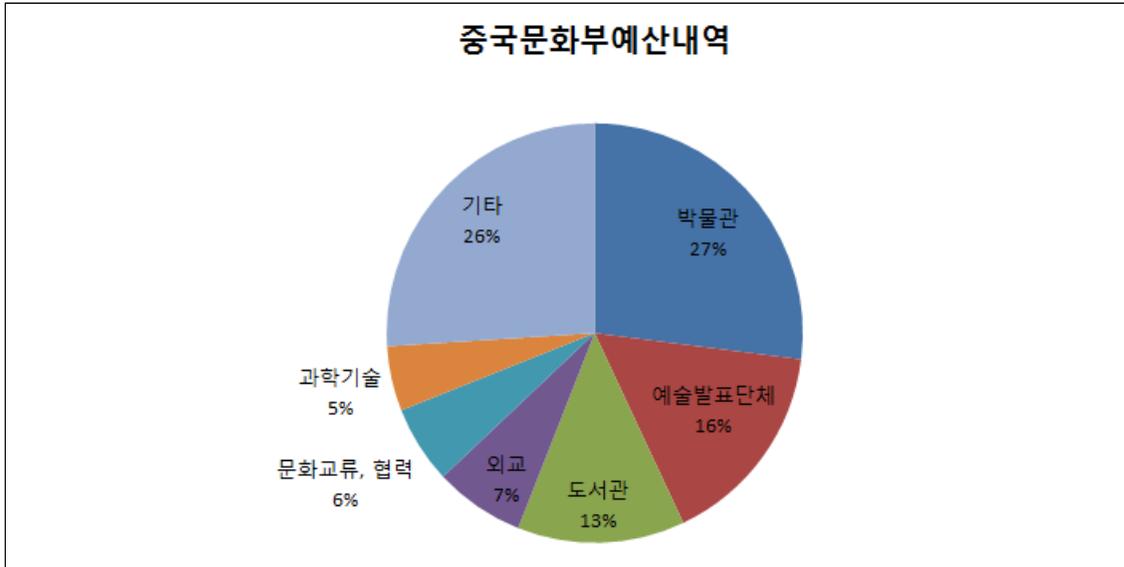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예산액	정부예산	1,579,000	1,705,000	1,851,900	2,020,300	2,250,800	2,501,200
	문화부예산	4,421	5,048	4,835	5,194	5,402	6,416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0.28%	0.31%	0.26%	0.25%	0.24%	0.26%

자료: 野村總合研究所(2015).

29) 중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분야에 있어 지원정책을 실시, 그 지원책 중에서 시민의 예술적 조예를 평가하여 정확한 자격을 줌으로써 취학 또는 취직에 있어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 예술등급제도로 불리고 현재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음. 등급제도는 크게 2종류로, 중국 문화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예술등급제도'와 교육부와 운영하고 있는 '예술취합시험제도'임. 전자는 연령불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대학수험생을 대상으로 함. '사회예술등급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중국문화부의 예술에 관한 주최사업 중 하나로, 사회예술의 보급, 국민소질의 향상, 역사문화의 전승을 목적으로 함. 사회예술등급제도는 음악, 무도, 미술 분야로 구분, 58과목으로 구성. 각 과목을 성적순으로 최상급 10급부터 최하위 1급으로 나누어짐. 합격하면 증명서가 발행되고, 이 증명서는 자격증명서와 같이 자신의 예술적 조예가 인정되고 예술관계의 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이 됨. '예술시험제도'는 상기의 등급제도와 다른 점은 실시대상이 대학수험생에게 한정되어 있고, 중국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 시험의 합격기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예술대학에의 진학이 용이해짐. 이 제도는 예술교육지원의 효과를 발휘하여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2-4] 문화부 예산 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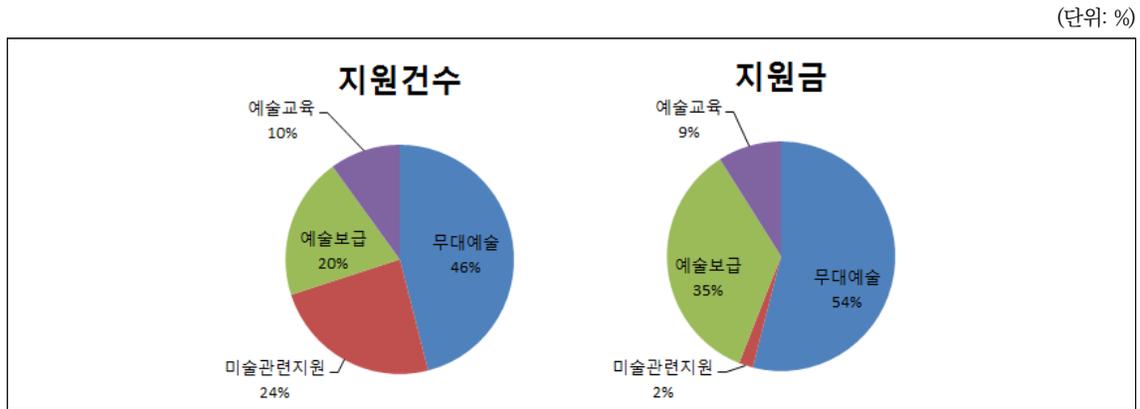
자료: 野村總合研究所(2015).

□ 중국문화부는 예술 사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예술기금(China National Arts Fund)」을 창립, 201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음(劉·繼東, 2015).

- 해당 기금은 공익기금의 성격을 갖고, 재원은 국가예산과 개인, 법인기부로 구성됨. 관리 기구는 국가예술기금 이사회를 중추로, 국가예술기금관리센터가 자금을 운영함.
-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지원 분야는 무대예술창작지원, 미술관련 인재지원, 예술 보급지원, 예술교육지원 이렇게 4개 부문임. 2014년 지원금은 4.29억 위안(약 830억 원)임.
- 『국가예술기금 2014년도 항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신청건수는 총 4,124건으로 개인 신청은 1,168명, 단체 신청은 3,088건으로 나타남. 단체 신청 중 국유단체·조직은 2,238건으로 전 단체의 72.56%를 차지함.
- 심사결과를 보면 지원건수는 4,124건 중 392건으로 나타났고, 지원율은 약 9.5% 였음. 지원내역은 무대예술이 46%(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관련 지원은 24%(93건), 예술보급지원 20%(79건), 예술교육 10%(41건)으로 나타남.
- 지원금 내역을 보면 무대예술이 2.3억 위안(약 440억 원), 교육보급은 1.5억 위안(약 290억 원), 예술교육은 0.4억 위안(약 77억 원), 미술 관련은 0.09억 위안(약 17억 원).
- 중국의 국가예술기금 지원대상은 개인보다 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국가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다수인 것을 보면, 국가체제 내의 예술창작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보급분야는 지원건수가 20%인 반면 지원금은 35%를 차지함. 그 중 경극보급과 해외진출은 해외보급분야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즉 중국은 예술활동 전체 중에서 전통예술과 해외선전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5] 국가예술기금 지원건수 및 지원금



자료: 劉·繼東(2015)

- 전통예능의 보호, 발전계승에는 인재육성, 후계자 육성에 대한 필요성으로, 豊臺區의 「중국 희극학원」에서는 북경시의 정책으로 2009년 추계 학기 이후, 경극, 각종 연극, 경극악기전문 과정 등의 학생은 학비면제정책을 하고 있음((財)自治体国際化協會, 2013).
- 중국의 문화정책의 최근 동향을 보면 2012년 5월 중국공산당 제12차 5개년 계획, 즉 문화부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개혁발전계획을 책정하고 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침원칙은 다음과 같음.
 - 사회주의선진문화를 지지. 문화의 주요노선에 힘을 불어넣는 동시에 다양화를 제창, 사회주의의 핵심적 가치체계를 구축. 사회복지를 중시하고 경제적 이익과 사회복지의 유기적 통일을 도모함.
 - 인간중심주의를 지지. 다수의 문화관계자의 적극성이나 창조성이 충분히 실정, 사회, 대중에게 밀착하도록 충분히 지도함. 「문화의 발전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문화의 발전을 인민에게 의존하여, 문화발전의 성과는 인민이 공유한다」는 원칙을 견지함.
 - 건설 중시의 자세를 지지. 장기적인 시선으로 현재에 입각한 자세로 사상의 건설, 조직의 건설, 제도의 건설, 업무의 건설, 기초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하여 각종 문화사업에 있어 혁신적 발전 실현을 지향함.
 - 2015년까지의 발전목표는 먼저, 문화 인재와 조직을 크게 발전시켜, 인재구성을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함. 문화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리드하여 인문을 교육, 사회에 봉사하여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 국가문화의 소프트파워와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

- 도시와 농촌을 커버하는 합리적이고 효율 높은 공공문화 서비스의 시스템 구축
- 문화유산의 보호이념을 인식시키고 보호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전면적인 보호와 유효한 계승을 실현
- 대화적인 문화교류와 무역을 새로운 스테이지로 올려 관민(官民)을 들어 대외문화공작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여 중국문화의 영향력을 확대
- 문화체제개혁의 중점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시켜 활력있고 효율 높은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힘 있는 문화체제로 함.

○ 주요지표를 보면 문화건설에 있어 공공투자율을 늘리고, 재정의 경상수입률을 높이는 것을 보증하여 문화지출이 재정지출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을 높임.

- 민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오랫동안 상연되고 있는 우수한 연극, 질 높은 100편 이상의 극을 발표함.
- 전국에 존재하는 60전후의 중점지방극단을 보호, 지원. 또한 우수한 연극 등의 창작 지원
- 전국 60%이상의 도서관이 3급 이상의 평가를 얻어, 60%이상의 성(省)·시의 균중예술관, 문화관이 3급 이상의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내 모든 도시에(地級市級) 설비가 일정기준에 달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기능이 정비되어 있는 공공도서관·문화관을 설치
- 문화정보자원공유 프로젝트의 데이터 양을 530TB 이상, 인터넷의 세대보급률을 50%로 함.
-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 20개소를 새롭게 설립,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한 지구에 무형문화유산보호·이용 시설 100개소를 건설
- 국제, 다국가 간, 양국가 간 등으로 국가급 중대 섭외 문화활동 30건 이상을 실시, 국제적인 문화인 500명과 청소년 문화사절 1,000명을 중국에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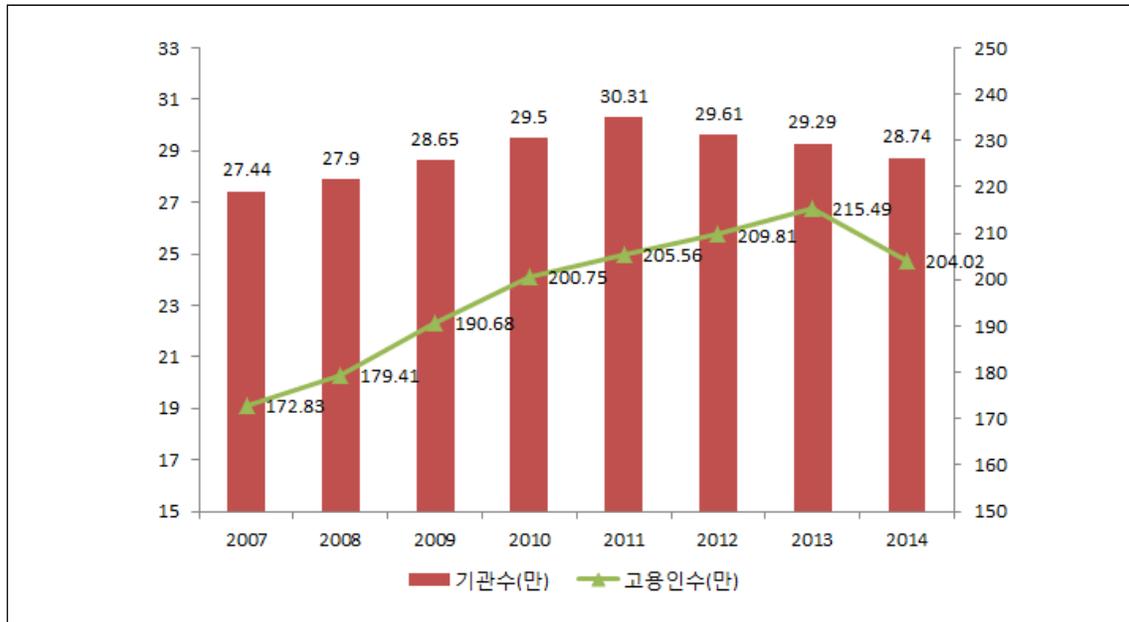
○ 문화부의 방침, 발전목표, 주요 지표 내용을 보면,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문화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전국적인 문화 기관은(units) 287,400개로였고 그 중 정부 문화부서에 소속된 기관수는 65,600임.

- 전국적으로 문화기관에 고용된 인원은 204.02만 명이었고, 그 중 정부 문화부서에 고용된 인원은 638,200명으로 나타남.

[그림 2-6] 중국의 문화기관 및 고용인 현황

(단위: 만 개, 만 명)



자료: 중국 2014년 문화발전통계자료(中华人民共和国2014年文化发展统计公报, 2015)

- 예술퍼포먼스극단 수는 2014년 말 8,769개였고, 고용된 인원은 262,900명이었음.
 - 예술퍼포먼스극단은 문화부 혹은 문화행정부와 상업적인 퍼포먼스 자격을 받은 기관에 의해 조직된 다양한 전문 예술적 퍼포먼스 단체를 말함.
 - 중국은 국민의 예술적 조예 함양을 위해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예술 공연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술 공연 횟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되는 예술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도시와 농촌의 문화예술의 인프라 불균형, 국민의 문화적 조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은 문화예술 사업의 확충을 위해 조직 및 제도의 신설, 기초 인프라 건설 등으로 인해 예술조직의 증가와 더불어 예술인의 고용기회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문화부의 통계자료에 의한 고용인 수의 증가경향은 문화예술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고용된 자를 모두 예술인으로 간주할 수 없음.
 - 제 12차5개년계획의 문화개혁발전계획에는 예술분야의 인재 발전, 조직 발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중국은 이제 문화예술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초기 상황으로, 아직까지 예술인의 지위향상이나 고용 및 사회보장에 대한 복지적 차원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음.

제 3 장

예술인 대상 실태조사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실태분석

3

예술인 대상 실태조사 <<

제1절 분석개요

- 본 연구에서는 원로, 여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원로 및 여성 예술인 대상 실태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증 표본 추출된 28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 조사표 구성
 - 원로 및 여성 예술인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표는 먼저, 조사대상 예술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반사항, 인식,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7개의 대항목으로 구분되어 조사표가 만들어짐.
 - 두 번째로 예술인이 아닌 비예술인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일부 조사문항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실태조사 자료의 조사문항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함.
 - 먼저 일반사항으로 조사대상 예술인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교육수준 및 예술전공여부를 중심으로 구성함 . 자녀현황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를 통해 여성예술인 자녀양육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일반 및 복지인식에서는 정신건강(우울감), 주관적 소득계층, 걱정거리 및 예술인 대상별 사회보장 수급여부와 사회적 관계를 파악
 - 다른 직업군과 달리 예술인은 창작이라는 정신적 고뇌를 가진 직업이라는 점에서 비예술인과 정신건강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동 문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과 비교분석이 가능함.
 - 주관적 소득 및 현재의 걱정거리는 현재 예술인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비교를 통해 예술인과 비예술인 간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문이며, 지원방안 등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음.
 - 복지인식은 본 연구의 주요한 부문으로서 실제 원로 및 여성예술인이 사회보장 지원여부 파악을 통해 복지수급 실태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사회적 관계는 위기상황, 예술활동 중에 예술인이 주변인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분석

- 고용관계는 예술인이 비예술인에 비해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서 현재 예술인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이 비예술인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
- 건강 및 자녀양육은 원로예술인과 여성예술인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당 예술인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경제여건부문은 소득·지출, 자산·부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득, 지출 및 자산 등에 대한 분석은 현재 예술인의 생활수준 파악과 국가적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통계청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예술인과 비예술인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음.

〈표 3-1〉 예술인 복지인식 및 욕구 조사 설문개요

구분	설문개요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출생연도, 혼인상태, 가구주유무, 가구원수, 자녀현황, 주거상황 •장애유무 및 정도, 만성질환 유무 •학교구분, 전공분야, 예술활동분야
일반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감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의 걱정거리
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및 서비스 가입, 급여수급 여부(공통, 원로, 청년, 여성예술인) •사회적 관계
고용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활동 관련 설문(고용, 겸업 이유, 활동시간, 비경제활동이유)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상태, 질환, 의료비 부담, 건강검진 등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의 어려움, 돌봄서비스 제공자, 미취학자녀를 위한 지원
경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지출, 자산부채

□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구성틀

- 모집단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예술활동 증명예술인 총 16,779명임
 - 모집단의 분포는 17세 미만 예술인 6명, 18~34세 이하 8,301명, 35~64세 이하 7,848명, 65세 이상 624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이 중 조사의 현실성 및 조사대상인 연령을 고려하여 17세 미만 예술인(6명), 외국인 예술인(27명)을 제외하여 표본추출틀은 총 16,747명임.

〈표 3-2〉 모집단의 연령별 남녀 분포

(단위: %)

구분	17세미만	18~34세	35~64세	65세이상
남	83.3	47	55.1	76.6
여	16.7	53	44.9	23.4

○ 원로, 여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조사대상은 총 280명으로 원로, 여성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청년(18~34세), 남성 예술인도 조사대상에 포함함.

- 목표표본규모는 연령별로 65세 이상 70명(남성, 여성), 35~64세 140명(남성, 여성), 18~34세 70명(남성, 여성)임.
- 목표표본규모의 4배수를 추출함.

○ 추출방법

- 모집단을 동질성(연령)이 있는 계층으로 구분한 다음, 나눈 범주에서 단순무작위표집 즉, 층화표집을 수행함.
- 그 중 계층별로 나누어진 소집단에 대해 성별에 비례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비례층화표집함.

제2절 실태분석

1. 일반사항

- 본 연구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 표본추출된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됨. 조사대상자의 인구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이 60.4%, 여성이 39.6%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비중이 많음. 연령별은 비례 할당에 의해 추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³⁰⁾
 -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3.6%, 별거·사별·이혼 등을 경험한 예술인은 12.1%, 미혼은 44.3%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중 장애를 가진 경우는 3.6%이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4명, 경증장애인은 6명으로 조사됨.
 - 고령예술인을 포함함에 따라 만성질환을 소유한 예술인이 30.0%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³¹⁾

〈표 3-3〉 조사대상자 인구적 특성

(단위: 명, %)

인구적 특성		빈도수	비율
전체	계	280	100.0
성별	남	169	60.4
	여	111	39.6
연령별	18세-34세	70	25.0
	35-64세	140	50.0
	65세 이상	70	25.0
혼인상태별	유배우	122	43.6
	별거·사별·이혼	34	12.1
	미혼	124	44.3
(등록)장애 유무	비장애	(270)	96.4
	장애	(10)	3.6
장애정도	중증	(4)	40.0
	경증	(6)	60.0
만성질환 유무	없음	(196)	70.0
	있음	(84)	30.0

30) 예술인 모집단 구성을 목표로 조사된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 연령을 보면 30대이하 31.3%, 40대 20.2%, 50대 26.9%, 60세 이상 21.5%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의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심의 표본과는 차이를 보임

31) 2014년 전국민대상 복지욕구실태조사(이태진 외, 2015: 재인용)에 의하면,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약 39.3%로 본 조사대상 예술인 30.0%는 이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임.

-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주요활동분야는 미술·공예 27.9%, 연극 18.2%, 영화 13.9% 등의 순으로 집계됨.
-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전업예술활동가는 57.1%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전업예술인이었으며, 겸업예술인은 35.4%,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7.5%이었음.
- 조사대상 예술인의 고용형태는 주로 안정적 일자리보다는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4.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2.0%로 조사대상자의 76.8% 불안정적 직업활동을 하고 있음.

〈표 3-4〉 조사대상자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사회경제적 특성		빈도수	비율
전체	계	280	100.0
주요활동분야	문학	30	10.7
	미술/공예	78	27.9
	사진/건축	6	2.1
	음악/대중음악/국악	41	14.6
	무용	12	4.3
	연극	51	18.2
	영화	39	13.9
	방송	6	2.1
	만화	5	1.8
	기타	12	4.3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57.1
	겸업	99	35.4
	비경제활동	21	7.5
예술인 고용형태	상용직	21	8.1
	임시·일용직	116	44.8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3	1.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10	3.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3	32.0
주거유형	실업자	26	10.0
	자가	105	37.5
	전세	56	20.0
	보증부월세/월세	88	31.4
주관적 계층의식	무상(관사, 사택)/기타	31	11.1
	하층	128	45.7
	중하층	88	31.4
	중간층	52	18.6
	중상층	12	4.3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거 유형은 자가 37.5% 이었으며, 보증부월세가 31.4%, 전세 20.0%로 나타나 비예술인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전국단위 조사인 2014년 전국민대상 복지욕구실태조사(이태진 외, 2015: 재인용)에 의하면, 자가가구 52.3%, 전세 16.7%, 월세 24.2%로 조사되어, 예술인이 비예술인에 비해서는 주거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주관적 계층의식을 보면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하층(45.7%)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하층은 31.4%로서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의 소속의식은 낮게 평가되고 있음.³²⁾

2. 일반인식

-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일반인식 조사는 크게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됨. 첫째는 정신건강의 한 단면이 우울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둘째는 주관적 소득계층, 세 번째는 현재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불안요인이 무엇인지 임.
- 최근 자살과 정신건강 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창조 혹은 실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은 비예술인에 비해 정신적 문제를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정됨.
- 예술인 실태조사에서의 우울에 대한 측정은 우울관련 척도를 통해 평가하게 됨. 본 연구에서의 척도는 CES -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척도를 통해 우울을 측정
- CEC-D척도는 1977년 Radloff(1977)가 20개 설문으로 처음 제안하였으며, 여기서는 11개로 축소한 문항(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 1993)을 활용함.
 -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냈다”와 “불만없이 생활”의 경우에는 역코딩 하였으며 전체 설문 합을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고 있으며, 총점(60점)을 기준으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고 평가(김태완·윤상용 2015)
 - 우울상태의 시간에 따른 지속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울점수 16점을 기준으로 해마다 우울척도가 16점 이상이면 “1”을 16점 미만이며 “0”을 두고, 우울 여부를 판정(김태완·윤상용, 2015)
- 아래 표를 통해 보면 예술인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37.5%로 다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비예술인의 우울감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32)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김미곤 외(2015: 재인용)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의식 조사에서 하층은 15.4%, 중하층 24.4%, 중간층 45.1%, 중상층 13.7%, 상층 1.4%로 조사됨. 본조사에서 본 예술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계층에 있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한 비예술인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2010년 10.0%, 2011년 9.8%, 2012년 10.2% 등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에서 예술인이 경험하고 있는 37.5%는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임(김태완·윤상용, 2015).

- 예술인 특성별로 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우울감을 가지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예술인과 다소 차이를 보임.

〈표 3-5〉 예술인 정신건강 관련 분석(우울관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우울	비우울
계		(280)	37.5	62.5
성별	남	(169)	39.6	60.4
	여	(111)	34.2	65.8
연령별	18세-34세	(70)	33.3	66.7
	35-64세	(140)	36.4	63.6
	65세 이상	(70)	43.7	56.3
혼인상태별	유배우	(122)	32.0	68.0
	별거·사별·이혼	(34)	55.9	44.1
	미혼	(124)	37.9	62.1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35.6	64.4
	겸업	(99)	36.4	63.6
	비경제활동	(21)	57.1	42.9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53.1	46.9
	중하층	(88)	23.9	76.1
	중간층	(52)	25.0	75.0
	중상층	(12)	25.0	75.0

-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18~34세는 33.3%, 35~64세는 36.4%, 65세 이상은 43.7%로 조사되어 고령예술인이 청장년 예술인에 비해 높은 우울감을 보여줌.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시 65세 이상 노인중 약 20%정도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과 비교시 역시 예술인이 비예술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김태완·정진욱·이주미, 2015)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미혼보다는 결혼 후 별거·사별·이혼 등을 경험한 경우 우울감에 쉽게 노출되고 있었음.
- 예술을 전업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를 보면 예술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작업임에도 오히려 전업예술인이 다른 비전업 예술인에 비해 낮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

- 비록 생활 속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위와 같은 조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의 정신건강 즉 우울을 낮추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소득계층이 낮다고 인식하는 예술인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우울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줌.

□ 예술인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예술활동 어려움(42.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16.4%)와 노후생활(16.4%)을 지적하고 있음.

-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거리중 예술활동 어려움을 제외한 일자리와 노후생활의 문제는 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김미곤 외, 2015: 재인용).
 - 즉 동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대표적 불안거리는 건강(25.2%), 자녀교육(20.1%), 일자리(17.7%), 노후생활(14.9%), 주거비(13.1%) 등의 순이었음.

○ 특성별로 보면 남녀 공히 예술활동 어려움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와 노후생활의 순으로 조사됨. 특히 남성의 경우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19.5%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음.

-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보육, 부채상환 등에 대해 불안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예술활동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타 불안요인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년층은 일자리(17.9%)와 노후생활(11.4%), 65세 이상은 노후생활이 38.6%로 오히려 예술활동 어려움 34.3%에 비해 높았음.

- 이를 통해 보면 연령별 복지욕구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청년과 중년층은 안정적 일자리를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원하고 있었음.

○ 혼인상태는 거의 연령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유배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노후생활을 미혼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 특성이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임.

- 예술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시 전업예술인은 예술활동 어려움(41.3%), 노후생활(21.3%)을 겸업예술인은 예술활동 어려움(48.5%)과 일자리(19.2%)를 지적하고 있음. 비경제활동의 경우에는 건강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기타 일자리, 노후생활, 예술활동 어려움이 동일하게 조사됨.
- 주관적 계층의식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예술활동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불안거리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외에 하층은 일자리(21.9%), 노후생활(17.2%) 등으로 조사됨.
 - 중상층에서는 건강(33.3%)과 부모부양(8.3%) 등을 기타계층에서는 예술활동 어려움과 더불어 일자리와 노후생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표 3-6〉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자녀 교육	건강	주거비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자녀 보육 (양육)	예술 활동 어려움	
계	(280)	16.8	2.5	8.6	4.6	16.4	3.6	2.9	2.5	42.1	
성별	남	(169)	16.0	1.8	8.9	3.6	19.5	2.4	3.0	1.2	43.8
	여	(111)	18.0	3.6	8.1	6.3	11.7	5.4	2.7	4.5	39.6
연령별	18세-34세	(70)	28.6	4.3	4.3	1.4	4.3	4.3	4.3	1.4	47.1
	35-64세	(140)	17.9	2.9	6.4	6.4	11.4	4.3	3.6	3.6	43.6
	65세 이상	(70)	2.9	0.0	17.1	4.3	38.6	1.4	0.0	1.4	34.3
혼인 상태별	유배우	(122)	12.3	5.7	10.7	4.9	18.9	4.1	3.3	4.9	35.2
	별거·사별·이혼	(34)	2.9	0.0	8.8	8.8	35.3	0.0	0.0	2.9	41.2
	미혼	(124)	25.0	0.0	6.5	3.2	8.9	4.0	3.2	0.0	49.2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15.0	3.1	6.9	4.4	21.3	3.1	3.1	1.9	41.3
	겸업	(99)	19.2	2.0	8.1	5.1	8.1	5.1	3.0	1.0	48.5
	비경제활동	(21)	19.0	0.0	23.8	4.8	19.0	0.0	0.0	14.3	19.0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21.9	0.0	7.0	6.3	17.2	3.9	.8	2.3	40.6
	중하층	(88)	11.4	6.8	6.8	5.7	18.2	2.3	5.7	4.5	38.6
	중간층	(52)	17.3	1.9	9.6	0.0	15.4	5.8	1.9	0.0	48.1
	중상층	(12)	0.0	0.0	33.3	0.0	0.0	0.0	8.3	0.0	58.3

3. 복지인식

- 예술인들은 비예술인과 달리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 실제 사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오랜 기간 제기되어옴.
- 본 조사를 통해서도 일정수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아래 표를 통해 보면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실태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1999년 전국민 연금화가 실현되었음에도 여전히 조사대상자의 60.7%가 미가입 상태였음.

-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은 의무가입자 아니라는 점에서 연령을 통제해서 분석해도 청장년층의 60% 이상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특징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을 기준으로 소득이 중상층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예술인의 경우 16.7%만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국민연금에의 가입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예술인의 대부분이 노후생활을 예술활동 다음으로 높은 불안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한 축인 국민연금의 가입율이 저조하다는 점은 노후생활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 예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현재 예술인이 가지는 노후불안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표 3-7〉 사회보험 가입여부³³⁾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수	가입	미가입	사례수	가입	미가입	사례수	가입	미가입
계		(280)	39.3	60.7	(280)	15.4	84.6	(280)	10.4	89.6
성별	남	(169)	37.3	62.7	(169)	11.8	88.2	(169)	8.9	91.1
	여	(111)	42.3	57.7	(111)	20.7	79.3	(111)	12.6	87.4
연령별	18세-34세	(70)	31.4	68.6	(70)	22.9	77.1	(70)	18.6	81.4
	35-64세	(140)	45.0	55.0	(140)	18.6	81.4	(140)	10.7	89.3
	65세 이상	(70)	35.7	64.3	(70)	1.4	98.6	(70)	1.4	98.6
혼인 상태별	유배우	(122)	42.6	57.4	(122)	13.9	86.1	(122)	6.6	93.4
	별거·사별·이혼	(34)	26.5	73.5	(34)	2.9	97.1	(34)	5.9	94.1
	미혼	(124)	39.5	60.5	(124)	20.2	79.8	(124)	15.3	84.7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39.4	60.6	(160)	11.9	88.1	(160)	9.4	90.6
	겸업	(99)	44.4	55.6	(99)	24.2	75.8	(99)	14.1	85.9
	비경제활동	(21)	14.3	85.7	(21)	0.0	100.0	(21)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30.5	69.5	(128)	6.3	93.8	(128)	3.1	96.9
	중하층	(88)	42.0	58.0	(88)	26.1	73.9	(88)	18.2	81.8
	중간층	(52)	46.2	53.8	(52)	19.2	80.8	(52)	15.4	84.6
	중상층	(12)	83.3	16.7	(12)	16.7	83.3	(12)	8.3	91.7

○ 국민연금에 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의 미가입 비율은 더 높게 분석됨. 80% 이상의 예술인이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실업, 산업재해 등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33)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56.8%, 산재보험 26.0%, 고용보험 21.3%로 조사됨. 산재보험 가입자중 1.4%는 예술인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아직 많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사회보험 수급경험을 보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란 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예술인을 기준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의 34.3%가 연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었으며, 65.7%는 수급경험이 없었음.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1999년에 비로소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야 완전노령 연금제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예술인 역시 과거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낮은 수급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8〉 사회보험 수급경험(과거)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있다	없다
계		(280)	13.9	86.1	(280)	9.6	90.4	(280)	5.7	94.3
성별	남	(169)	16.6	83.4	(169)	7.7	92.3	(169)	4.7	95.3
	여	(111)	9.9	90.1	(111)	12.6	87.4	(111)	7.2	92.8
연령별	18세-34세	(70)	2.9	97.1	(70)	10.0	90.0	(70)	7.1	92.9
	35-64세	(140)	9.3	90.7	(140)	11.4	88.6	(140)	5.0	95.0
	65세 이상	(70)	34.3	65.7	(70)	5.7	94.3	(70)	5.7	94.3
혼인 상태별	유배우	(122)	18.0	82.0	(122)	8.2	91.8	(122)	4.9	95.1
	별거·사별·이혼	(34)	20.6	79.4	(34)	5.9	94.1	(34)	5.9	94.1
	미혼	(124)	8.1	91.9	(124)	12.1	87.9	(124)	6.5	93.5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16.9	83.1	(160)	8.8	91.3	(160)	4.4	95.6
	겸업	(99)	10.1	89.9	(99)	11.1	88.9	(99)	7.1	92.9
	비경제활동	(21)	9.5	90.5	(21)	9.5	90.5	(21)	9.5	90.5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14.8	85.2	(128)	7.0	93.0	(128)	5.5	94.5
	중하층	(88)	12.5	87.5	(88)	11.4	88.6	(88)	4.5	95.5
	중간층	(52)	13.5	86.5	(52)	13.5	86.5	(52)	7.7	92.3
	중상층	(12)	16.7	83.3	(12)	8.3	91.7	(12)	8.3	91.7

○ 고용 및 산재보험의 수급여부는 특수한 경우(실업, 산업재해 발생 등)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제 수급을 한 경우는 5.7%로 조사됨.³⁴⁾

- 특징적으로 고용보험은 고령층에 비해 청년 및 중장년층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술인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진 이후 예술인을 위한 여러 복지지원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됨

○ 주요 예술인 복지지원 제도의 인식을 보면 먼저 창작지원금제도의 수급경험에서 조사대상

34) 2014년 전국민대상 복지욕구실태조사(이태진 외, 2015)에 의하면, 공적연금의 수급경험이 있는 수급가구의 비율이 16.7%로 조사되어 예술인에 비해 높았음. 반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을 수급한 가구는 1.7%로 조사되어 예술인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이를 기준으로 예술인과 비교시 예술인은 65세 이상 예술인은 국민연금에서는 낮은 수급으로 불안한 노후생활을, 중장년기에는 비예술인에 비해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함으로써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자의 20.7%가 수급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4.6%로 조사됨.

- 특히 65세 이상 고령 혹은 원로예술인의 경우 34.3%가 수급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수급자도 7.1%라는 점에서 불안한 노후생활에 창작지원금이 원로예술인의 창작지원과 노후생활 안정에 다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외에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에 있어 창작지원금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많은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못해 정부에서는 예술인 가입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3.9%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0.4%는 지금도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예술인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표 3-9〉 예술인 관련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I

(단위: 명, %)

예술인창작지원금		과거 수급			현재 수급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받고 있다	받고있지않다
계		(280)	20.7	79.3	(280)	4.6	95.4
성별	남	(169)	21.9	78.1	(169)	4.7	95.3
	여	(111)	18.9	81.1	(111)	4.5	95.5
연령별	18세-34세	(70)	11.4	88.6	(70)	1.4	98.6
	35-64세	(140)	18.6	81.4	(140)	5.0	95.0
	65세 이상	(70)	34.3	65.7	(70)	7.1	92.9
혼인상태별	유배우	(122)	18.9	81.1	(122)	7.4	92.6
	별거·사별·이혼	(34)	38.2	61.8	(34)	8.8	91.2
	미혼	(124)	17.7	82.3	(124)	.8	99.2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21.9	78.1	(160)	4.4	95.6
	겸업	(99)	18.2	81.8	(99)	3.0	97.0
	비경제활동	(21)	23.8	76.2	(21)	14.3	85.7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29.7	70.3	(128)	7.8	92.2
	중하층	(88)	12.5	87.5	(88)	2.3	97.7
	중간층	(52)	13.5	86.5	(52)	0.0	100.0
	중상층	(12)	16.7	83.3	(12)	8.3	91.7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과거 수급			현재 수급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받고 있다	받고있지않다
계		(280)	3.9	96.1	(280)	.4	99.6
성별	남	(169)	5.9	94.1	(169)	.6	99.4
	여	(111)	.9	99.1	(111)	0.0	100.0
연령별	18세-34세	(70)	1.4	98.6	(70)	0.0	100.0
	35-64세	(140)	2.9	97.1	(140)	0.0	100.0
	65세 이상	(70)	8.6	91.4	(70)	1.4	98.6
혼인상태별	유배우	(122)	4.1	95.9	(122)	.8	99.2
	별거·사별·이혼	(34)	5.9	94.1	(34)	0.0	100.0
	미혼	(124)	3.2	96.8	(124)	0.0	100.0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5.0	95.0	(160)	0.0	100.0
	겸업	(99)	2.0	98.0	(99)	0.0	100.0
	비경제활동	(21)	4.8	95.2	(21)	4.8	95.2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3.9	96.1	(128)	0.0	100.0
	중하층	(88)	5.7	94.3	(88)	1.1	98.9
	중간층	(52)	1.9	98.1	(52)	0.0	100.0
	중상층	(12)	0.0	100.0	(12)	0.0	100.0

□ 이미 앞의 분석에서 많은 예술인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비예술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정부에서도 예술인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상담(정서)지원 서비스를 최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예술인 정서 지원서비스를 경험한 예술인은 조사대상자의 2.5%는 지원경험을 0.7%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징적으로 남성예술인의 4.1%가 지원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예술인에서는 사례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았음. 전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남녀 간 지원경험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사표본의 한계이거나 혹은 여성예술인이 정서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실제 예술인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문제에 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 예술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예술인의 경우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서상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생활을 유지하는 속에서 예술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주변인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서지원서비스의 범주와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예술인이 부담없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술인은 물론 국가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파견지원 사업이 있음.
 - 예술인 파견지원과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3.2%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파견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수급경험을 기준으로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 및 고령층에서 동 지원을 받을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파견지원사업이 좀 더 홍보되고 확장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분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경험을 통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파견지원사업의 역할 제고가 필요

〈표 3-10〉 예술인 관련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II

(단위: 명, %)

예술인상담(정서)지원		과거 수급			현재 수급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받고 있다	받고있지않다
계		(280)	2.5	97.5	(280)	.7	99.3
성별	남	(169)	4.1	95.9	(169)	1.2	98.8
	여	(111)	0.0	100.0	(111)	0.0	100.0
연령별	18세-34세	(70)	1.4	98.6	(70)	1.4	98.6
	35-64세	(140)	.7	99.3	(140)	0.0	100.0
	65세 이상	(70)	7.1	92.9	(70)	1.4	98.6
혼인상태별	유배우	(122)	3.3	96.7	(122)	.8	99.2
	별거·사별·이혼	(34)	5.9	94.1	(34)	0.0	100.0
	미혼	(124)	.8	99.2	(124)	.8	99.2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2.5	97.5	(160)	0.0	100.0
	겸업	(99)	1.0	99.0	(99)	1.0	99.0
	비경제활동	(21)	9.5	90.5	(21)	4.8	95.2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3.9	96.1	(128)	.8	99.2
	중하층	(88)	2.3	97.7	(88)	1.1	98.9
	중간층	(52)	0.0	100.0	(52)	0.0	100.0
	중상층	(12)	0.0	100.0	(12)	0.0	100.0
예술인 파견 지원		과거 수급					
		사례수	있다	없다			
계		(280)	3.2	96.8			
성별	남	(169)	3.0	97.0			
	여	(111)	3.6	96.4			
연령별	18세-34세	(70)	1.4	98.6			
	35-64세	(140)	3.6	96.4			
	65세 이상	(70)	4.3	95.7			
혼인상태별	유배우	(122)	2.5	97.5			
	별거·사별·이혼	(34)	2.9	97.1			
	미혼	(124)	4.0	96.0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60)	3.1	96.9			
	겸업	(99)	4.0	96.0			
	비경제활동	(21)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8)	4.7	95.3			
	중하층	(88)	1.1	98.9			
	중간층	(52)	3.8	96.2			
	중상층	(12)	0.0	100.0			

- 과거 고립생활을 하던 예술인이 불미스러운 사고나 사건을 경험하듯이, 사회생활속에서 문제가 발생시 주변에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이 있다면 고립생활을 하는 예술인이라도 사회적 문제를 벗어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재산이나 어려움이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조사대상자의 34.3%가 부모, 16.1%가 형제제매, 13.9%가 배우자를 들고 있어 예술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8.9%로 조사되었으며, 예술관련 단체나 기관 등을 통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예술관련 친구를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은 불안정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의 20.6%, 미혼인 경우가 13.7%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여전히 많은 예술인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가족에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가족이 아닌 예술계 혹은 예술관련 지원 기관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관, 전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표 3-11〉 재산이나 집안에 어려움 발생시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		민간단체		없음	배우자	자녀	
					예술계	비 예술계	예술 관련	비예술 관련 (종교, 복지관 등)				
계	(280)	34.3	16.1	.7	9.3	3.6	.4	.7	18.9	13.9	2.1	
성별	남	(169)	28.4	16.6	1.2	8.3	4.7	.6	.6	25.4	13.6	.6
	여	(111)	43.2	15.3	0.0	10.8	1.8	0.0	.9	9.0	14.4	4.5
연령별	18세-34세	(70)	67.1	7.1	1.4	11.4	4.3	0.0	0.0	5.7	2.9	0.0
	35-64세	(140)	34.3	16.4	.7	8.6	5.0	0.0	.7	17.1	17.1	0.0
	65세 이상	(70)	1.4	24.3	0.0	8.6	0.0	1.4	1.4	35.7	18.6	8.6
혼인 상태별	유배우	(122)	20.5	18.0	0.0	1.6	2.5	0.0	0.0	23.8	32.0	1.6
	별거·사별·이혼	(34)	5.9	20.6	2.9	20.6	0.0	2.9	2.9	32.4	0.0	11.8
	미혼	(124)	55.6	12.9	.8	13.7	5.6	0.0	.8	10.5	0.0	0.0
전업 구분	전업예술인	(160)	29.4	18.1	1.3	11.9	2.5	.6	1.3	18.8	14.4	1.9
	겸업	(99)	48.5	14.1	0.0	5.1	5.1	0.0	0.0	16.2	11.1	0.0
	비경제활동	(21)	4.8	9.5	0.0	9.5	4.8	0.0	0.0	33.3	23.8	14.3
주관적 계층 의식	하층	(128)	23.4	16.4	1.6	12.5	3.9	.8	1.6	21.9	14.1	3.9
	중하층	(88)	45.5	15.9	0.0	9.1	5.7	0.0	0.0	14.8	9.1	0.0
	중간층	(52)	42.3	19.2	0.0	3.8	0.0	0.0	0.0	13.5	19.2	1.9
	중상층	(12)	33.3	0.0	0.0	0.0	0.0	0.0	0.0	41.7	25.0	0.0

-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참여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많은 예술인이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예술분야 친구(48.9%)를 들고 있었음.

- 예술이라는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예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가족 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경우도 28.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은 1.4%, 1.8%에 불과함.
-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2〉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형제자매	친구		정부	공공기관 (예술관련)	민간단체		없음	배우자	교수	
				예술계	비예술			예술관련	비예술 관련 (종교, 복지관 등)				
계	(280)	2.5	3.2	48.9	3.6	1.4	1.8	2.5	1.1	28.2	6.4	.4	
성별	남	(169)	1.2	2.4	45.0	3.6	1.8	.6	2.4	.6	34.9	7.1	.6
	여	(111)	4.5	4.5	55.0	3.6	.9	3.6	2.7	1.8	18.0	5.4	0.0
연령별	18세-34세	(70)	10.0	5.7	70.0	2.9	0.0	1.4	1.4	0.0	5.7	2.9	0.0
	35-64세	(140)	0.0	2.9	52.1	5.7	1.4	.7	2.1	.7	25.7	7.9	.7
	65세 이상	(70)	0.0	1.4	21.4	0.0	2.9	4.3	4.3	2.9	55.7	7.1	0.0
혼인 상태별	유배우	(122)	0.0	4.1	32.0	2.5	1.6	2.5	4.1	.8	36.9	14.8	.8
	별거·사별·이혼	(34)	0.0	0.0	44.1	0.0	2.9	0.0	0.0	5.9	47.1	0.0	0.0
	미혼	(124)	5.6	3.2	66.9	5.6	.8	1.6	1.6	0.0	14.5	0.0	0.0
전업 구분	전업예술인	(160)	.6	2.5	50.6	4.4	1.3	1.3	3.1	1.9	28.8	5.6	0.0
	겸업	(99)	6.1	5.1	51.5	3.0	2.0	3.0	1.0	0.0	23.2	4.0	1.0
	비경제활동	(21)	0.0	0.0	23.8	0.0	0.0	0.0	4.8	0.0	47.6	23.8	0.0
주관적 계층 의식	하층	(128)	.8	.8	45.3	3.9	1.6	1.6	2.3	1.6	33.6	7.8	.8
	중하층	(88)	3.4	5.7	52.3	3.4	1.1	1.1	3.4	1.1	23.9	4.5	0.0
	중간층	(52)	3.8	5.8	59.6	3.8	0.0	0.0	0.0	0.0	19.2	7.7	0.0
	중상층	(12)	8.3	0.0	16.7	0.0	8.3	16.7	8.3	0.0	41.7	0.0	0.0

-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는 조사대상 예술인의 73.6%가 예술계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10.0%로 나타나, 일부 예술인은 주변의 도움없이 예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0.4%, 3.6%에 불과하며 공공보다는 민간인 예술관련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7.1%로 높게 나타남.

- 예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관계망 구성은 주로 가족관계로 부터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예술관련 친구나 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도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 지원과 체감도는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 예술인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3-13〉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의존하는 사람 혹은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정부	공공기관 (예술 관련)	민간단체		없음	배우자	
				예술계	비예술			예술 관련	비예술 관련 (종교, 복지관 등)			
계	(280)	.7	.7	73.6	1.8	.4	3.6	7.1	.4	10.0	1.8	
성별	남	(169)	.6	.6	71.6	1.2	0.0	3.6	7.7	.6	11.8	2.4
	여	(111)	.9	.9	76.6	2.7	.9	3.6	6.3	0.0	7.2	.9
연령별	18세-34세	(70)	1.4	2.9	87.1	0.0	1.4	1.4	5.7	0.0	0.0	0.0
	35-64세	(140)	.7	0.0	76.4	2.9	0.0	2.1	4.3	0.0	10.7	2.9
	65세 이상	(70)	0.0	0.0	54.3	1.4	0.0	8.6	14.3	1.4	18.6	1.4
혼인 상태별	유배우	(122)	0.0	.8	68.0	.8	0.0	3.3	6.6	0.0	16.4	4.1
	별거·사별·이혼	(34)	0.0	0.0	55.9	2.9	0.0	11.8	11.8	2.9	14.7	0.0
	미혼	(124)	1.6	.8	83.9	2.4	.8	1.6	6.5	0.0	2.4	0.0
전업 구분	전업예술인	(160)	.6	0.0	73.8	3.1	0.0	3.1	8.8	.6	8.8	1.3
	겸업	(99)	1.0	2.0	75.8	0.0	1.0	4.0	4.0	0.0	10.1	2.0
	비경제활동	(21)	0.0	0.0	61.9	0.0	0.0	4.8	9.5	0.0	19.0	4.8
주관적 계층 의식	하층	(128)	0.0	0.0	72.7	1.6	0.0	5.5	5.5	.8	10.9	3.1
	중하층	(88)	1.1	1.1	75.0	2.3	0.0	0.0	11.4	0.0	9.1	0.0
	중간층	(52)	1.9	1.9	80.8	1.9	1.9	0.0	3.8	0.0	5.8	1.9
	중상층	(12)	0.0	0.0	41.7	0.0	0.0	25.0	8.3	0.0	25.0	0.0

4. 고용형태

□ 현재 예술인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이 비예술인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

□ 예술인의 인구학적 특성

○ 조사대상자 중 예술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57.1%, 예술과 다른 일을 함께 겸업하고 있는 경우 35.4%,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7.5%로 나타남.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전업 및 겸업예술인의 규모가 각각 50%로 동일한 규모를 가진 것을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 성별, 연령별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전업(겸업)예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 남성의 경우 58.6%가 전업으로 예술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33.1%는 겸업을 하고 있었음. 여성의 경우 전업예술인은 55.0%, 겸업을 하는 경우 38.7%로 상대적으로 겸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의 경우 전업예술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35-64세의 경우 예술과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경우가 45.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요활동분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무용분야, 음악분야, 문학분야, 영화분야 등에서 60% 이상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며, 만화분야의 경우 80%가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전업(겸업)예술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업예술인	겸업	비경제활동
계		57.1	35.4	7.5
성별	남	58.6	33.1	8.3
	여	55.0	38.7	6.3
연령별	18세-34세	53.6	42.0	4.4
	35-64세	51.4	45.7	2.9
	65세 이상	71.8	8.5	19.7
혼인상태별	유배우	58.2	32.0	9.8
	별거·사별·이혼	73.5	14.7	11.8
	미혼	51.6	44.4	4.0
주요활동분야	문학	63.3	26.7	10.0
	미술/공예	55.1	35.9	9.0
	사진/건축	50.0	50.0	-
	음악/대중음악/국악	65.9	34.2	-
	무용	66.7	33.3	-
	연극	52.9	45.1	2.0
	영화	61.5	18.0	20.5
	방송	50.0	33.3	16.7
	만화	20.0	80.0	-
	기타	41.7	50.0	8.3

□ 예술인의 고용형태

- 예술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형태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시직 21.3%, 일용직 17.5%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임시·일용직이 38.8%로 나타남.
 - 연령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18-34세인 청년예술인의 경우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63.6%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5-64세 전업예술인의 32.4%,

65세 이상 예술인의 경우 약 50% 정도가 1인 자영업자 형태로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불안정한 고용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5〉 전업예술인의 고용형태

(단위: %)

구분		전업예술인	18세-34세			35-64세			65세 이상		
			18세-34세	35-64세	65세 이상	18세-34세	35-64세	65세 이상	18세-34세	35-64세	65세 이상
예술인 고용형태	상용직	10.0	10.6	8.1	5.3						
	임시직	21.3	33.3	36.0	3.5						
	일용직	17.5	30.3	14.0	7.0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1.3	-	0.7	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3.8	-	3.7	8.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6.3	18.2	32.4	47.4						
	실업자	10.0	7.6	5.2	24.6						
계		100.0	100.0	100.0	100.0						

- 전업예술인이 아닌 겸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술활동의 고용형태가 임시·일용직이 54.6%로 반 이상으로 나타남. 이들의 경우 예술활동 외 직업도 마찬가지로 임시직 44.4%, 일용직 21.2%로 65.6% 정도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서의 고용형태는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결과를 보면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은 25.1%, 고용주 14.3%이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한 경우는 기간제·임시직 등으로 27.1%이었음.
 - 통계청(2015)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이 상용직 42.7%, 임시·일용직 13.4%로 일반 전체가구와 비교시 예술활동의 경우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6〉 겸업예술인의 고용형태

(단위: %)

구분		겸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¹⁾	
		예술활동 고용형태	예술활동 외직업의 고용형태
예술인 고용형태	상용직	5.1	16.2
	임시직	39.4	44.4
	일용직	15.2	21.2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1.0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4.0	7.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3	11.1
	실업자	10.1	-
계		100.0	100.0

주: 1) 겸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자(99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예술활동 이외 다른 직업 활동을 갖게 된 주된 이유로는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때문이라는 응답이 45.5%,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소득이 낮기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약 89% 정도가 소득에 대한 이유였으며,

- 앞서 예술활동 외 겸업을 하는 예술인들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54.6%였음을 감안할 때, 고용불안정의 이유가 4%인 것으로 보아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겸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³⁵⁾
- 또한 예술활동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또는 불규칙한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용직으로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정으로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예술직종에 대한 고용형태가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7>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예술활동의 기회조차 없었음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기타 ¹⁾	계
		낮은 소득	불규칙한 소득	고용 불안정	열악한 작업환경		
전체	1.0	43.4	45.5	4.0	1.0	5.1	100.0
상용직	-	60.0	-	20.0	-	20.0	100.0
임시직	-	48.7	51.3	-	-	-	100.0
일용직	-	33.3	60.0	6.7	-	-	10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100.0	-	-	-	-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5.0	50.0	-	-	25.0	100.0

주: 1) 기타이유에는 예술활동후원을 위한 자금축적, 겸업에 대한 본인 희망, 현재 예술활동을 위한 회사창업, 수술치료 목적 등이 있었음.

□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외 일자리에 투자하는 주당 평균시간

- 예술활동 분야별 주당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전업예술인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활동분야로는 만화분야로 주당 평균 40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술/공예, 사진/건축분야에서 각각 주당 평균 37.5시간, 37.7시간으로 나타났음.
 - 예술활동과 그 외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전업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만화분야에서 주당평균 45시간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경우 예술 외 활동에서도 20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술/공예, 방송, 만화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예술활동 분야의 경우 예술활동 외의 일자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에 따라 일자리에 투자하는 주당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주당평균 45.4시간을, 임시직의 경우 30.3시간, 일용직의 경우 18.0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35)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본 조사와 동일하게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주된 이유로 낮은 소득(51.6%), 불규칙한 소득(31.4%)로 80% 이상의 예술인이 소득 불안정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들고 있음.

주당 30시간 이상을 예술활동을 하는데 투자하고 있었음.

- 예술활동에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겸업자의 경우, 예술활동 이외의 일자리에 주당평균 2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는 예술활동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18〉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외 일자리에 투자하는 주당 평균시간

(단위: 시간/주)

구분	전업예술인	겸업		
		예술활동	예술활동 외	
주요활동분야	문학	21.6	17.5	20.5
	미술/공예	37.5	26.9	21.8
	사진/건축	37.7	11.3	15.0
	음악/대중음악/국악	27.8	13.7	32.6
	무용	24.9	13.3	18.0
	연극	25.1	15.3	21.4
	영화	26.8	16.9	21.6
	방송	10.3	19.5	0.5
	만화	40.0	45.3	20.0
	기타	31.0	26.3	23.7
예술활동 고용형태	상용직	45.4	30.2	9.4
	임시직	30.3	16.8	23.3
	일용직	18.0	20.5	23.3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27.5	15.0	5.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33.8	31.8	3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1.2	25.8	20.1

□ 전업(겸업)예술인의 소득분포 및 월평균 소득

○ 전업예술인의 경우 예술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9%에 불과하였으며, 68.7%는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고 응답함. 특히 43.1%는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받으며 예술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겸업을 하는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예술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71.4%였으며, 85% 이상이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겸업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소득 불안정성인 것임을 여실히 나타내는 결과임.

○ 또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업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은 90.1만원 정도였으며, 겸업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정도이나,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126만원 정도로 나타남.

- 따라서,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모두에 대한 월평균 수입을 보면, 전업예술인의 경우 102.9만원, 겸업인 경우 166.4만원으로, 예술활동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보다 예술 외 다른 활동을 통한 수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예술인들이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 틀림이 없음.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예술활동 수입은 월 104.6만원(연 1,255만원), 비예술활동 수입 월 129만원(1,552만원)이었음. 수입이 없다는 경우도 36.1%에 이르렀음. 본 연구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19〉 전업(겸업)예술인의 소득분포 및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월)

구분		분포			월평균 소득		
		전업예술인	겸업	비경제활동	전업예술인	겸업	비경제활동
월평균수입 (예술활동 +비예술활동)	49만원 이하	36.9	11.5	85.7	102.9	166.4	22.0
	50-99만원	26.3	28.1	4.8			
	100-199만원	22.5	32.3	9.5			
	200-299만원	8.1	13.5	-			
	300만원 이상	6.3	14.6	-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49만원 이하	43.1	71.4	90.5	90.1	47.4	13.4
	50-99만원	25.6	14.3	-			
	100-199만원	19.4	9.2	9.5			
	200-299만원	6.9	4.1	-			
	300만원 이상	5.0	1.0	-			
월평균 비예술활동수입	49만원 이하	91.3	32.7	100.0	12.8	125.9	8.6
	50-99만원	5.6	23.5	-			
	100-199만원	1.3	23.5	-			
	200-299만원	1.3	11.2	-			
	300만원 이상	0.6	9.2	-			

○ 연령별로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 전업예술인의 경우 35-64세인 예술인은 예술활동만을 통한 수입이 월평균 122.7만원 정도로 나타난 반면, 18-34세 청년예술인의 경우 81.3만원, 65세 이상 예술인의 경우 50.4만원으로 연령에 따라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앞선 연령별 고용형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 및 65세 이상 예술인의 경우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과 연결되는 문제임.
- 겸업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보다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연령에 따라 2~4배 정도 높게 나타남.

〈표 3-20〉 연령별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월)

구분	전업예술인			겸업			비경제활동		
	18-34세	35-64세	65세 이상	18-34세	35-64세	65세 이상	18-34세	35-64세	65세 이상
월평균 가구수입	238.0	357.1	176.5	403.5	459.3	325.3	600.0	154.2	87.8
월평균 개인수입 (예술활동+비예술활동)	88.4	133.9	69.7	162.1	167.1	180.6	41.7	45.8	11.0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81.3	122.7	50.4	32.1	54.9	41.7	38.9	31.3	2.9
월평균 비예술활동수입	7.1	11.2	19.3	130.1	122.7	138.9	2.8	14.6	8.1

- 예술활동을 전업이든 겸업으로 하든 예술인의 70% 이상이 주관적인 계층이 중하층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음.

〈표 3-21〉 전업(겸업)예술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

구분		전업예술인	겸업	비경제활동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44.4	43.4	66.7
	중하층	33.8	30.3	19.1
	중간층	18.1	20.2	14.3
	중상층	3.8	6.1	-
계		100.0	100.0	100.0

- 비경제활동인구중 예술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

-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35-64세의 경우 주된 이유가 가사 또는 양육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여성예술인인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여성예술인에 대한 보육 및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65세 이상의 예술인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인한 근로무능력 상태이거나, 간병, 구직활동 포기 등의 이유가 주가 되었으며, 18-34세 청년의 경우 정규교육기관의 학업 또는 취업 준비 등이 주된 이유였음.

〈표 3-22〉 예술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

(단위: %)

사유	근로 무능력	정규교육 기관학업	취업준비	가사	양육	간병	구직활동 포기	근로의사 없음	기타
비율	23.8	4.8	9.5	4.8	9.5	4.8	4.8	9.5	28.6
18-34세									
35-64세									
65세 이상									

주: 기타 이유로는 고령의 나이(19.1%), 질병(4.8%), 작품을 기다리는 중(4.8%) 등이 있었음.

5. 건강(원로예술인)

가. 건강수준 및 관리 실태

- 조사대상 예술인의 약 14.3%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나쁨 + 매우 나쁨)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 원로예술인에서 더욱 높았는데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20%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나쁨 + 매우 나쁨) 응답하였음.

〈표 3-23〉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매우 나쁨	8.57	0	0	1.43	2.5
나쁜 편임	11.43	8.57	14.29	12.86	11.79
보통	41.43	28.57	31.43	38.57	35.0
건강한 편임	31.43	45.71	44.29	40	40.36
매우 건강함	7.14	17.14	10	7.14	10.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조사대상 예술인의 30%는 3개월 이상 투약 또는 투병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약 67.1%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음.

○ 건강수준과 의료비 지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만성질환 이환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자 비율은 연령이 많은 원로예술인이 가장 높았고, 중장년 남녀 예술인의 경우에도 각각 18.6%, 22.9%로 약 5명 중 1명은 만성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약 35.7%는 2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4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도 5.7%로 나타났음.

〈표 3-24〉 만성질환 여부 및 만성질환 수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만성질환 무	32.86	88.57	81.43	77.14	70.0
만성질환 유	67.14	11.43	18.57	22.86	30.0
1개	31.43	10	12.86	15.71	17.5
2개	22.86	0	5.71	4.29	8.21
3개	7.14	1.43	0	1.43	2.5
4개	5.71	0	0	1.43	1.79

□ 예방적 측면의 건강관리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 예술인의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교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예술인의 수검율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 대상 예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전 국민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74.8%(국민건강보험공단, 2014a)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고령 및 건강수준이 낮아 평상 시 의료이용 빈도가 높은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의 수검률은 90%로 매우 높았으나, 35~64세까지의 남녀 예술인은 각각 54.3%, 57.1%수준이었고 상대적으로 건강상태 좋은 청년예술인의 수검률은 30%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표 3-25〉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	미수검	계
전 국민	74.8	25.2	100.0
조사대상 예술인	57.86	42.14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4a)

〈표 3-26〉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수검률	90.0	30.0	57.14	54.29	57.86

나. 의료비 부담 수준

□ 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7%(다소 부담 + 많이 부담)가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료비 지출이 많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5세 이상 대상자가 가장 높았고 다소 부담 또는 많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전 연령층에서 약 32.9%~45.7%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7〉 의료비 부담 수준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전혀 부담되지 않음	10.0	10.0	2.9	7.1	7.5
거의 부담되지 않음	20.0	24.3	17.1	15.7	19.3
보통	24.3	32.9	34.3	38.6	32.5
다소 부담됨	24.3	20.0	25.7	22.9	23.2
많이 부담됨	21.4	12.9	20.0	15.7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입원, 외래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이 연간 144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 조사 대상 예술인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연평균 의료비는 약 102만원 수준이었음.

-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청년예술인이 약 44.5만원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적었고 중장년 남성예술인은 연평균 약 118.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음.

〈표 3-28〉 연령별 연평균 의료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의료비 지출	144.0	44.5	101.1	118.4	101.9

주: 1) 건강보조식품 등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비용은 제외한 금액임.

□ 원로예술인의 경우, 생활비 중 식비(40%), 주거비(20%) 다음으로 보건의료비(18.6%)가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나타났음.

○ 전체 조사 대상 예술인의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30.36%) > 주거비(22.14%) > 부채상환(11.07%) > 교육비(10.36%) 등으로 나타난 반면 만성질환 이환율이 높고 연령이 많은 원로예술인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29〉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식비	40.0	35.71	18.57	27.14	30.36
교육비	0	1.43	21.43	18.57	10.36
주거비	20.0	21.43	28.57	18.57	22.14
보건의료비	18.57	1.43	2.86	1.43	6.07
가구집기비	1.43	0.00	0.00	1.43	0.71
교양오락비	0.00	2.86	2.86	1.43	1.79
통신비	0.00	17.14	1.43	5.71	6.07
교통비	8.57	8.57	8.57	7.14	8.21
경조사비	4.29	0.00	4.29	1.43	2.50
부채상환	5.71	10.0	11.43	17.14	11.07
없음	1.43	1.43	0.00	0.00	0.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비율은 조사 대상 예술인의 15%에 이르고 있음.

○ 과부담 의료비는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지출이 소득이나 지불능력의 10%-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지불능력(ability to pay) 중 의료비로 40% 이상 지출될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WHO, 2000).

○ 65세 이상 원로예술인 약 6.78%가 과부담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35세 이상 64세 미만 남성예술인의 약 4.29%도 가구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비율도약 1.7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1.0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0〉 연령별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단위: %)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소계
소득 대비 의료비 10 - 20%	3.57	1.43	1.43	2.86	9.29
소득 대비 의료비 20 - 30%	2.14	0.00	0.36	0.71	3.21
소득 대비 의료비 30 - 40%	0.00	0.36	0.00	0.36	0.71
소득 대비 의료비 40 - 50%	0.71	0.00	0.36	0.00	1.07
소득 대비 의료비 50 - 60%					
소득 대비 의료비 60 - 70%	0.00	0.00	0.00	0.36	0.36
소득 대비 의료비 70%이상	0.36	0.00	0.00	0.00	0.36
소득 대비 의료비 10%이상(전체)	6.78	1.79	2.15	4.29	15.0

주: 1) 여기서의 과부담 의료비는 직접적 의료비 대비 가구 총 수입만을 고려하였음. 과부담의료비 지출 계산 시 전체 가구원의 의료비, 건강보험료, 소득 중 식료품비 등 보다 정교한 소득 및 지출 항목을 반영하여야 하나 본 조사 자료의 한계 상 가구의 총 수입 대비 직접의료비(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의료비) 지출 비율만을 포함함. 따라서 실제 과부담 의료비 지출 비율은 본 분석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다. 미충족 의료 욕구 실태

- 미충족 의료 욕구는 의료이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의료비 부담 등 다른 이유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제한적 의료이용 또는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을 의미함.
-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28.9%가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복지욕구조사³⁶⁾ 결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5.29% 수준인데 반해 조사 대상 예술인의 치료 포기 경험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치료 포기 경험은 원로예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5~64세 사이의 남성예술인이 37.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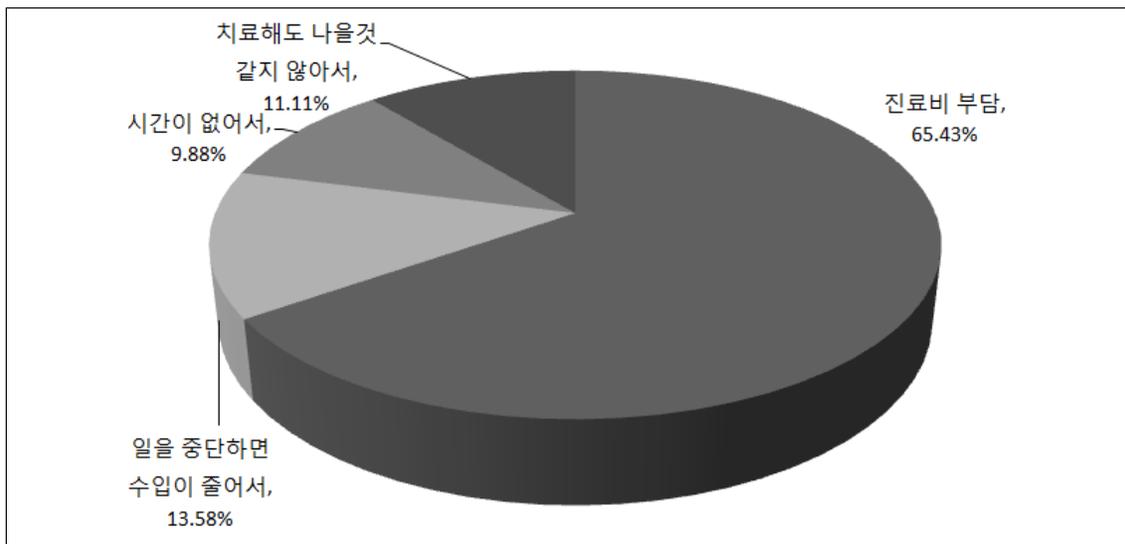
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2차조사 심층분석 결과(이태진 외, 2015)

〈표 3-31〉 치료를 포기한 경험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치료 포기 경험 유	22.86	32.86	22.86	37.14	28.93
치료 포기 경험 무	77.14	67.14	77.14	62.86	7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치료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비 부담이 6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라는 응답이 13.58%,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1.11% 순이었음.
- 즉, 의료서비스 이용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대상자의 치료 포기 사유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치료를 포기한 사유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87.5%가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1] 치료를 포기한 주된 사유



〈표 3-32〉 연령별 치료를 포기한 사유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진료비 부담	87.5	56.5	62.5	61.5	65.4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	0	17.4	12.5	19.2	13.6
시간이 없어서	0	21.7	6.3	7.7	9.9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12.5	4.4	18.8	11.5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의료이용의 접근성

-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와 비용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비용적 측면의 접근성을 살펴보았음.
- 이를 위해 조사 대상 예술인의 의료보장 자격유형과 의료이용에서의 급여제한 등의 위험 발생 지표로 건강보험 체납가구 비율 그리고 공적의료보장제도 이외 의료이용의 접근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간보장성 보험 가입률을 분석하였음.
 - 조사 대상 예술인의 의료보장 유형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 인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자격별 구성으로 보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68.8%, 지역가입자가 28.4%정도로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 대상 예술인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한 직장가입자(40.71%)보다 지역가입자(53.93%)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예술인 그룹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에 비하여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가입자의 비중은 더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예술인의 의료급여 비율이 전체 의료보장인구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술인의 저소득계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현재 전체 의료보장 인구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 대상자 비율은 각각 2.07%와 0.9%수준이나, 예술인의 경우 3.57%, 1.79%로 전체 인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시 예술인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4.8%이었으며,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49.5%, 지역가입자(세대원포함) 44.8%, 의료급여(1종 및 2종)는 0.8% 수준이었음.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 전 국민중 2.8%가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볼 때 예술인 실태조사의 의료급여 비중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음. 의료급여 수급요건이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많은 원로예술인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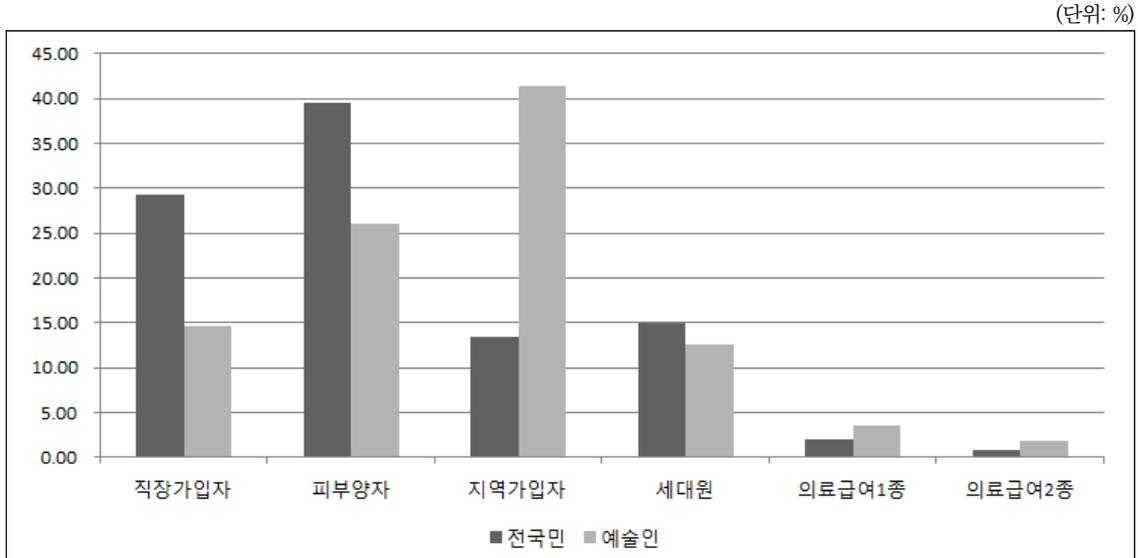
〈표 3-33〉 의료보장 자격유형 비교

(단위: %)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세대주	세대원	1종	2종	
전 국민	29.3	39.5	13.5	15.0	2.0	0.8	100.0
조사대상 예술인	14.6	26.1	41.4	12.5	3.6	1.8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4b)

[그림 3-2] 의료보장 자격유형 비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4b)

- 의료보장 자격은 35~64세 사이의 남성예술인, 여성예술인,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지역 가입자 비율이 높았고, 34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원로예술인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이 17.14%로 원로예술인이 최저생계비(현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비율이 높았음.

<표 3-34> 연령별 의료보장 자격유형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비율
직장가입자	10	15.71	17.14	15.71	14.6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5.71	34.29	28.57	15.71	26.07
지역가입자	44.29	22.86	42.86	55.71	41.43
지역가입자 세대원	2.86	25.71	11.43	10	12.5
의료급여 1종	11.43	1.43	0	1.43	3.57
의료급여 2종	5.71	0	0	1.43	1.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예술인의 약 14.29%가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³⁷⁾'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비율이 1.89%인데 반해 조사대상 예술인의 체납 경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본 조사 결과의 체납도 모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발생하였으며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 보다 35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남녀 예술인의 체납 경험이 많았음.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 형태이며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받고 수급계층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존재하지 않음.

〈표 3-35〉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률(2015년)

(단위: %)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비율	10.0	13.0	17.1	17.1	14.3

-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이용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용적 측면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 가구의 약 80%³⁸⁾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반해 조사 대상 예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47.1%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다만, 본 조사는 개인단위 조사로 가구 단위 가입률 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단위의 실손형 민간보험가입률도 '15년 4월 현재 3,083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60% 이상에 이르고 있음(금융감독원, 2015).

〈표 3-36〉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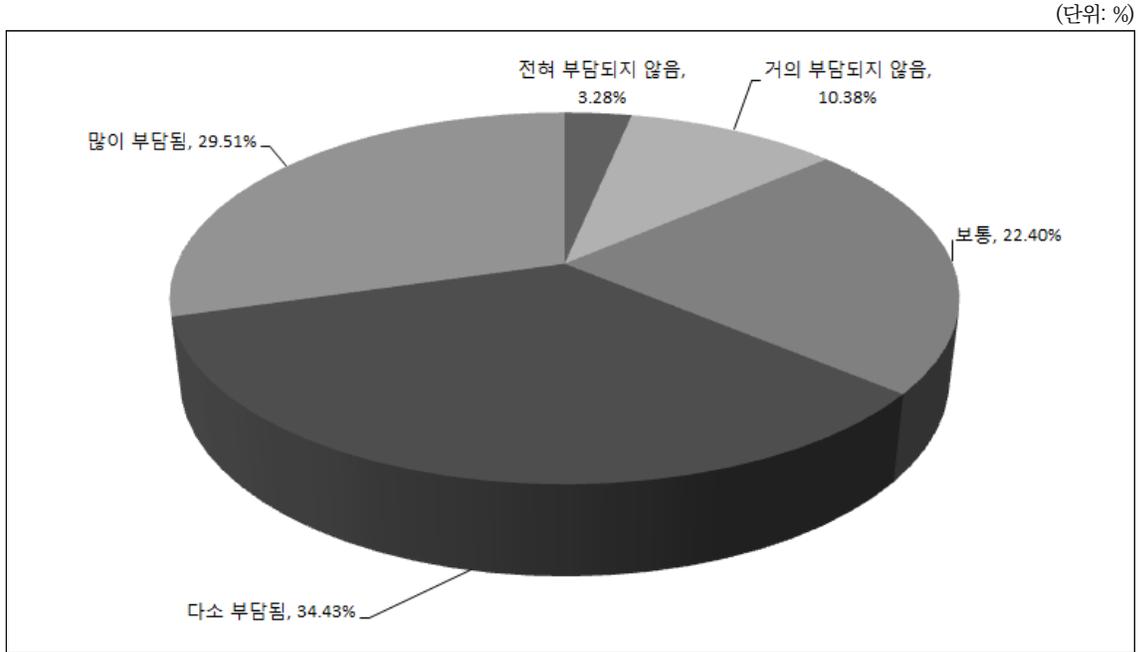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17.14	54.29	70	47.14	47.14

- 조사 대상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4%가 많이 부담 또는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보면, 직장가입자의 43.8%가 많이 부담 또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지역가입의 71.1%가 많이 부담 또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주가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개인의 전체 재산, 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2차조사 심층분석 결과로 전국 4,800세대를 조사한 결과로, 복지욕구실태 조에서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를 조사하였음(이태진 외, 2015).

38)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 심층보고서 결과로 가구 단위의 가입률임. 본 조사에서는 개인단위로 가구 단위 가입률 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서남규 외, 2014).

[그림 3-3]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표 3-37〉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에 대한 부담

(단위: %)

구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세대원 포함)	전체
전혀 부담되지 않음	8.3	1.5	3.3
거의 부담되지 않음	16.7	8.2	10.4
보통	31.3	19.3	22.4
다소 부담됨	33.3	34.8	34.4
많이 부담됨	10.4	36.3	29.5
계	100.0	100.0	100.0

□ 예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81.4%가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 수준은 건강보험료의 약 51.7%로 조사되었음.

○ 조사 대상 직장가입자의 77.08%, 지역가입자의 82.96%가 예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은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1.7%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사되었음.

-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51.9%, 100%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12%, 30%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9.84% 순이었음.

〈표 3-38〉 건강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세대원 포함)	전체
보험료 지원 필요	77.08	82.96	81.42

〈표 3-39〉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

(단위: %)

구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세대원 포함)	전체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	52.08	51.89	51.72

6. 경제여건

가. 소득 및 지출 현황

- 조사 대상 예술인의 연간(15.1월~12월) 평균 가구 총수입은 약 3,8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조사대상 예술인의 개인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약 8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1년간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 평균은 4,684만원, 중간값은 4천만원이었으며, 개인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1,255만원, 비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평균 1,552만원으로 조사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소득과 지출수준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이 실태조사의 목적과 다르고 이에 따라 조사 규모 및 표본 설계가 다르기 때문임.³⁹⁾
-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조사된 예술인 가구 소득의 약 21.5%를 차지한 반면, 비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약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예술 활동 수입 대비 관련 지출의 비율은 약 51%인 것으로 나타나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약 절반가량은 예술 활동을 위한 지출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유형별 총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여성예술인의 총수입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예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⁴⁰⁾
 - 여성·청년 예술인 가구가 다른 집단보다 가구 총수입이 높은 이유는 여성·청년 예술인의 경우 본인 외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가구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39) 실태조사는 모집단의 분포를 정확히 대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 조사는 예술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40) 예술인 연령대별 지난 1년간 가구총수입을 예술인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30대 이하 3,932만원, 40대 4,954만원, 50대 5,777만원, 60세 이상 4,087만원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본 조사와 비교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조사된 예술인의 가구주 여부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예술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약 47%, 청년예술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약 44%에 불과하지만 남성 예술인의 경우 약 81%가, 원로 예술인의 경우 약 94%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남.
- 예술 활동 수입의 경우 남성예술인이 가장 높았고 가구총수입에서 예술활동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여성예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로예술인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 활동 수입대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원로예술인의 경우 그 비율이 67%에 달해 대부분의 예술 활동 수입이 예술 활동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여성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 수입대비 지출 비율이 약 44%로 네 집단 중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예술인 유형별 평균 수입 및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가구총수입(A)	2,081	3,846	6,498	3,069	3,874
(개인)예술활동수입(B)	486	700	1,053	1,091	832
(개인)비예술활동수입(C)	314	710	550	932	627
(개인)예술활동지출(D)	326	389	460	529	426
B/A*	23.4%	18.2%	16.2%	35.5%	21.5%
C/A**	15.1%	18.5%	8.5%	30.4%	16.2%
D/B***	67.0%	55.5%	43.6%	48.5%	51.2%

- 조사된 예술인의 평균 가구총지출은 약 2,690만원이며 이는 앞에서 제시된 가구총소득의 약 70%에 해당함⁴¹⁾.
- 가구총지출을 예술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 예술인의 가구 총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예술인가구 총지출의 약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원로예술인의 약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예술인 다음으로 청년예술인과 남성예술인의 평균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로예술인의 경우 약 1,62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집단에서 총지출에서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와 주거비의 비중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41)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의 1년간 가구 총 지출은 약 4,030만원, 중앙값은 3천만원으로 본 조사에 비해 높게 조사됨.

- 유형별로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원로예술인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총지출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예술인이나 여성 예술인보다 각각 7.6%p,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예술인의 경우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예술인의 경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남성예술인 역시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소비 주요 항목들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원로예술인의 경우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이, 청년예술인의 경우 교통통신비, 여성 및 남성 예술인의 경우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3-41〉 예술인 유형별 총지출 및 항목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가구총지출	1,624	2,833	3,799	2,522	2,694
보건의료	163	68	159	155	136
주거비	115	132	203	104	138
보육비	-	9	49	175	58
교육비	-	68	250	182	125
교통통신비	126	224	207	266	206
보건의료비/총지출	10.0%	2.4%	4.2%	6.1%	5.1%
주거비/총지출	7.1%	4.6%	5.4%	4.1%	5.1%
보육비/총지출	-	0.3%	1.3%	6.9%	2.2%
교육비/총지출	-	2.4%	6.6%	7.2%	4.6%
교통통신비/총지출	7.7%	7.9%	5.5%	10.6%	7.6%

□ 소득과 지출의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술인 가구에서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소득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예술인이 전체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인 약 38%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함.

○ 여성 예술인의 경우 약 24.7%로 그 비중이 제일 낮고 남성 예술인의 경우 약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가구총소득 대비 예술활동 수입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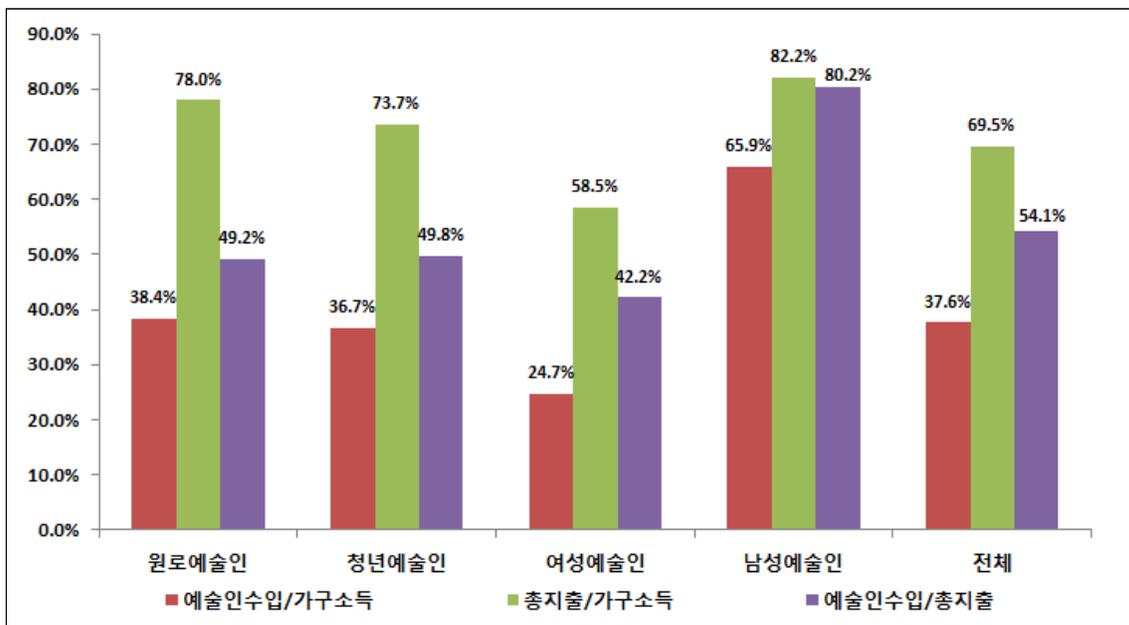
○ 한편, 가구소득 대비 총지출 비율은 전체 예술인 가구의 경우 약 70%인 것으로 나타남. 가구총지출을 예술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 예술인의 가구 총지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가구소득대비 지출비율은 약 59%에 불과함.

- 여기서, 원로예술인이 약 78%, 남성 예술인이 약 82%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술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규모를 총지출 대비 예술인의 수입(예술활동 + 비예술활동)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평균 총지출에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남성 예술인의 경우 총지출 대비 예술인 수입의 비율이 약 80%로 가구소득 대비 총지출과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다른 예술인 유형의 경우 총지출 대비 비율이 50%이하로 이들의 수입이 가구 지출의 50%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4] 예술인 유형별 소득 및 지출의 상대적 규모

(단위: %)



- 예술인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분석해 보면, 먼저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으로는 식비(30.4%)와 주거비(22.1%)를 들고 있음.
- 한편,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지적한 경우도 11.1%나 되며, 그 다음 항목들로는 교육비(10.4%), 교통비(8.2%)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특성별로 어려움을 가지는 지출항목을 보면 원로예술인은 식비(40.0%)와 주거비(20.0%) 이외에 보건의료비(18.6%)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식비, 주거비 이외에 청년층은 통신비(17.1%), 중년층은 교육비(20.0%), 부채상환(14.3%)에 대해 부담을 지니고 있었음.
- 예술인에 따라 공통적으로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특성별로 서로 다른 지출비목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지출하는 생활비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식비	교육비	주거비 (월세 등)	보건 의료비	가구 집기비	교양 오락비	통신비	교통비	경조 사비	부채 상환	없음	
계	(280)	30.4	10.4	22.1	6.1	.7	1.8	6.1	8.2	2.5	11.1	.7	
성별	남	(169)	33.7	8.3	21.3	7.1	1.2	.6	5.9	8.3	1.8	11.2	.6
	여	(111)	25.2	13.5	23.4	4.5	0.0	3.6	6.3	8.1	3.6	10.8	.9
연령별	18세-34세	(70)	35.7	1.4	21.4	1.4	0.0	2.9	17.1	8.6	0.0	10.0	1.4
	35-64세	(140)	22.9	20.0	23.6	2.1	.7	2.1	3.6	7.9	2.9	14.3	0.0
	65세 이상	(70)	40.0	0.0	20.0	18.6	1.4	0.0	0.0	8.6	4.3	5.7	1.4
혼인 상태별	유배우	(122)	31.1	22.1	13.9	8.2	.8	.8	.8	4.9	2.5	13.9	.8
	별거·사별·이혼	(34)	26.5	2.9	35.3	11.8	0.0	0.0	2.9	11.8	5.9	2.9	0.0
	미혼	(124)	30.6	.8	26.6	2.4	.8	3.2	12.1	10.5	1.6	10.5	.8
전업 구분	전업예술인	(160)	29.4	10.0	22.5	6.3	1.3	1.3	5.6	10.6	2.5	9.4	1.3
	겸업	(99)	28.3	12.1	24.2	2.0	0.0	3.0	7.1	5.1	2.0	16.2	0.0
	비경제활동	(21)	47.6	4.8	9.5	23.8	0.0	0.0	4.8	4.8	4.8	0.0	0.0
주관적 계층 의식	하층	(128)	32.0	4.7	29.7	6.3	0.0	1.6	4.7	7.8	2.3	10.2	.8
	중하층	(88)	29.5	15.9	15.9	4.5	2.3	0.0	10.2	6.8	2.3	11.4	1.1
	중간층	(52)	32.7	13.5	17.3	7.7	0.0	5.8	3.8	7.7	0.0	11.5	0.0
	중상층	(12)	8.3	16.7	8.3	8.3	0.0	0.0	0.0	25.0	16.7	16.7	0.0

○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로예술인의 경우 식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와 의료비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청년예술인 역시 식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원로 예술인과는 다르게 교통통신비의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함.

- 여성예술인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가 두 번째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 예술인의 경우 식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와 주거비의 부담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 두 집단은 원로 예술인과 청년예술인보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예술인의 경우 남성 예술인보다 교육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함.

〈표 3-43〉 예술인 유형별 생활비중 주관적 부담 항목 순위

(단위: 만원)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1. 식비	40.0	35.7	18.6	27.1	30.4
2. 교육비		1.4	21.4	18.6	10.4
3. 주거비	20.0	21.4	28.6	18.6	22.1
4. 의료비	18.6	1.4	2.9	1.4	6.1
5. 교통통신비	8.6	25.7	10.0	12.9	14.3
6. 부채상환	5.7	10.0	11.4	17.1	11.1
7. 기타*	7.1	4.3	7.1	4.3	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타는 가구집기비, 피복비, 교양오락비, 경조사비와 부담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비율이 합을 나타냄.

나. 자산 및 부채 현황

- 조사에 응답한 예술인의 가구 총자산은 평균 약 4억원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예술인의 경우 평균 약 6억원으로 가장 높은 자산보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청년예술인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약 2억 7천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의 경우 응답자의 가구금융자산은 약 1억 4천만원이며, 응답자 유형별로는 남성 예술인 약 3억 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예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로예술인의 경우 가구금융자산이 약 3.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로예술인의 주택가격의 평균인 2억 3519만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이는 원로 예술인의 경우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있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주택가격을 살펴보면 조사된 응답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원으로 나타났고 청년 예술인과 원로예술인이 여성 및 남성 예술인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자산의 경우 소득과 지출에 비해 변수 값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평균을 보완하여 중위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⁴²⁾
 - 전체 응답자 총자산의 중위 값은 약 1억원으로 평균과 비교하면 약 3억원의 차이가 있으며, 평균값에서 더 높은 값을 보여준 남성예술인의 경우 중위값을 비교해보면 여성예술

42)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발표자료에서도 특정수치나 집단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보다는 중위값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015년 3월기준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 가구들의 평균자산은 3억4천만원 수준이며, 이중 부채는 6천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자산의 대부분은 실물자산으로 약 2억5천만원이었으며 금융 자산은 9천만원수준이었음.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면 자산의 중앙값은 2억원, 이중 금융자산은 45백만원, 실물자산은 17천만원, 부채는 447십만원이었음(통계청,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우리조사와 비교시 예술인 자산의 중앙값은 1억원, 금융자산은 0원이란 측면에서 많은 예술인이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인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금융자산의 경우 청년 예술인과 남성예술인을 제외하면 중위 값이 모두 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중위값이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주택자산 보유가 금융자산 보유보다 더 선호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주택가격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중위값은 약 6천만원이며, 이중 남성예술인이 약 7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여성예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로예술인의 경우 주택가격의 평균값은 여성 및 남성 예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위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원로예술인 가구의 경우 주택보유 여부의 차이가 다른 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3-44〉 예술인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가구총자산	34,208 (7,000)	27,463 (5,200)	37,485 (11,600)	60,583 (10,000)	40,222 (10,000)
가구금융자산	3,588 (-)	2,038 (100)	17,646 (-)	33,988 (100)	14,410 (-)
주택가격	23,519 (4,750)	25,195 (5,500)	16,946 (6,500)	18,320 (7,000)	20,910 (6,000)

주: ()는 중위값을 나타냄.

○ 아래 표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자산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앞서서도 18세~34세 청년층의 자산보유 수준이 가장 낮고 여성 및 남성 예술인에 해당하는 35세~64세 집단의 자산보유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들보다 연령대가 높은 원로예술인 집단의 경우 자산보유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금융자산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택가격과 총자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금융자산의 경우 매우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표 3-45〉 연령별 자산 현황

〈사례수〉	총자산		금융자산		주택가격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전체(280)	40,222	10,000	14,410	-	20,910	6,000
18세-34세(70)	27,463	5,200	2,038	100	25,195	5,500
35-64세(140)	49,119	10,120	25,636	-	17,638	7,000
65세이상(70)	34,208	7,000	3,588	-	23,519	4,750

- 한편, 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약 5,0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의 경우 원로예술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예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예술인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 중위값으로 살펴보면 남성 예술인 부채의 중위값이 2,000만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가구당 평균부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원로예술인의 경우 부채의 중위값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원로예술인이 속한 가구의 부채 여부 및 규모의 분포가 다른 집단에 비해 그 변화가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음.
- 부채에 대해 월평균 이자금액을 살펴보면, 조사된 예술인 가구당 약 20만원의 이자를 매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남성예술인 가구의 부채이자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원로예술인 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6〉 예술인 유형별 부채 및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원로예술인 (65세 이상)	청년예술인 (18세-34세)	여성예술인 (35세-64세)	남성예술인 (35세-64세)	전체
가구총부채	6,040 (-)	2,821 (-)	5,316 (1,000)	5,536 (2,000)	4,941 (500)
월평균부채이자	19	14	24	25	20

7. 여성예술인

가. 여성예술인의 걱정요인⁴³⁾

- 여성예술인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예술인이 인식하고 있는 걱정거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예술활동 어려움(42.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20.0%), 노후생활문제(10.0%)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전체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전체 응답자의 경우 예술활동 어려움(42.1%), 일자리(16.8%), 노후생활(16.4%)) 일자리문제를 걱정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예술인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43) 본 절에서 여성예술인은 연령기준으로 청년(18세~34세)에 해당하는 여성이거나 35세~64세인 여성예술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표 3-47〉 여성예술인의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명, %)

일반적 특성		빈도수	비율
전체	계	100	100.0
걱정거리	예술활동 어려움	42	42.0
	일자리	20	20.0
	노후생활	10	10.0
	주거비	6	6.0
	부채상환	6	6.0
	건강	5	5.0
	자녀보육(양육)	4	4.0
	자녀교육	4	4.0

나. 여성예술인 노동시장 특성

□ 여성예술인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업 예술인은 53.0%로 여성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으며, 예술활동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비율은 43.0%,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0%로 나타남.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여성 예술인의 52.7%가 전업예술인 이었으며, 겸업예술인은 47.3%이었음. 여성예술인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

-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예술인(53%)의 고용형태를 보면 임시직이 35.4%, 자영업자 27.1%, 일용직 18.8%, 상용직 9.4%, 실업자 7.3%, 정부지원일자리·고용주가 각각 1.0%로 나타남.⁴⁴⁾

- 여성예술인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5.2%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이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예술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예술인(43.0%)의 고용형태를 보면 임시직 51.2%, 일용직 20.9%, 상용직 14.0%, 자영업자 9.3%, 고용주 4.7%의 순으로 겸업 역시 비정규직 비율이 72.1%로 높게 나타남.⁴⁵⁾

-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겸업을 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이 각각 46.5%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가 겸업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⁴⁶⁾

44) 2015년 예술인조사에서도 여성예술인중 전업예술인의 5.1%만이 정규직, 3.4%만이 고용주이었으며 대부분의 여성예술인은 불안정 고용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45) 2015년 예술인조사에서도 여성예술인중 겸업예술인의 17.0%는 정규직, 10.1%는 고용주로 전업예술인에 비해 고용상태는 다소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 겸업을 하고 있는 여성예술인이 불안정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 양상임.

46) 2015년 예술인조사를 보면 예술활동이외 다른 직업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로 예술인 전체는 낮은 소득(51.6%), 소득 불

- 즉, 겸업을 하고 있는 여성예술인 43%가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예술 활동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예술인(4.0%)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양육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취업준비와 가사가 각각 25.0%로 나타났음.

〈표 3-48〉 여성예술인의 노동시장 특성

(단위: 명, %)

노동시장 특성		빈도수	비율
전체	계	100	100.0
전업예술인 여부	예술인 전업	53	53.0
	겸업	43	43.0
	비경제활동	4	4.0
예술활동 직업 고용형태	상용직	9	9.4
	임시직	34	35.4
	일용직	18	18.8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1	1.0
	고용주	1	1.0
	자영업자	26	27.1
	실업자	7	7.3
겸업의 고용형태	상용직	6	14.0
	임시직	22	51.2
	일용직	9	20.9
	고용주	2	4.7
	자영업자	4	9.3
겸업하게 된 주된 이유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20	46.5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20	46.5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불안정	1	2.3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1	2.3
	현재 예술활동을 위한 회사창업	1	2.3
비경제활동 사유	취업준비	1	25.0
	가사	1	25.0
	양육	2	50.0

□ 여성예술인의 근무시간

- 2015년 예술활동에 투입한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1일평균 4~8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은 32.2%, 8시간 초과하는 비율도 29.3%로 단시간 근로 비율과 장시간 근로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예술인들은 평균 5.21시간을 예술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규칙(31.4%)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여성예술인도 낮은소득(52.9%), 소득불규칙(30.3%)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본 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비예술활동에 투입한 1일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4시간 미만이 1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8시간 미만이 13.5%,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9.5%로 나타나 비예술활동에 비해 예술활동에 투입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예술인들은 비예술활동에 평균 1.7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9〉 여성예술인의 1일평균 근무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없음	4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8시간 초과	평균(SD)	합계
예술활동	5.2	32.2	33.3	29.3	5.21(4.02)	100.0
구분	없음	4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8시간 초과	평균(SD)	합계
비예술활동	59.4	17.6	13.5	9.5	1.78(2.89)	100.0

- 2015년 예술활동에 투입한 평균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13.5%, 40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9.4%, 41~50시간 근무하는 비율은 6.3%로 나타남.
- 여성예술인들은 예술활동에 주당 평균 26.03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예술활동에 투입한 평균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31.3%이었으며,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20시간 미만근무가 17.7%, 30~39시간 근무가 6.3%, 20~29시간이 7.3%로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여성예술인들은 주당 평균 8.9시간을 비예술활동에 투입하였음.
- 예술활동분야별 여성예술인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편, 고용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용직의 비율은 낮은 수준임.
- 고용형태별로 보면 문학, 미술, 연극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고 무용, 국악, 연극, 영화에서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예술인의 고용형태에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자유로움에 기반 한 예술 활동의 본성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안정된 고용형태에 비해 낮은 근로소득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음.

〈표 3-50〉 여성예술인의 주당 근무시간 분포

(단위: %, 시간)

구분	없음	40시간미만	40시간	41~50시간	50시간 이상	평균(SD)	전체
예술활동	5.2	65.6	9.4	6.3	13.5	26.03(20.11)	100.0
활동분야	없음	20시간미만	20~29시간	30~39시간	40시간 이상	평균(SD)	전체
비예술활동	59.4	17.7	7.3	6.3	9.4	8.90(14.46)	100.0

〈표 3-51〉 여성예술인의 주요 예술활동분야별 고용형태

(단위: 명, %)

활동분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정부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전체
문학	1(14.3)	1(14.3)	0(0.0)	0(0.0)	0(0.0)	4(57.1)	1(14.3)	7(100.0)
	11.1	2.9	0.0	0.0	0.0	15.4	14.3	7.3
미술	1(3.3)	7(23.3)	6(20.0)	0(0.0)	0(0.0)	11(36.7)	5(16.7)	30(100.0)
	11.1	20.6	33.3	0.0	0.0	42.3	71.4	31.3
공예	1(33.3)	1(33.3)	0(0.0)	0(0.0)	0(0.0)	1(33.3)	0(0.0)	3(100.0)
	11.1	2.9	0.0	0.0	0.0	3.8	0.0	3.1
음악	0(0.0)	1(25.0)	1(25.0)	0(0.0)	0(0.0)	2(50.0)	0(0.0)	4(100.0)
	0.0	2.9	5.6	0.0	0.0	7.7	0.0	4.2
대중음악	0(0.0)	1(33.3)	0(0.0)	0(0.0)	0(0.0)	1(33.3)	1(33.3)	3(100.0)
	0.0	2.9	0.0	0.0	0.0	3.8	14.3	3.1
국악	1(20.0)	1(20.0)	3(60.0)	0(0.0)	0(0.0)	0(0.0)	0(0.0)	5(100.0)
	11.1	2.9	16.7	0.0	0.0	0.0	0.0	5.2
무용	2(25.0)	4(50.0)	1(12.5)	1(12.5)	0(0.0)	0(0.0)	0(0.0)	8(100.0)
	22.2	11.8	5.6	100.0	0.0	0.0	0.0	8.3
연극	1(5.0)	10(50.0)	4(20.0)	0(0.0)	0(0.0)	5(25.0)	0(0.0)	20(100.0)
	11.1	29.4	22.2	0.0	0.0	19.2	0.0	20.8
영화	1(11.1)	5(55.6)	2(22.2)	0(0.0)	0(0.0)	1(11.1)	0(0.0)	9(100.0)
	11.1	14.7	11.1	0.0	0.0	3.8	0.0	9.4
방송	0(0.0)	2(1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0.0	5.9	0.0	0.0	0.0	0.0	0.0	2.1
서예	0(0.0)	0(0.0)	1(50.0)	0(0.0)	0(0.0)	1(50.0)	0(0.0)	2(100.0)
	0.0	0.0	5.6	0.0	0.0	3.8	0.0	2.1
의상(무대)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
뮤지컬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1	0.0	0.0	0.0	0.0	0.0	0.0	1.0
제품디자이너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0.0	2.9	0.0	0.0	0.0	0.0	0.0	1.0
전체	9(9.4)	34(35.4)	18(18.8)	1(1.0)	1(1.0)	26(27.1)	7(7.3)	96(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63.154***, df=78							

다. 미취학 자녀양육

□ 본 실태조사 대상자 280명 중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35명(12.5%)으로 나타남.⁴⁷⁾

○ 평균 미취학 자녀수는 1.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취학 자녀가 1명인 예술인은 82.8%인 것으로 조사됨.

47) 해당 사례 수가 35명에 불과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분석결과의 대표성 및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들 중 남성 22명 여성 13명으로 남성 응답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청년예술인 5명(여성예술인 1명 포함), 남성예술인 18명, 여성예술인 12명으로 조사됨.
- 연령을 살펴보면 35명 중 30명이 3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3-52〉 미취학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비율
전체	계	35	100.0
미취학 자녀 수	1명	29	82.8
	2명	5	14.2
	3명	1	2.8
성별	남	22	62.9
	여	13	37.1
예술인 구분	청년예술인	5	14.3
	남성예술인	18	51.4
	여성예술인	12	34.3
연령별	18세-34세	5	14.3
	35-64세	30	85.7
혼인상태별	유배우	34	97.1
	별거·사별·이혼	1	2.9
(등록)장애 유무	비장애	35	100.0
	장애	0	0.0
만성질환 유무	없음	31	88.6
	있음	4	11.4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업예술인은 19명(54.3%), 겸업 예술인은 13명(37.1%)이며 현재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예술인은 3명인 것으로 조사됨.
-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인 경우는 3명(8.6%)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임시·일용직(18명, 51.4%)인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는 9명(25.7%)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전체의 고용형태와 비교해 볼 때, 임시·일용직 비율이 다소 높아,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음.
- 이들의 주요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음악/대중음악/국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10명(28.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밖에 미술/공예, 연극, 영화, 문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전체의 활동분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의 경우 미술/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비율이 27.9%로 가장 높고, 연극과 영화에 종사하는 예술인도 각각 18.2%, 13.9%이며, 음악/대중음악/국악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14.6%로 조사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악/대중음악/국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표 3-53〉 미취학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비율
전체	계	35	100
주요활동분야	문학	4	11.4
	미술/공예	7	20.0
	사진/건축	-	-
	음악/대중음악/국악	10	28.6
	무용	1	2.9
	연극	7	20.0
	영화	5	14.3
	방송	-	-
	만화	-	-
	기타	1	2.9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9	54.3
	겸업	13	37.1
	비경제활동	3	8.6
예술인 고용형태	상용직	3	8.6
	임시·일용직	18	51.4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2	5.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	25.7
	실업자	-	-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7명(48.5%)으로 나타났으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9명(25.7%)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예술활동 수입의 경우, 월평균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명(82.8%)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의 수입을 합하더라도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경우가 68.5%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가 11명(31.4%), 전세인 경우 14명(40.0%), 월세인 경우가 8명(22.9%)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자가비율이 낮고 전세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에 비해서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음.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 중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9명)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45.7%(128명)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음.

〈표 3-54〉 미취학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비율
전체	계	35	100.0
월평균 가구수입	50-99만원	(2)	5.7
	100-199만원	(7)	20.0
	200-299만원	(9)	25.7
	300-399만원	(7)	20.0
	400-499만원	(2)	5.7
	500만원 이상	(8)	22.9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	49만원 이하	(13)	37.1
	50-99만원	(10)	28.6
	100-199만원	(6)	17.1
	200-299만원	(5)	14.3
	300-399만원	(1)	2.9
월평균 비예술활동 수입	49만원 이하	(25)	71.4
	50-99만원	(4)	11.4
	100-199만원	(1)	2.9
	200-299만원	(3)	8.6
	500만원 이상	(2)	5.7
월평균 수입 (예술+비예술)	49만원 이하	(7)	20.0
	50-99만원	(9)	25.7
	100-199만원	(8)	22.9
	200-299만원	(6)	17.1
	300-399만원	(2)	5.7
	500만원 이상	(3)	8.6
주거유형	자가	11	31.4
	전세	14	40.0
	보증부월세/월세	8	22.9
	무상(관사, 사택)/기타	2	5.7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9	25.7
	중하층	18	51.4
	중간층	8	22.9
	중상층	-	-

□ 미취학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82.9%가 ‘보육시설 및 대리 보육자 찾기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이밖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사례는 11.4%로 조사됨.

○ 다만, 성별에 따라 살펴볼 때, 남성예술인들은 ‘정신적, 심리적 부담’의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한 사례가 없으나, 여성 예술인의 경우 ‘정신적,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15.4%에 달함.

- 이는, 여성예술인들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구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커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훨씬 더 느낄 가능성 있음.⁴⁸⁾

48)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분석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의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3-55〉 미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비율		
			경제적 부담	정신적, 심리적 부담	보육시설 및 대리 보육자 찾기 어려움
〈전 체〉		(35)	11.4	5.7	82.9
성별	남	(22)	13.6	0.0	86.4
	여	(13)	7.7	15.4	76.9
연령	18세-34세	(5)	20.0	0.0	80.0
	35-64세	(30)	10.0	6.7	83.3
예술인 구분	청년예술인	(5)	20.0	0.0	80.0
	남성예술인	(18)	11.1	0.0	88.9
	여성예술인	(12)	8.3	16.7	75.0

□ 예술활동 특성별로 미취학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연극, 영화 분야 예술인의 경우 100%가 ‘보육시설 및 대리 보육자 찾기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함.

○ 이밖에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보육시설 및 대리보육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56〉 미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예술활동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비율		
			경제적 부담	정신적, 심리적 부담	보육시설 및 대리 보육자 찾기 어려움
〈전 체〉		(35)	11.4	5.7	82.9
전체	계	(35)		100	
주요활동분야	문학	(4)	25.0	0.0	75.0
	미술/공예	(7)	0.0	14.3	85.7
	사진/건축	(-)	-	-	-
	음악/대중음악/국악	(10)	10.0	10.0	80.0
	무용	(1)	10.0	10.0	80.0
	연극	(7)	0.0	0.0	100.0
	영화	(5)	0.0	0.0	100.0
	방송	(-)	-	-	-
	만화	(-)	-	-	-
	기타	(1)	100.0	0.0	0.0
전업구분	전업예술인	(19)	10.5	5.3	84.2
	겸업	(13)	15.4	0.0	84.6
	비경제활동	(3)	0.0	33.3	66.7
예술인 고용형태	상용직	(3)	33.3	0.0	66.7
	임시·일용직	(18)	11.1	0.0	88.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2)	50.0	0.0	5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	0.0	11.1	88.9
	실업자	(-)	-	-	-

□ 미취학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 ‘보육시설 및 대리 보육자 찾기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예술 활동의 특성 상 일반적인 어린이집 등의 운영시간과 실질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시간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예술인들을 위한 특화된 보육지원정책이 필요함.

〈표 3-57〉 미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소득수준별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비율			
		경제적 부담	정신적, 심리적 부담	보육시설 및 대리보육자 찾기 어려움	
〈전 체〉	(35)	11.4	5.7	82.9	
월평균 가구수입	50-99만원	(2)	0.0	50.0	50.0
	100-199만원	(7)	0.0	0.0	100.0
	200-299만원	(9)	33.3	11.1	55.6
	300-399만원	(7)	0.0	0.0	100.0
	400-499만원	(2)	0.0	0.0	100.0
	500만원 이상	(8)	12.5	0.0	87.5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	49만원 이하	(13)	7.7	7.7	84.6
	50-99만원	(10)	0.0	10.0	90.0
	100-199만원	(6)	33.3	0.0	66.7
	200-299만원	(5)	0.0	0.0	100.0
	300-399만원	(1)	100.0	0.0	0.0
월평균 비예술활동 수입	49만원 이하	(25)	8.0	8.0	84.0
	50-99만원	(4)	25.0	0.0	75.0
	100-199만원	(1)	0.0	0.0	100.0
	200-299만원	(3)	33.3	0.0	66.7
	500만원 이상	(2)	0.0	0.0	100.0
월평균 수입 (예술+비예술)	49만원 이하	(7)	0.0	14.3	85.7
	50-99만원	(9)	0.0	11.1	88.9
	100-199만원	(8)	12.5	0.0	87.5
	200-299만원	(6)	33.3	0.0	66.7
	300-399만원	(2)	50.0	0.0	50.0
	500만원 이상	(3)	0.0	0.0	100.0

□ 미취학 자녀양육행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34.3%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는 45.7%로 조사됨.

○ 여성예술인의 경우 남성예술인보다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청년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낮아서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청년예술인의 미취학 자녀는 5명으로 이들 중 출생연도가 각각 2015년(2명), 2014년(1명)인 경우에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조사됨.

〈표 3-58〉 미취학자녀의 양육행태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냈다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았다	아이의 조부모가 주로 돌보았다	기타 친인척 또는 이웃이 주로 돌보았다	개인탁아모나 가정부가 돌보았다
〈전 체〉		(35)	34.3	45.7	14.3	2.9	2.9
성별	남	(22)	40.9	40.9	13.6	0.0	4.5
	여	(13)	23.1	53.8	15.4	7.7	0.0
연령	18세-34세	(5)	40.0	60.0	0.0	0.0	0.0
	35-64세	(30)	33.3	43.3	16.7	3.3	3.3
예술인 구분	청년예술인	(5)	40.0	60.0	0.0	0.0	0.0
	남성예술인	(18)	38.9	38.9	16.7	0.0	5.6
	여성예술인	(12)	25.0	50.0	16.7	8.3	0.0

- 미취학 자녀의 보육문제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74.3%로, 대부분의 경우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성예술인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4%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거의 모든 여성예술인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남성예술인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여성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보육지원 정책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술인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표 3-59〉 미취학자녀의 양육에 따른 취업(직장생활)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매우 많았다	지장이 있는 편이었다	별로 지장 없었다	전혀 지장 없었다	취업의사가 없었다
〈전 체〉		(35)	28.6	45.7	17.1	5.7	2.9
성별	남	(22)	18.2	45.5	27.3	9.1	0.0
	여	(13)	46.2	46.2	0.0	0.0	7.7
연령	18세-34세	(5)	20.0	40.0	40.0	0.0	0.0
	35-64세	(30)	30.0	46.7	13.3	6.7	3.3
예술인 구분	청년예술인	(5)	20.0	40.0	40.0	0.0	0.0
	남성예술인	(18)	22.2	44.4	22.2	11.1	0.0
	여성예술인	(12)	41.7	50.0	0.0	0.0	8.3

-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육비 지원 확대’가 51.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보육시설 또는 직장보육시설 확대’가 22.9%로 높게 조사됨.
- 현재 정부가 100%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보육서비스 이용자들의 추가비용 부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및 유아 교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및 체험활동비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함.

〈표 3-60〉 미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육시설 또는 직장보육시설 확대	보육비 지원 확대	보육시간 이용 시간대의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전 체〉		(35)	22.9	51.4	11.4	11.4	2.9
성별	남	(22)	22.7	54.5	9.1	9.1	4.5
	여	(13)	23.1	46.2	15.4	15.4	0.0
연령	18세-34세	(5)	0.0	60.0	0.0	20.0	20.0
	35-64세	(30)	26.7	50.0	13.3	10.0	0.0
예술인 구분	청년예술인	(5)	0.0	60.0	0.0	20.0	20.0
	남성예술인	(18)	27.8	50.0	11.1	11.1	0.0
	여성예술인	(12)	25.0	50.0	16.7	8.3	0.0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르고 있는 비율이 65.7%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성예술인은 84.6%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함.
- 상세히 알고 있는 예술인은 연극에 종사하는 남성예술인에 국한되어 있음.
 - 연극분야 예술인의 경우 ‘전혀 모른다’ 응답 비율이 28.6%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프로그램’이 연극인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공연예술인에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이용자격에 대한 확대 등이 요구됨.

〈표 3-61〉 공연예술인 시간제보육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전혀 모름	들어본 적은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전 체〉		(35)	65.7	31.4	2.9
성별	남	(22)	54.5	40.9	4.5
	여	(13)	84.6	15.4	0.0
연령	18세-34세	(5)	40.0	60.0	0.0
	35-64세	(30)	70.0	26.7	3.3
응답자 구분	청년예술인	(5)	40.0	60.0	0.0
	남성예술인	(18)	55.6	38.9	5.6
	여성예술인	(12)	91.7	8.3	0.0
주요 활동분야	문학	(4)	75.0	25.0	0.0
	미술/공예	(7)	100.0	0.0	0.0
	음악/대중음악/국악	(10)	80.0	20.0	0.0
	무용	(1)	0.0	100.0	0.0
	연극	(7)	28.6	57.1	14.3
	영화	(5)	60.0	40.0	0.0
기타	(1)	0.0	100.0	0.0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예술인의 경우, 보육 및 양육관련 의논 대상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모 및 친인척, 배우자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예술인의 경우 의논대상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육 및 양육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가족 및 주변인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자 280명 중 자녀 보육 및 양육관련하여 의논하는 대상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5%로 나타남.

〈표 3-62〉 미취학 자녀의 보육양육 관련 의논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부모 및 친인척	친구	없음	배우자
〈전 체〉		(35)	31.4	2.9	14.3	40.0
성별	남	(22)	27.3	4.5	18.2	31.8
	여	(13)	38.5	-	7.7	53.8
응답자 구분	청년예술인	(5)	40.0	0.0	0.0	60.0
	남성예술인	(18)	44.4	5.6	22.2	27.8
	여성예술인	(12)	41.7	-	8.3	50.0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9)	33.3	-	-	66.7
	중하층	(18)	55.6	5.6	11.1	27.8
	중간층	(8)	25.0	-	37.5	37.5

제 4 장

예술인 복지지원 방안

제1절 원로예술인

제2절 여성예술인

제3절 기타 복지지원

제4절 전달체계

4

예술인 복지지원 방안 <<

제1절 원로예술인

1. 예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본 조사 결과, 예술인의 약 94.64%(의료급여 5.36%)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술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예술인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비하여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의 비중은 더 높은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29.25%, 지역가입자 13.46%수준이나 조사 대상 예술인 각각 14.64%, 41.43%로 지역가입자가 월등히 많음. 이는 안정적 소득이 있는 임금근로자가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함.
- 조사 대상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비율이 약 14.3%로 높게 나타남.
 - '15년도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은 모두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의료이용에서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해 미충족 의료서비스 증가와 질병 이완 시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의 체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의해 보험급여의 제한으로 의료이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 가구는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일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상,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의 요소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예술인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높아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불형평성 발생 가능성 있음.

- 예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 예술인의 81.4%가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농어민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에 의거하여 월 보험료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호에 의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동법 규칙 제3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고시제2011-78호(2011.7.1.)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에 의거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경감함.
- 예술인의 경우에는 현재 농어업인 사례와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⁴⁹⁾, 건강보험공단의 경감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보험료를 사후 경감하는 방식으로 50%를 모두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 전체 평균 보험료의 50%이하에 속하는 지역세대주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12년 기준 소요예산은 약 158~178백만원⁵⁰⁾수준)
 - 지역가입자의 직종 간 조합을 직장으로 편입하여 보험료의 50%를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방안
- 초기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시 재원에 대한 부담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초기 원로예술인 중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예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후, 점진적으로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에게로 지원범위 확대
 - 장기적으로 재원마련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완화되는 조치를 취하면서 청장년 예술인에게로 건강보험료 지원범위를 확대

49)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3장(사회보장) 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로 산재보험 지원만을 담고 있음.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동 법에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설되어야 함. 사례로 “농어민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국민연금법” 100조의 3(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의 예가 있음

50) 신현웅(2014),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예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원로예술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할 때 원로예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약 67.1%가 3개월 이상 투약 또는 투병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원로예술인의 약 35.7%는 2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이 입원, 외래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1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러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원로예술인의 45.7%는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실제 원로예술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중 식비(40%), 주거비(20%)를 제외하면 보건 의료비(18.6%)를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인식하고 있었음.
-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약 6.78%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비율도 1.0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로예술인 중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약 22.9%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87.5%가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을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이용으로 인한 과부담은 주로 저소득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 가입형태별 소득수준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⁵¹⁾, 직장가입자 중 26.5%는 월평균 수입이 401만원 이상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34%, 피부양자의 41.2%는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의 의료보장 자격별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17.14%로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이 민간자원 활용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임.
 -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한 의료접근성에 있어서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는 노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51) 신현웅(2014),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고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고령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남.
- 원로예술인에 대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의료비도 1인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의료비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 이외에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이 소득 대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나 '16년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임.
- 소득 대비 발생 의료비 기준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고액, 중증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술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제2절 여성예술인

1. 여성예술인의 노동시장 특성

- 겸업의 증가, 고용의 유연화
 - 여성예술인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면, 예술활동과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복수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예술인들은 예술활동에서의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유급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예술분야와 비예술분야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여성예술인으로 하여금 안정된 환경에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이들은 임시고용계약 중심의 채용관행, 저임금 등으로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으며 예술활동과 경제적 상황 사이에서 가치상충을 경험함.

- 여성예술인의 문제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기인한 소득 빈곤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순수한 예술활동을 추구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은 다수의 여성예술인들로 하여금 중복직업을 갖도록 만들며, 이는 본업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짐.

2. 여성예술인의 고용복지 지원 방안

□ 안정된 예술활동을 위한 소득보장

- 여성예술인의 다수는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낮아 예술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을 병행하는 겸업의 비중이 절반에 달함.
 -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갖는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력, 예술성이 요구되나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의 손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예술인에 대한 소득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예술인들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복지정책으로는 실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즉,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여성예술인들은 고용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결혼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 그리고 성별차이에서 오는 낮은 임금으로 인한 불리함을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음.
 - 따라서 여성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하면서도 동시에 일과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이후 살펴볼 해외 사례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줌.

□ 프랑스의 비정규직 공연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 보험제도 ‘앵페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

- 앵페르미땅은 예술인의 특수성과 다양한 형태의 직업능력을 분석하여 사회보험제도에 반영시킨 프랑스의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제도임(김휘정, 2011; 박조원 외, 2013).
 - 구체적으로 공연·영상예술 분야에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예술가를 위한 실업보험 제도로써, 공연영상예술 분야 단속적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함.
 - 영화, 방송, 음악, 공연 등에서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단속적 기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술자, 배우, 연주자 등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최소 507시간을 일하면 이후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대 8개월 동안 하루에 최저 25.90유로(한화 약 3만 9000원)을 지

급하도록 명시한 제도임.

- 이들 외에 자유계약직 프리랜서,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가도 포함되며,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예술가들은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일반 사회보험제도에 편입
-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앙페르 미땅을 한국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부분이 고용 형태 및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 앙페르미땅은 비연속적인 노동의 특성을 지닌 비정규직 문화예술인들에게 작품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실업상태라 하더라도 예술이나 창작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 인정하여 불안정한 고용형태라는 문화예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술인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됨.

□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

- 독일의 경우 예술인사회보험법에 따라 예술가 및 저술가가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며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호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됨(강익희, 2011; 김휘정, 2011).
 - 구체적인 가입기준은 자영업태의 예술 또는 출판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거나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거나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거나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인 고용주 등이 사회보험 적용대상임.
 - 이 외에 직업활동을 개시한 초기 3년 이내, 6년간 2회까지는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회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리스터 연금 : 저소득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 자영업예술가와 출판 언론인도 이를 통해 추가 노후소득부장이 가능함. 기본수당과 자녀수당이 있으며, 소득수준과 별개로 지불됨.

□ 네덜란드의 예술인 사회복지정책

- 자영 기업가와 관련된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일반적 법률이 예술가에게도 적용되며, 네덜란드의 실업보험법은 프리랜서 예술가에 대해 매우 관대함(이규석 외, 2007; 박조원 외, 2013).
 - 네덜란드의 경우 예술인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고용과 수입제공 관련 법

안으로 예술가에게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지원기간은 10년 이내 최대 48개월 수령할 수 있으며, 보장된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함.

- 또한 겸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보장된 최저임금의 125%까지 소득을 벌 수 있고 구직 의무를 갖지 않아도 예술과 문화 기업 훈련과 자문서비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
- 최저생활보장제도(WIK)는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신진예술가와 일시적으로 수입의 감소를 겪는 기존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가가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등예술교육을 수료했거나 전문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먼저 여성예술인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다수가 겸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예술인의 빈곤문제, 생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점에서 네덜란드 사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제도로 보여짐.

○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지원을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비예술활동으로 이탈하지 않고 예술인으로서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예술인 경력을 단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일자리 지원과 생계지원을 연동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음⁵²⁾. 동 사업중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은 대상자는 “만 18세~64세 이하의 생계급여,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임

-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FTA 피해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개인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참여를 허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진로·심층 상담 등을 거쳐 훈련, 인턴, 창업 등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는 취업알선에 이르도록 돕고 있음. 동 과정속에서 훈련과 더불어 참여수당(1일 2만원, 최대 20~25만원), 취업성공수당(1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을 지급
- 여성예술인의 경우 빈곤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는 예술인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 모색. 즉 동 사업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5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2016년 기준으로 첫 번째는 패키지 I 유형(저소득층), 패키지 II 유형(중자녀)이며 II유형에 추가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가 있음(고용노동부, 2016).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예술인 중 겸업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방안의 하나로 검토

- 두 번째 단계로 여성예술인 또한 전업 및 겸업예술활동을 하는 도중 경력단절을 경험. 경력단절의 경우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분리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음.
-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설계시 여성예술인이 경험하게 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보육서비스 이용자격을 위한 예술 활동에 대한 증빙 지원체계 구축

- 2016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수요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 현재 보육서비스는 하루 12시간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장시간의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과 그렇지 않은 수요층을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서비스 이용유형을 종일반(07:30~19:30)과 맞춤반(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으로 구분하여 제공함.⁵³⁾
 - 현재의 보육서비스는 전계층 무상보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의 확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이보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이에 따라 본인의 종일반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활동에 대한 인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현재의 예술인등록제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예술인 등록을 위한 일정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음.
 - 다만, 현재 예술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중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은 약 2만 5천여명에 불과한 상황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술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굳이 예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예술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기존의 예술인 등록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현역 예술인이 등록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술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예술인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예술활동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술인 근로활동 증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5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2015.12.30.

- 본 연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미취학자녀를 둔 예술인의 80% 이상이 보육시설 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모 혹은 조부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 예술인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에 미취학자녀를 둔 예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특히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종일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여하에 따라 종일반 혹은 맞춤형의 형태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음.
-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자격기준 논의시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자격기준이 형태가 저소득, 한부모, 장애, 질병 및 간병 자격, 구직자격,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준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예술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고 필요
 - 특히 여성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자영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함에 따라 보육서비스 기준 적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여성예술인이 맞벌이 가구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구
- 어린이집 0~2세반을 종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근로자(부모,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등은 근무조건에 대한 확인을 통해 종일반 이용이 가능(보건복지부, 맞춤형보육 홈페이지)
- 임금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정보,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확인 가능 서류, 프리랜서·일용·무급가족 종사자는 자기기술서를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 부모가 학업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을 통해 이용가능
 - 특히 자기기술서의 경우 이장·통장 확인, 유무선 등을 통한 확인 방법을 통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예술인이면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임을 확인해 주거나, 여성예술인이 작성한 자기기술서를 거주지 이장·통장이 확인해 주는 것과 같이 복지재단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부처 간 협의(예술인복지재단을 종일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

4. 예술인에 특화된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서비스의 홍보 강화

- 예술활동의 특성상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유형과 큰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예술 활동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현재 한국연극인 복지재단에서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반디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b).
 - 해당 센터는 하루정원 20명 규모로 12개월~10세 이하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후 1시~11시까지 시간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 등에는 운영시간을 오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연인원 2,403명이 반디돌봄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전체 예술인의 62.5%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실태조사에서도 여성 예술인의 84.6%가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 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예 경우 자녀의 보육 및 양육등의 문제로 직장(취업)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는 예술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예술인의 근로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운영중인 '반디돌봄센터'와 같은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현재 '반디돌봄센터' 1호점이 혜화동에 운영중이며, 향후 2호점 운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형태의 돌봄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됨.
 - 다만, 현재 돌봄센터의 경우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기존의 어린이집의 운영기준(교사대 영유아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돌봄교사의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단점 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기존의 운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교사의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제도적 체계 구축

- 여성예술인은 여성농어업인, 여성과학기술인과 비교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흡함.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근거 조항은 없으며, 여성예술인의 권익신장과 육성을 위한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비영리법인 ‘한국여성문화예술인 총연합’이 있으나 서울지역에 1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비교사례로 여성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으로 중앙 및 지자체별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함.
 -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2014년 68개에서 2020년 100개 제정 목표
- 농촌여성들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에 41개소가 운영(2013.3. 기준)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의 대표는 농촌의 여성리더로 구성됨(안상수·박성정·문미경, 2013).
 - 농업·농촌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됨.
- 여성농업인센터 외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등이 있음.
- 한편, 여성과학기술인 역시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 및 지자체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4~2018)’에는 ‘우수한 여성인재의 유입 및 활용 촉진’, ‘글로벌경쟁력 제고’, ‘일자리 확충’, ‘과학기술 일자리의 생활친화성 강화’, ‘양성이 조화로운 과학기술환경 조성’ 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설립근거를 갖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업무는 아래와 같음.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 여성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법적조항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적근거 및 기반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여성예술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예술인에 비해 취약한 여성예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직접적으로 여성예술인만을 위한 법체계 구성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예술인 정책방향에서 여성예술인을 별도로 고려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법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

6. 여성예술인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 마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창업, R&D과제, 장학, 포상,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를 구성하여 경력단절 여성연구 경력교육, 일-가정양립 경력교육, 학회연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여성예술인은 일-가정 양립과 보육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임.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예술 경력 단절경험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 17.8%, 남성 14.2%) 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
 - 정부에서는 예술인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수령하는 경우는 19.0%(남성 19.9%, 여성 18.1%)에 불과.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3.0%(남성 40.4%, 여성 45.8%) 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필요 [☞] 뒤에 설명하는 파수꾼(혹은 지킴이)제도와 연계
- 여성예술인의 결혼·출산·보육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예술인들 간의 상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센터나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예술인들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제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의 방안을 통해 여성예술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예술인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제고할 수 있으며, 채용문제가 있다면,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여성예술인들만의 온라인공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예술인 상담 및 멘토링 등의 신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오프라인의 형태로는 베틀시장 혹은 예술인을 위한 (간이)박람회 등을 예술인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여성예술인 간, 신진 및 원로 예술인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여성이 지닌 장점인 포용성, 친밀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예술인복지재단 내 소규모 동아리 모임 지원을 통해 예술분야 혹은 전예술분야 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회 혹은 반기별로 베틀시장, (간이)박람회 혹은 예술가 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제3절 기타 복지지원

1. 예술인 복지 파수꾼(혹은 지킴이)

-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것과 같이 적잖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음. 예술인 특성상 생활상의 어려움을 국가 혹은 주변인에 호소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같은 예술 작업을 수행한다는 연대의식 속에 예술인 간의 상호소통 강화를 통한 예술인 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여성 예술인 중심 복지파수꾼(혹은 지킴이) 제도 운영
 - 다른 사람과의 소통, 사회활동 등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활동이 폭넓게 진행될 수 있으며, 여성예술인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 일부 협회(예, 미술협회 등)나 단체 등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노하우 등을 파악하고 예술인에 적합한 파수꾼(혹은 지킴이) 제도를 설계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과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혹은 반기별로 예술활동 상태, 생활상의 어려움 파악
- 방문 혹은 전화 등 유선 기기를 활용하여 소비, 생활, 가족 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함으로써 위기 발생에 사전 대응
 - 매년 발간되는 문체부 및 예술인복지재단 등의 해당년도 사업에 대한 안내 자료를 예술

인들에게 발송하여 복지 및 기타 예술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미확인 예술인에 대해 파수꾼(혹은 지킴이) 등이 직접 예술인을 방문하여 간접적으로 생활실태를 파악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혹은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예술인 중 일정기간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주변 예술인과의 소통 단절, 연락두절 등 원인불명의 조건 등이 발생하는 지를 파수꾼 혹은 협회 예술인을 통해 파악하고 문제 발생이전에 사전적 조치

- 최근 아동학대,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무관심속에서 생활하는 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필요성이 제안되고 있음
- 예술인 역시 많은 부문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술활동에 방해 혹은 저해 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주변 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통해 예술인 중심의 자체 안전망 구축
- 위기 발생이 인지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알리도록 유도

○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65세 이상 고령의 원로예술인과 혼자 사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적용

- 원로예술인의 경우 협회, 복지재단 등의 협조하에 파악이 가능하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차를 두고 명단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설계하도록 함.
- 점진적으로 청년, 중장년의 예술인 간 네트워크 구성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 지역별로 선정된 복지파수꾼을 통해 장년 혹은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혹은 결혼 기념일 등 축하메세지 발송

○ 추가적으로 예산과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지역단위 원로 예술인 생일상 차려주기(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사업 진행

-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 사회복지기관(복지관,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역 어르신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술인이 인지하기 쉽도록 예술인 복지사업은 물론 타부처 복지사업을 소개하는 안내책자, 팸플릿 혹은 달력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복지파수꾼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게 제공

- 농식품부의 경우 2016년 1월 복지사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령층을 위해 별도의 복지달력을 제작해 배포한 바가 있음.

2. 예술인 전문심리 상담가 양성

- 본 연구의 실태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많은 예술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분석결과 조사대상 예술인의 37.5%로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예술인의 10%대에 비해 세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높은 우울감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자살생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방기할 것이 아님.
-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관련 기관(21개 기관)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연간 12회)을 진행. 2015년 기준으로 271명의 개인과 136번의 집단심리 상담의 실적을 거둠(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b).
 - 현재의 지원방식은 첫째, 전년도에 치료를 받은 경우 차년도에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예산이 한정되어 예산이 소진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점, 세 번째로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이외에도 정신상담의 경우 간단히 치유될 수도 있지만 질병,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간 치료가 요할 수 있음에도 치료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들이 심리상담에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음.
- 예술인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예술인 복지법 통과와 복지재단 설립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의 대부분이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해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의해서임.
 - 예술인이 비예술인에 비해 예술활동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인해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찾아오도록 하거나, 치료에 제한을 두는 방식보다는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필요에 따라 장기간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는 지속적으로 복지재단을 통해 상담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년도 혹은 격년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원방법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현재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전문상담기관으로서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하지만 동 기관들의 경우 비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해왔다는 점에서 동 기관들이 예술인의 특성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유도
 - 예술인 전문상담사 배치를 위해 추가적 재원이 소요될 경우, 기관 특성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상담 및 교육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일정기간 예술인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교육과정(혹은 보수교육)을 가지도록 협약

3. 예술인-기업 매개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양성

- 창조경제, 산업의 문화화 등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기조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예술, 예술을 통한 혁신 등 예술에 대한 새로운 수요 및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예술인 역시 전통적 의미의 예술시장에서 벗어나 창작활동 영역과 형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면 예술인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기관·지역 등으로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매개체가 취약한 상황
 - 이와 같은 사회와 예술인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인의 취약한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와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을 수행 중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적 개입을 통한 사회의 혁신, 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 개발, 예술과 기업·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목적으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14년 이후 약 1,850여명의 예술인 참여하면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업,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평가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예술적 가치관과 자유로운 사고방식, 창의적 행동을 기반한 예술인이 문화와 정서가 이질적인 기업·기관·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점이 사업 초기 정착에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게 단순히 생산성 증대를 위해 예술적 기능을 도구화하려는 욕구가 있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기관·지역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장기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개발과 기업·기관·지역 내 문화예술 가치 확장을 위해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의 확대 혹은 확장이 필요함.
 - 다만 사회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기획, 촉매하고 예술인과 기업·기관·지역을 연계해줄 수 있는 인력 필요
 -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서는 기업·기관·지역의 니즈와 참여 예술인들의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술적 개입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은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이 있지만 운용 규모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와 같이 파견예술인의 예술적 및 개인적 특성을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직종, 기업·기관·지역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매개인력 양성이 요구됨.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15년도 예술경영아카데미 사업 중 ‘퍼실리테이터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나 문화예술 관련 단체 직원 대상의 교육이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되지는 못함.
-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으로서 기업·기관·지역사회 문화에 익숙하고 경영, 재무 등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컨설턴트 혹은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함으로써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 부합되는 기업·기관·지역 등을 발굴하도록 지원
 - 또한 발굴된 기업·기관·지역 등이 해당 직무에 부합하는 예술인을 연계, 매개하고 관리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예술적 개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원

4. 예술인 대상 사회 교육 : 경제, 재무 및 사회복지 관련

- 지난 몇 년간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소비감소와 향후 발생할 경제적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
 - 예술인의 경우 예술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함. 또한 실태 분석에서 보듯이 위기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
 -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 재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연금,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로예술인은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습득의 어려움과 더불어 스미싱, 금융사기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위와 같이 예술분야 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여성, 원로 등을 포함하는 예술인에 대한 경제, 재무 및 사회복지 관련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사례로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 및 재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4) 사회복지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중 선정된 상록보육원 ‘미즈호와 함께 하는 경제놀이’ 사례참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
 - 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소비자경제교육 ‘한국형 포순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
 - 영국 런던 지역 협동조합 사례 : Civil Society Media Limited 은 런던의 복지시설로서 지역 금융기관의 협조하에 지역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 및 재무교육 진행(해당 지역 주변이 런던금융회사 밀집지역으로 금융종사자 자원봉사 유도)

- 참여자는 습득한 금융 및 회계업무는 창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해당 기관차원에서는 영국정부의 금융규제 등 정책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 문화예술계의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비슷한 사업으로서 ‘예술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은 창업, 단체설립 등을 준비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예술인의 접근이 쉽지 않음.
 - 창업을 하지 않거나,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 재무 컨설팅 사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진행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과 유사중복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성과 차별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금융기관 혹은 단체 및 협회 등과 연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제·재무 및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주기적(연 1회 혹은 분기별)으로 수행
- 금융기관(대규모 금융기관 등의 경우 산하에 관련 문화복지기관 등을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예술인복지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역시 참여 예술인은 지원기관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예술관련 교육, 사업 수행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직 간 연계사업 수행 및 비예술인의 예술인 인식변화에 대한 토대 제공

5. 예술인 대상 소액보험 사업(상해중심)

- 예술인, 가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소액상해보험(Micro Insurance)을 지원.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공사회보험으로써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임.
-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고용보험은 실업대비,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음. 하지만 예술인은 예술활동 과정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따라서 사전적으로 민간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해보험에 예술인이 저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해발생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미소금융중앙재단 혹은 우정사업본부의 상해보험 사업에의 가입유도
 - 두 사업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여 부처 및 기관 간 협업

- 타부처 사업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부처 간, 기관 간 연계가 중요. 우선 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소액상해보험 등에 대한 운영실태, 가입현황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이후 관련 사업을 저소득 예술인 혹은 해당 되는 예술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가입을 유도
- 국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우정사업본부의 만원의 행복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연간 사업비 65억원(2016년기준)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가장(긴급복지지원대상자)과 청소년자녀,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 재단이 연초에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 상품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 가장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 보험료는 연간 만원이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남자 연간 28천원, 여자 14천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이익금에서 충당(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가입대상은 저소득층 근로가장(기초보장제도의 차상위계층 이하)으로 만15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보장성보험(상해보험 중심)으로서 운영

6.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산형성 혹은 자산축적 사업

-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예술인의 자산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임. 평균 총자산은 2억 7천이었지만,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면 52백만원, 금융자산은 중위기준으로 100만원에 불과
- 위기 발생시 자산을 활용하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또한 학교 교육, 졸업 이후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산이 필요함에도 역부족한 상황임.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예술경력 단절 경험에 있어 30세 이하 청년예술인중 20.9%가 단절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전체 평균 15.9%에 비해 높은 수준
- 청년예술인의 안정적 생활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 사업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탈빈곤 정책으로서 자산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은 대부분 소득 혹은 소비와 관련되어 현금 혹은 현물을 직접 제공하고 저소득층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대표적 자산형성사업은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2010년부터 시작)이 있음.

- 동사업은 기초보장의 생계, 의료, 주거 및 의료 급여 수급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월 10만원 적립시 정부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지원하여 3년후 최대 2,113만원(희망키움 I 기준)까지 적립이 가능(보건복지부, 2016b)

□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이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실제로 본 연구 실태분석 결과에서도 청년 중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무⁵⁴⁾

○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을 통해 보면 많은 청년예술인이 창작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는 예술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는 점

○ 청년예술인이 학생시절부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졸업후 혹은 성인이 되어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예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예술계 학과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유망한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학생시절 발표한 예술작품 및 예술활동을 기준으로 정부, 예술인복지재단 및 기업이 청년예술인의 예술작품 및 활동에 대해 기부 혹은 자금을 지원하고 축적된 자산을 통해 졸업 이후 대학, 해외 유학 및 연수 등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필요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만 허용되고 축적된 자산은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54) 청년층을 위한 설문에서는 학비지원과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청년중 과거 학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예술인은 8.6%에 불과하였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본 청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절 전달체계

1. 예술인 복지사업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의 전달체계⁵⁵⁾

○ 예술활동증명

- (내용)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써,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예술활동 손질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임.
- (신청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
- (결과확인) 이메일 통보

○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내용)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하는 사업
-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정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술인 파견지원

- (내용)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인에게 새로운 서브잡(sub-job) 영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일자리 개발 및 매칭 지원, 직무교육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월 120만원 활동비 지원
-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술인 신문고

- (내용)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함.
- (신청방법: 불공정행위 상담) 온라인(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사전상담’ 메뉴), 이메일, 전화
- (신청방법: 불공정행위 신고 및 소송지원) 장르별 신고처 신고서 접수, 온라인(예술인경

55)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6b),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력정보시스템-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사전상담’ 메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예술인 상담·컨설팅 운영

- (내용)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고민 해결에 필요한 상담·컨설팅 제공
- (전달체계) 개인의 경우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한 1:1 상담·컨설팅, 단체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 예술인 심리상담

- (내용) 예술창작활동 과정 중 파생되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고충처리 및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함.
- (신청방법)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개인), 이메일(집단)
- (전달방법) 지정센터에서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개인), 맞춤형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집단)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내용)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중장기적 복지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함.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 (내용)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지원함.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예술인 산재보험지원

- (내용)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중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수수료 없이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임.
- (전달체계) 이메일 신청

나. 문제점

- 온라인 중심의 전달체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신청과 이의 전제조건인 예술활동 증명 신청 모두 온라인 신청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이 전국적인 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은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음. 신청서와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도 방법이 되기 어려움.
 -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은 조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 신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컴퓨터 조작성이 불가능한 원로예술인, PC나 인터넷 연결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소득 또는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⁵⁶⁾
 -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전달체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홍보가 불가능함.

□ 서비스 제공기관의 낮은 지리적 접근성

- 예술활동 관련 상담·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과 같은 서비스는 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대학로)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의 편의를 가질 수 있는 예술인은 (연극 등)일부 장르에 국한되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경우는 접근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예술 장르별 적합한 전달체계 상이

- 이것은 행정이나 관리의 문제라기보다 예술이라는 분야가 가지는 내생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데, 장르별로 예술활동의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장르별로 적합한 전달체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예술분야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 부족

- 복지분야는 그 폭이 넓고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단순히 예술인들의 소득 및 생활 지원 형태이외에도 일자리 제공, 건강 및 여가 등 문화 지원, 주거·교통·난방 등 복지사업, 복지지원 대상 발굴 등 많은 분야가 복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복지사업은 어느 한 사업을 통해 구상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업들의 연계

56)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지원금 사업에서도 많은 예술인들이 인터넷, IT 기기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줌. 관련 서류 신청 및 발급 등을 온라인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기관 등을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얻고 이를 재단에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함.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서도 예술분야 입문경로로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경우는 1.2%에 불과하고 주로 전시 연주회 등을 통해 입문(32.5%)하는 것으로 조사됨(문화체육관광부, 2015)

를 통해 예술인의 삶을 높일 수 있음.

- 사례로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은 노동시장 참여라는 형태 하나가 아닌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생활유지가 가능하며, 여성예술인이 일을 할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돌봄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원로예술인에게 적절한 일을 보장함으로써 건강과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많은 기관들이 맡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기관 간 중복 혹은 유사사업이라는 점으로 규제됨으로써 예술인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확장성 및 지속성에 있어 문제가 있음. 재정효율화 측면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효과성과 확장성이란 측면에서 완벽히 동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 문화예술분야 기관 간 네트워크 혹은 정부주최 주기적 모임 등을 통해 사업추진단계에서 유사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인의 삶의 질과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사중복의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개편방안

가. 유사사례 검토

□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인공제회

- 2003년 과학기술인 노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인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 그 밖에 휴양시설, 무료법률상담, 의료기관 지정할인, 복지카드 발급 등 복지사업 시행
-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대덕복지센터 별도 운영
 - 골프장 1개소, 스포츠센터 2개소, 종합운동장, 어린이집 2개소 등 운영
- 등록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무소 등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 과학기술인의 경우 대체로 높은 학력수준 등으로 온라인 접근에 장애가 없어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 신청과 환류가 가능함.
 - 또한 과학기술인이 종사하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소재지가 주요도시이며, 특히 대덕연구단지과 같은 연구단지에 밀집되어 있어 전국단위의 사무소 같은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농어업인

-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통해 농어촌 정책을 포함, 보건복지,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의 영역에서 농어민을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은 공공의료, 응급의료, 정신보건서비스 강화(이상 보건분야), 사회보장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이상 복지분야) 등임.
- 이 같은 보건복지 사업들은 기존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사회보험공단 전국지사 등을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음.
 - 농어업인들의 경우 전국으로 산재해 있고 대체로 온라인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예술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 사업들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예술인의 복지사업 역시 우선적으로 기존 공공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함.
- 이와 더불어 농어업인의 경우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지점 또는 단위협동조합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수협), 농어촌희망재단(한국마사회) 등의 민간단체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전달체계의 지역적 사각지대, 온라인 사각지대, 장르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세부 개편방안

- 지역의 접근성 문제는 복지재단의 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직접적인 접근방법과 지역별 기존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직접 지역사무소 개설에 드는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 업무만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업무를 추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지역 문화재단과의 업무연계

- 현재 17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13개 시도임. 경북, 전북,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문화재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내년에 문화재단을 보유할 예정이고, 전라북도과 세종특별자치시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멀지 않은 미래에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지역 문화재단을 보유함에 따라 예술인 복지의 전달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은 마련될 것으로 볼 수 있음. 광역단위 문화재단이 없는 경상북도의 경우는 경상북도내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예술인 복지사업보다 지역민의 문화향유, 문화복지 확대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어 복지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보다 문화예술분야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복지재단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각 지역문화재단의 정관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전제될 수도 있음.
- 지역 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부 및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 수행하도록 하며, 이외에 지방문화재단의 좋은 복지사업을 전국단위로 홍보하는 기능을 중앙에서 수행하는 등의 협업체계 구축

□ 장르별 협회·단체 네트워크 강화

- 장르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장르별 협회 사무국을 전달체계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장르별 협회나 단체를 통해 사업홍보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전달체계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임.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부사업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예술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공단 조직 활용

- 현재 예술인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예술인들

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단위의 부처간 협약 또는 예술인복지재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저소득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의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가입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2015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모집단을 약 131천여명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5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 하지만 지방에도 약 40% 가까운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관련 기관들의 지방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⁵⁷⁾
 - 16개 광역시 및 도중(세종시 제외) 가장 작은 제주도에도 1,564명의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의 문화예술인 지원기구의 필요성이 제기
- 하지만 정부 산하 모든 문화예술기관이 지방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음.
 - 1차적으로 지적하였듯이 지방문화재단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간접고용 하는 방식으로 중앙단위 예술기관들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과의 협의 및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
- 두 번째로 주요 지역 혹은 광역단위로 문화예술관련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동 기관에 기존 문화예술기관들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예술인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지역조직은 중앙정부 및 예술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되 재원은 각 기관들이 공동부담하는 형식을 취함.
- 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따라서 관련 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단위 복지조직 등이 구축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련 계획수립, 업무유사-중복, 다른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업무 협조 등)하기 위한 상위의 조직체계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 ‘공정위원회’의 설치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인을 복지사업을 전

57) 16개 광역시 및 도중(세종시 제외) 가장 작은 제주도에도 1,564명의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의 문화예술인 지원기구의 필요성이 있음

담할 수 있는 별도 과 혹은 팀의 설치가 필요

-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복지사업이 농어업인 중심에서 농어업종사자와 더불어 농어촌 거주 주민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촌 지역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위해 기존 농촌사회여성팀을 2009년 농촌사회과(현재 농촌복지여성과)로 확대

제 5 장

결론 및 함의

제1절 분석결과 및 함의

제2절 예술인 복지사업 실행을 위한 로드맵(안)

제1절 분석결과 및 함의

- 오랜 기간 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2000년대 들어 비로소 예술인 스스로 복지확대를 위한 노력과 요구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 2012년 예술인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어지게 됨.
 -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이후 다양한 복지사업이 개발됨으로써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지원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일부 예술인들이 동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게 됨.
 - 하지만 동 사업이 초창기로서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 개발과 지속을 위한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정부에서도 예술인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단위로 예술인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동 조사의 경우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예술인이 지니는 복지요구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여전히 예술인에 대한 복지요구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요구 및 실태파악과 그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시작됨.
 -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우선 수요파악과 지원방안 도출이 요구되는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연구진행과정중 통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 기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 등과 비교를 함께 포함하고 있지만, 연구자체가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통계결과에 대해 예술인 전체로의 확대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
 -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위한 복지요구와 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면, 여전히 원로 및 여성예술인 등이 고용상황, 예술분야 참여, 복지요구 등에서 비예술인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짐.
 - 우선적으로 주관적 소득계층 의식을 파악시 소득이 높다(상층)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다른 조사와 큰 차이를 보여줌. 주거 유형에서도 자가 보다는 전세·월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주거 상황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건강 측면에서도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67.1%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부담 의료비 지출비율도 6.78%(65세 이상), 재난적 의료비 지출 비율도 약 1.8%에 이르는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10.0%, 여성예술인의 17.1%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볼 수 있음.
 - 정신건강 측면에서 예술활동과 생활유지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스트레스(우울감 비율 37.5%, 비예술인의 세배 정도)가 다른 비예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용 측면에서도 전업 및 겸업 예술인 모두 안정적 일자리 보다는 임시·일용직 혹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형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율(50% 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겸업을 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을 지적(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와 동일 결과)
 - 이로 인해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역시 낮다는 점에서 원로 및 여성예술인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여성예술인의 경우 가장 많은 걱정거리로 예술활동 어려움외에 일자리와 노후생활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예술인은 보육시설 및 보육자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
 -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예술인의 경우 미취학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 혹은 직장생활에의 어려움(92.4%)을 많이 호소. 하지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음.
- 복지인식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같이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 수급 경험은 높지 않았으며, 최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에서도 창작지원금 사업 이외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음.
-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주변인과의 네트워크 형성임에도 원로 및 여성예술인의 대부분이 가족(부모, 형제자매)이외의 네트워크 구성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통한 정보획득, 생활지원 등을 받아본 경험은 많지 않았음.
-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많은 예술인이 긴급한 생활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식사를 거르거나, 공과금 납부가 늦어지고, 전기·전화수도 등의 단절경험, 집세로 인해 이사를 한 경험 등에서 비예술인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조사대상 예술인의 경험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위기상황에 놓인 예술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을 제안함. 여기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기존 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
 - 복지사업의 특성상 신규 사업의 경우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타부처 및 기관 등의 복지사업 소개를 통한 연계 방안을 제안
 -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유지되도록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대표적인 연계사업으로서는 고용보험 연계, 소액보험, 맞춤형 보육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며, 예술인복지재단 및 다른 예술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연계를 위해 예술인 전문상담가 육성, 경제·재무 및 복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는 원로예술인을 위한 건강보장(건강보험 보험료 지원, 고액의료비 지원), 소득보장(연금 혹은 공제제도), 여성예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제도, 법적 체계구축, 기타 복지지원방안으로서 파수꾼(혹은 지킴이),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산축적 혹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신규 사업의 경우 운영주체, 대상, 전달체계 및 관련 재원의 확보가 함께 뒤따라야 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사업임.

- 본 연구는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복지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과정에서 일부 제안은 대상이 청년예술인에게로 확대되기도 함. 이는 복지사업의 대상이 단순히 원로 및 여성예술인에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원로 및 여성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도 많은 예술인이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며, 여전히 복지정책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향후 추가적이고 지속적 연구를 통해 예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분명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생성이 중요할 것임.

제2절 예술인 복지사업 실행을 위한 로드맵(안)

□ 로드맵 개요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안한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안)은 인력, 자원, 전달체계 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단기사업 혹은 장기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여기서는 제안된 복지사업(안)들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복지사업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타부처와의 협업,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응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복지사업 대상(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등) 및 주체들(예술인, 예술인 협단체 등) 간 연대와 통일된 의견형성이 필요
- 본 로드맵 상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서 향후 추가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 실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

-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첫째, 조직 및 인력, 둘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충당, 셋째, 비예술인에게 줄 수 있는 파급효과(혹은 영향력), 넷째, 예술인 및 예술인 협단체 간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신뢰, 다섯째 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들 수 있음.
- 조직 및 인력
 -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욕구 파악, 세부적 복지사업 수행안 마련, 복지사업 실시 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다행히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 마련과 수행을 위한 기본적 조직 및 인력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임.
 -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인력과 조직규모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내실화와 확대를 위해 지속적 조직 및 인력의 확보가 중요
- 자원 마련 방안
 - 현 정부들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온 부문이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자원마련 부문임. 따라서 낭비적이고 부족한 복지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복지사업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을 복지를 위한 추가적 자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

- 먼저 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영화발전기금 등 문화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및 기금을 예술인 복지에 적극적으로 활용⁵⁸⁾
- 외부적으로는 복권기금 등 사행성 산업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예술분야와 예술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가 필요. 이외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비예술인에게 줄 수 있는 파급효과

- 예술인의 열악한 생활실상과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많은 비예술인 역시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복지사업 마련과 자원 조정에 들어 갈 경우 취약계층(한부모, 빈곤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즉 왜 예술인을 위해 별도의 복지사업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봉착할 수 있음. 따라서 예술인 복지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 등에 대한 축적과 비예술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 예술인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정부와 예술계 공공기관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제안과 실행을 하고자 해도 주체가 되는 예술인 및 예술인 협단체 등의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 유발
- 예술이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예술인 간 논의의 장, 협업의 장을 만들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나가는 복지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율성과 책임감

- 복지사업의 특성상 운영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복지사업 운영주체의 책임감 확보와 더불어, 복지사업 운영과정속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 자율과 책임속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협업, 주체가 되는 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주체

○ 여기서는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그 가능성을 파악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체계, 계획, 자원마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58) 지난 정부 경험을 통해 보면 예술인공제회 설립단계에서 타부처와의 논의 이외에 동일 부처내에서 예술인복지사업을 위한 자원마련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경험이 있었음. 따라서 부처내 조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함

- 복지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팀 또는 과로 확대개편을 검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동 재단에서 예술인복지사업을 위해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과다에 따른 중복성을 피하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기관이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
- 새로 설립된 기관이란 점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대표기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련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복지재단의 추가적 중요한 업무로는 유관 공공기관 간 사업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예술인 및 예술인 협단체를 통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

○ 예술인 및 예술인 협단체

-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의 핵심적 역할(복지사업 대상과 지원자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님)을 담당해야 할 대상으로서 복지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
- 현 단계에서는 예술인 간, 예술인 협단체 간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과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의 제시와 더불어 이들의 참여를 유도

○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은 각종 복지사업 증대에 따른 유사중복의 문제를 피하고, 효과 및 효율성 있는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중요한 제도임.
- 예술인복지의 많은 대상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문화재단 등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두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첫째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과 둘째는 기존 기관, 예술인 협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임.
- 별도 전달체계 구축은 재원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여러 제약이 있음. 하지만 복지욕구를 가진 많은 예술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의 전달체계 구축은 필요함.
- 우선적으로 별도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협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역문화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지방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복지사업의 추진 목표

- 예술인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핵심목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첫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단 혹은 단계별 추진단 등이 구성되어야 함.
 - 추진단은 책임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 설치하되 문화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요시 다른 예술인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
- 둘째, 예술인 복지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의 추진
 -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자의 명확성, 복지사업의 정당성 및 필요성 확보, 다른 복지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속가능한 자원마련 등을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연구 과정속에서 대외 타 기관 간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한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언론 및 국회 등을 충분히 활용
- 셋째, 정부와 공공기관, 예술인 및 예술인 협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 통일되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 및 협단체와 정부와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수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많은 예술인이 가족이외에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인들이 서로 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함.
- 넷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 세부적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정당성 확보와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부 내부의 논의는 물론 대외적인 외부기관(국회, 언론, 재정 및 복지담당 부처 등)의 협력과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 예술인 복지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는 세단계, 세부적으로는 중장기로서 5년 간의 로드맵(안)을 제안하고자 함.

- 동 과정 중에 또한 중요한 정치적 일정(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함께 포함
- 동 과정의 추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 전담부서(예술인복지과(가칭)) 조직 필요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의 업무 중 일부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수행 중임.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창작 및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관련 협단체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할 별도 전담부서가 필요함.
 - 전담부서 조직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자원 등이 확보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단계적으로 계획·추진할 수 있고, 정책혼선 없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될 것임.
- 대표적인 연계사업으로서는 고용보험 연계, 소액보험, 맞춤형 보육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며, 예술인복지재단 및 다른 예술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연계를 위해 예술인 전문상담가 육성, 경제·재무 및 복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는 원로예술인을 위한 건강보장(건강보험 보험료 지원, 고액의료비 지원), 소득보장(연금 혹은 공제제도), 여성예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제도, 법적 체계구축, 기타 복지지원방안으로서 파수꾼(혹은 지킴이),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산축적 혹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신규 사업의 경우 운영주체, 대상, 전달체계 및 관련 재원의 확보가 함께 뒤따라야 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사업임.

〈표 4-1〉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안)

추진단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비고
초기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및 협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문화부 산하 예술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 예술인 복지재단 내 예술인복지사업 증장기 추진 TF 구성 •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준비금,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확대* - 예술인 보육지원센터 개소* - 예술인 기업 파견 지원* - 복지연계사업 추진 : 보육서비스, 소액보험 등 - 예술인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복지파수꾼(가칭) 추진 - 원로예술인 대상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추진 -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시행여부 판정(재무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복지달력 등 작성) •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연구 - 주요 국가 복지사업 연구 - 예술인 사회보험 관련 연구 -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대외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 위촉 -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국회, 언론 등 협조)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대외적 홍보 	
중기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예술인복지과' 조직 구성 - 지역 문화재단 등과 협업 및 광역단위 사무소 설치 추진 •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사, 예술인보육 기반 확충 - 예술인금융 및 재무상담 시작 - 예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준비(재원) - 원로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방안 검토 •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대선 대비 예술인 복지사업 공약 마련을 위한 지원 TF 구성 •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자산축적 관련 기초연구 - 예술인 복지 전달체계 활용방안 관련 연구 - 예술인 생애주기 지원 체계 연구 • 대외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대외적 홍보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가사도우미 사업 추진 - 원로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예술인 대상 법적체계 구축 - 예술인 복지사업 차기 정부 공약 포함 지원 - 지자체 선거 대비 지역별 복지사업 현황과 각 당 공약개발 지원 •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 기초통계 마련: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예술인복지육구조사 동시 수행 - 예술인연금 및 공제회 관련 기초연구 - 여성예술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대외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대외적 홍보 	

174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추진단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비고
다음 단계로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연금 및 공제회 기초준비 - 청년예술인 자산 축적사업 기초준비 •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예술인 기본계획 수립 - 청년예술인 자산축적, 예술인연금 및 공제회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심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실태조사에 기반한 예술인 복지실태 심층연구 - 예술인 복지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 예술인 복지 전달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대외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대외적 홍보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연금 및 공제회 진행 - 청년예술인 자산 축적사업 진행 - 여성예술인 대상 복지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심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환류 연구 - 예술인 복지 관련 이슈 심층연구 •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 확대 지원 • 대외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대외적 홍보 	

주: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사업은 ‘*’ 표시

국내문헌

- 강신욱 외(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익희(2011),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KOCCA 포커스. 6, pp.1-23, 한국콘텐츠진흥원.
- 고용노동부(2016),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과학기술인공제회(2016),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5만명 돌파(보도자료, 2016. 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7),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안).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a), 2014년도 건강검진 통계연보.
 _____(2014b), 2014년 건강보험주요통계.
- 금융감독원(2015),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금융감독정보, 2015-34, p.37.
- 김미곤·여유진 외(2015), 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외(2014), 2014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정책 2014-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배(2014), 프랑스의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한 특별 실업보험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국제노동브리프. 12(5): 65-78.
- 김태완·정진욱·이주미(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071-102.
- 김태완·윤상용(2015), 빈곤과 우울감 간의 관계: 도농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38(2), 147-171.
- 김태완·정희선(2012), 예술인복지법 통과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8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원종욱 외(2009), 예술인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이태진 외(2008), 영화인 복지정책 효율화 방안, 한국영화인복지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휘정(2011),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총 25(2), 89-114.
-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정감사 업무현황, 각년도.
-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각년도.
- 박명준(2013), 독일자영업적 자유 직업인의 사회보험. 국제노동브리프. 2013(12):16-32.
- 박영정·김태완·양효석 외(2012), 예술인 범위기준 및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영정·공혜영(2008a),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_____(2008b),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2008-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조원·이귀옥·정은정 외(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박지은(2015), 예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프랑스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보건복지부(2016a), 긴급지원사업 안내.
 _____(2016b), 자활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2015.12.3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4),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례집.
-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김지혜, 김찬호, 배신규, 송정음, 송은솔, 백종림, 신호성, 오영호, 정영호, 고숙자, 김동수, 임병목, 최세문, 장숙량, 전진아(2014),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시도문화재단(2013),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워크숍 자료집.
- 시도문화재단(2015), 지역문화의 현안·시도문화재단의 역할,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자료집.
- 신현웅(2014),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상수·박성정·문미경(2013),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유진 외(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세곤(2013),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비전, 2013 막월문화포럼, 대전문화재단.
- 유영심·김병철(2015),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제고, 강원발전연구원.
- 이규석·이승엽·박영정 외(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관광부.
- 이영리(2012),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플랫폼. 28-33.
- 이태진 외(2015),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발간.
- 정갑영·조현성·김영범·신효진(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경화·강은나·박세경·이윤경·김세진(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개편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한·김용하·석재은·성·류건식·박영정 외(2008),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
- 조성현·김철(2012), 예술인 복지지원체계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정책평가연구원.
- 통계청(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4), 2013년도 및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우수프로그램 사례집.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6a), 지방자치단체 예술인복지지원 정책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_____ (2016b),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_____ (2016C),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허은영(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홍성주(2012),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STEPI insight 89.

해외문헌

- 劉· 継東(2015), 中国における現代芸術創造の場としての創意園区 - 北京798芸術地区を中心に - 静岡文化芸術大学文化政策研究科修士論文
- 渡辺浩平(2013), 中国文化産業の越境の意味すること - 華人文化産業投資基金(CMC)を事例として - .境界研究

- 特別号. 41-54
- (財)自治体国際化協会(2013), 『文化強国をめざす中国 - 現代中国における文化改革発展の流れと文化政策の動向について』. 協会調査報告書(Feb21. 2013).
- (株)野村総合研究所(2013), 『諸外国の文化政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文化庁委託事業
- (株)野村総合研究所(2015), 『諸外国の文化予算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文化庁委託事業
- 文化庁(2015a), 『我が国の文化政策』.
- _____ (2015b), 『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の閣議決定について』. 2015.5.22.報道発表資料.
- 日本芸能実演家団体協議会. 2015. 第9回芸能実演家・スタッフの活動と生活実態調査報告書.

-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Health* 5(2), pp.179-93.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pp.385-401.
- WHO(2000).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 각 시도문화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2016.03 기준)
- 농지연금 포털, 보도자료(<http://www.fplove.or.kr/>)
-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http://www.smilemicrobank.or.kr/>
-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http://www.goodchildcare.kr/>)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 중국문화부 퇴직 등 인원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 http://www.mcprc.gov.cn/whzx/zsdwdt/whbltxryfwzx_zsdw/201411/t20141106_437052.html
- 중국 2014년 문화발전통계자료(中华人民共和国2014年文化发展统计公报, 2015)
- <http://zwgk.mcprc.gov.cn/auto255/201505/W020150525608812501261.pdf>
- 文芸美術国民健康保険組合.2015.事業案内. (<http://www.bunbi.com/main.html>)
- 日本芸能実演家団体協議会ホームページ (<https://www.geidankyo.or.jp/>)
- 京都芸術家国民健康保険組合ホームページ (<http://geijutsuka-kokuho.jp/>)
- 東京芸能人国民健康保険組合ホームページ (<http://geino-kokuho.sakura.ne.jp/top.html>)
- 大阪文化芸能国民健康保険組合ホームページ (<http://www.bunkageinou.com/>)



예술인 복지인식 및 욕구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예술인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연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설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조사와 관련된 신분 보장 및 비밀엄수 사항은 엄격히 지킬 것이며 본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바람직한 예술인 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로 _____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번호:)	① 낮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기타	조사원 성명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번호:)		조사원 성명	
최종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번호:)		조사원 성명	

응답자 성명		집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일반사항

개인 일반사항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연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r> </table> 년															
3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4	(등록)장애 유무	① 비장애 ② 장애															
5	장애정도	① 중증 ② 경증															
6	만성질환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 포함)															
7	학교구분	구분	미취학/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 교육 기관								
	예술계	① 비해당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일반계	① 비해당	②	②	②	②	②	②	②								
	문학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미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공예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사진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건축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음악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대중음악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국악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무용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연극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영화	⑪	⑪	⑪	⑪	⑪	⑪	⑪	⑪								
	방송	⑫	⑫	⑫	⑫	⑫	⑫	⑫	⑫								
	만화	⑬	⑬	⑬	⑬	⑬	⑬	⑬	⑬								
	기타	⑭	⑭	⑭	⑭	⑭	⑭	⑭	⑭								
8	주요 활동분야	① 문학 ② 미술 ③ 공예 ④ 사진 ⑤ 건축 ⑥ 음악 ⑦ 대중음악 ⑧ 국악 ⑨ 무용 ⑩ 연극 ⑪ 영화 ⑫ 방송 ⑬ 만화 ⑭ 기타 (_____)															

가구 일반사항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1	가구주 여부	① 가구주 ② 가구주 아님
2	가구원수 (본인포함)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3	자녀현황	① 없음 → 주거 상황 문1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3-1	미취학자녀 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첫째아 출생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둘째아 출생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3-2	취학자녀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주거 상황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1	주거유형 (명의기준)	① 자가 ② 전세(월세없음)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사글세 포함) ⑤ 무상(관사, 사택 등) ⑥ 기타(_____)
2	주거위치	① 지하층 ② 지상 ③ 반지하층 ④ 옥탑
3	공동거주 여부	① 예술인끼리 공동거주 ② 비예술인과 공동거주 ③ 예술인+비예술인과 공동거주 ④ 공동거주하지 않음

Ⅱ 일반 인식

일반인식 조사 I					
※ 현재 기준으로 응답					
지난 1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렇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일반인식 조사 II	
※ 현재 기준으로 응답	
12	귀하는 어느 소득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층
13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① 일자리 ② 자녀교육 ③ 건강 ④ 주거비 ⑤ 노후생활 ⑥ 부채상환 ⑦ 부모부양 ⑧ 자녀보육(양육) ⑨ 예술활동 어려움

Ⅲ

복지인식

(공통문항)사회보장 및 서비스 가입, 급여수급 여부

사회복지제도 가입 및 급여수급 경험과 현재 수급여부를 항목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가입여부		과거 수급경험		현재 수급여부	
		가입	가입	있다	없다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1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①	②	①	②	①	②
2	고용보험	①	②	①	②	①	②
3	산재보험	①	②	①	②	①	②
4	예술인 산재보험	①	②	①	②	①	②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			①	②	①	②
6	의료비 지원(의료급여포함)			①	②	①	②
7	긴급복지지원(생계·주거·의료 등)			①	②	①	②
8	장애관련 수당(연금, 수당 등)			①	②	①	②
9	(예술인)창작준비금			①	②	①	②
10	임대주택(영구, 공공, 임대 등)			①	②	①	②
11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12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①	②
1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14	에너지 감면 및 보조			①	②	①	②
15	근로장려세제			①	②	①	②
16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①	②	①	②
17	사회보험료 지원(예술인복지재단)			①	②	①	②
18	예술인상담(정서포함)지원 (예술인복지재단)			①	②	①	②
19	예술인파견지원(예술인복지재단)			①	②	①	②

(원로예술인)사회보장 및 서비스 가입, 급여수급 여부
 사회복지제도 급여수급 경험과 현재 수급여부를 항목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과거 수급경험		현재 수급여부	
		있다	없다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1	기초연금	①	②	①	②
2	노인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3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①	②	①	②
4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①	②
5	노인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6	가정봉사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7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8	방문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①	②	①	②
9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①	②
10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①	②
11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①	②
12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 등)	①	②	①	②

(청년예술인)사회보장 및 서비스 가입, 급여수급 여부
 사회복지제도 급여수급 경험과 현재 수급여부를 항목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과거 수급경험		현재 수급여부	
		있다	없다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1	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2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①	②

(여성예술인)사회보장 및 서비스 가입, 급여수급 여부					
사회복지제도 급여수급 경험과 현재 수급여부를 항목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과거 수급경험		현재 수급여부	
		있다	없다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1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①	②
2	보육료지원(어린이집)	①	②	①	②
3	유아교육료지원(유치원)	①	②	①	②
4	양육수당	①	②	①	②
5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①	②
6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①	②
7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①	②
8	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9	예체능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등)	①	②	①	②
10	문화활동(문화답사, 연극, 영화 등)	①	②	①	②
11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①	②
12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13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①	②
14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①	②
15	공연예술인시간제 보육지원(예술인복지재단)	①	②	①	②

사회적 관계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1	재산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2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3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4	자녀 보육·양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혹은 기관	
5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혹은 기관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인척 ④ 친구(예술계) ⑤ 친구(비예술계) ⑥ 정부 ⑦ 공공기관(예술관련 단체) ⑧ 민간단체(예술관련 단체) ⑨ 민간단체(비예술관련 단체: 종교단체, 복지관 등) ⑩ 없음		

IV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예(전업예술인)	아니오(겸업)	비경제활동						
1	전업예술인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 문4	② → 문2	③ → 문6						
2	예술활동 외 직업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3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예술활동의 기회조차 없었음 ②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③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④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⑤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⑥ 기타 (_____)								
4	예술활동 직업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자활 등 정부지원일자리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5	지난 1주일간(조사시점으로부터) 예술활동과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에 1주일 평균 몇 시간이나 투입하셨습니다? ※ 투입하는 시간이 없으면 "0"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시 간</th> </tr> </thead> <tbody> <tr> <td>예술활동</td> <td>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td> </tr> <tr> <td>예술활동 외 (전업예술인은 "0"으로 기입)</td> <td>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td> </tr> </tbody> </table>			항 목	시 간	예술활동	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예술활동 외 (전업예술인은 "0"으로 기입)	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항 목	시 간									
예술활동	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예술활동 외 (전업예술인은 "0"으로 기입)	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③비경제활동"인 경우만 응답										
6	예술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로무능력 ② 정규교육기관 학업 ③ 진학준비 ④ 취업준비 ⑤ 가사 ⑥ 양육 ⑦ 간병 ⑧ 구직활동포기 ⑨ 근로의사 없음 ⑩ 기타 (_____)								

V 건강

건강상태 및 건강보험		
1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쁨 ② 나쁜 편임 ③ 보통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2	(현재) 3개월 이상 처방받고 있는 만성질환은 몇 개입니까?	① 1개 질환 ② 2개 질환 ③ 3개 질환 ④ 4개 이상 ⑤ 없음
2-1	(현재)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현재) 의료보장의 유형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미가입자
4	(2015년 1년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하신 의료비(본인부담금)의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거의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부담됨 ⑤ 많이 부담됨
5	(2015년 1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와 동일) ③ 비해당(의료급여, 미가입자)
6	본인이 지출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0'으로 표기	월 _____만원
6-1	월평균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거의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부담됨 ⑤ 많이 부담됨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건강보험료의 몇 _____%

7	(2015년 1년간)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7-1 ② 없다 → 문8
	7-1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진료비 부담 ②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병원과의 먼 거리 ⑤ 치료해도 나을 것 가지 않아서 ⑥ 거동이 불편해서 ⑦ 기타(_____)
8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현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하신 민간의료보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9-1 ② 없다
	9-1 월평균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지출은 얼마입니까?	월 _____만원

VI 자녀양육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1	(현재) 귀 가구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없음 ② 경제적 부담 ③ 정신적, 심리적 부담 ④ 신체적 부담(양육자 건강상 이유 등) ⑤ 가사노동의 부담 ⑥ 사회적 부담(취업애로 등) ⑦ 보육시설 및 대리보육자 찾기 어려움 ⑧ 기타 (_____)																					
2	(2015년 1년간) 아이는 주로 누가 돌보았습니까?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padding: 2px;">첫째아</th> <th style="width: 33%;"></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padding: 2px;">둘째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①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보냈다</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②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았다</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③ 아이의 조부모가 주로 돌보았다</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④ 기타 친인척 또는 이웃이 주로 돌보았다</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⑤ 개인탁아모나 가정부가 돌보았다(입주도우미 등)</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⑥ 낮에는 아이 혼자(또는 아이들끼리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td> </tr> </tbody> </table>	첫째아		둘째아	①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보냈다			②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았다			③ 아이의 조부모가 주로 돌보았다			④ 기타 친인척 또는 이웃이 주로 돌보았다			⑤ 개인탁아모나 가정부가 돌보았다(입주도우미 등)			⑥ 낮에는 아이 혼자(또는 아이들끼리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아		둘째아																					
①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보냈다																							
②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았다																							
③ 아이의 조부모가 주로 돌보았다																							
④ 기타 친인척 또는 이웃이 주로 돌보았다																							
⑤ 개인탁아모나 가정부가 돌보았다(입주도우미 등)																							
⑥ 낮에는 아이 혼자(또는 아이들끼리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3	(현재) 자녀의(아동의)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취업(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① 매우 많았다 ② 지장이 있는 편이었다 ③ 별로 지장 없었다 ④ 전혀 지장 없었다 ⑤ 취업의사가 없었다																					
4	(현재) 귀하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정부의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 없음 ①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또는 직장보육시설 확대 ② 보육비 지원 확대 ③ 보육시간 이용 시간대의 개선 ④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⑤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⑥ 자녀 양육정보의 제공 ⑦ 기타 (_____)																					
5	(현재) 귀하는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상세히 알고 있음																					
5-1	(현재)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자산 현황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명목기준 전혀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시고,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의 총 자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input type="text"/> 만원
	1-1 ↳ 가구의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input type="text"/> 만원
	1-2 ↳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자가의 경우 2015년 12월 현시가기준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	<input type="text"/> 만원

부채 현황		
※ 2015.12.31. 기준으로 응답, 명목기준 전혀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시고,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의 총 부채는 어느 정도 입니까?	<input type="text"/> 만원
	1-1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input type="text"/> 만원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